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171-10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연도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ww.mohw.go.kr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ONTENTS

제1편	총 괄
1	I.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5 II.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1 III.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8
2	I. 구축배경 29 II. 추진방향 30 III. 주요내용 31
(e)	
3	I. 일반규정 39 II.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40 III.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45
제2편	통합업무절차
1	I. 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51 II. 신 청 52 III. 접 수 59
2	I. 조사개요 63 II. 보장가구의 결정 67 III. 소득조사 75 IV. 재산조사 96 V.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24

3	VI. 소득인정액 산정 127 VII. 부양의무자 조사 135 VIII. 연령산정 방식 136 I. 개 요 139 II.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40 III. 보장결정 142 IV. 통 지 143 V. 이의신청 144
4	I. 급여 서비스 개요 148 II. 복지급여 154 III.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71
5	I. 변동사항 관리 185 II. 급여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 192 III. 보장비용 환수 207 IV. 반환명령 211
부 록	
1	I.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218 II. 사업별 개별서식 265
2	I. 일반 사항 283 II.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291 III.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295 IV.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304 V.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317

I. 목 적	369
II. 권한관리 개요	369
III. 사용자 등록	371
IV. 권한 부여	374
V. 권한 변경 및 중지	377
VI.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379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1 기준 표준화 항목

	건강보험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 순으로 적용	공적자료, 금융자료의 연계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자료 3순위 적용 대상 포괄 범위가 더 넓은 산재보험 우선 적용 후 고용보험 적용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조회	1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당월보수 부과방식으로 변경되나 현행 기준 유지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기준과 협의하여 기준 결정
	별도 기준 없음	공제 적용 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적용 * (공제액) 기초생활 12만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8만원
	별도 기준 없음	신청서 접수 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 지는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활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 * 도입 시기는 예산 및 대상자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별도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차상위 여부 확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는 별도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차상위 급여 제공 또는 자격 부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의 차이(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유무)로 별도 소득 재산 조사 불가피하여 현행대로 추진

2 기타 주요 개정사항

	2015	2016
(43p)	고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제3항) 보호대상자가 신청시 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근거, 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을 고지 (신설) 개인정보의 파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 시, ~ 정보보안(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의2)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로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보장목적외 사용금지 및 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 53조의2 동법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금융정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3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검색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고지(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보호대상자가 신청시 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근거, 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을 고지 정보 보호대책 수립 시행(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각 기관별로 사회보장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개인정보의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시, ~ (삭제) 보장목적외 사용금지 및 벌칙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 말소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유포 사용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2015	2016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3p)	(신설)	8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53p)	(신설)	(보존기한)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최소 1년까지 보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존기한에 대한 예외 설정 가능
(55p, 143p)	기초생활보장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사회복지서비스 : 2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기초생활보장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57p 58p)	고지사항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고지사항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2015	2016
		수집된 정보는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58p)	(신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기초연금)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2) 조사대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사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행복e음 을 통한 자료 확인 (4) 조사결과처리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참고)
(63p)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대상자의 범 주 및 조사의 주기는 별도 통보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 (기초생활보장) (삭제)
(64p)	조사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사회보 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5	2016						
	1.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이력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이력 그 밖에 보호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6p)	<table> <tr> <td></td><td>무료임대확인서</td><td>사적이전소득 파악</td></tr> </table>		무료임대확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table> <tr> <td></td><td>무료임대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td><td>사적이전소득 파악 주거급여 대상 확인</td></tr> </table>		무료임대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주거급여 대상 확인
	무료임대확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무료임대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주거급여 대상 확인						
(68p)	동일주민등록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 이내 혈족인 동거인 별도주민등록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하는 자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동일주민등록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별도주민등록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69p)	배우자 (사실혼 포함) (신설)	배우자 (사실혼 포함) 고유식별번호*가 있는자 * 고유식별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 주민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						
(70p)	동일주민등록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별도주민등록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동일주민등록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별도주민등록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						
(70p)	별도주민등록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건강보험 부양자의 가족구성원 중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사간병)	별도주민등록 미혼자녀						

	2015	2016								
(71p)	포함될 가구원 동거인 제외할 가구원 < > (신설)	포함될 가구원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는 사람) 제외할 가구원 <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72p)	제외할 가구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신설) (표 신설)	제외할 가구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가출 행방불명 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74p)	<table><tr><td></td><td></td></tr><tr><td></td><td>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td></tr></table>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table><tr><td></td><td></td></tr><tr><td></td><td>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td></tr></table>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0p)	(신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행복e음 연계 후 적용, (3월 중 예정이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신설)	16.1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사업 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기관(국세청								

	2015	2016
(80p 81p)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신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확인 지침〉 (신설)	또는 고용노동부)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각각 입수됨(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제공 기관 표시)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 결과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확인 지침〉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를 제출 받아 결과 반영
(86p)	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연계되는 사업(법적 근거가 필요) 및 연계 기준 등은 추후 통보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 연계(16.1월부터), 이외 사업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91p)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전면 개정)	보장기관 확인 소득 본문 참고
(103p)	일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신청자(수급자)가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민법 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2015	2016
	상속지분으로 재산산정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108p)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대상자 선정시, 정보 시스템에 기 파악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결정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은 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대상자 선정시, 정보 시스템에 기 파악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결정
(108p)	(신설)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자격학인(구 우선돌봄차상위) 사업 포함
(109p)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화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 하도록 안내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화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112p)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예정 (15.7월 예정,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현행) 1/4분기 자료를 1년 동안 반영 (변경)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112p)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유지분을 적용	(삭제)
(113p)	(신설)	기초생활 등 사업구분의 제외감면 유형란에 추가 타법의료급여 중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 규정 적용
(113p)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 받은 자동차 또는 보존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존처 훈령 제2조제

	2015	2016
	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	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
(117p)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신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기초연금) 양육비 포함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화귀난치 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양육비 포함
(118p)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2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단,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감액 탈락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월 최저생계비의 120%를 매월 차감 차상위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최저생계비의 12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계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 생계비의 120% 씩 차감 (기타 보장)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씩 차감
(127p)	{0.7 (근로소득 52만원)}+기타소득 (환산율) 연 5%	{0.7 (근로소득 56만원)}+기타소득 (환산율) 연 4%
(127p)	(신설)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평가액) 상시 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0.7 (근로소득 52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2015	2016				
(130p)	기초생활보장 등	기초생활보장 등				
	<table><tr><td></td><td></td></tr><tr><td>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실비제외, 주 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td><td>30%</td></tr></table>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실비제외, 주 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30%	(삭제)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실비제외, 주 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30%					
자활장려금 산정 및 지급방식은 자활사업 안내지침 참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 ~ 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 ~ 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132p)	금융기관외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임대보증금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명확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인정	금융기관외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임대보증금 (삭제)				
(133p)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140p)	국민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				
	(신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15년 단독 93만원, 부부148.8만원) (신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란에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추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16년 단독 100만원, 부부160만원)				
		장애인연금 기타자격란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 것 추가				
	경증장애수당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경증장애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긴급복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긴급복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2015	2016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
(141p)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로 판정)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역개발형 사업 소득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원칙 노인, 장애인대상 사업 120% 이하 조정 가능 가사간병 방문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장애인 활동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구성원 포함) 다만 기준 중위소득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로 판정)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장애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또는 140% 원칙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 위계층(시설수급자 등 제외),
(145p)	접수 시 군 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송부 (신설) 처리기관 시 도지사 통지대상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불복시 6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접수 생계 의료 주거 : 시 군 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교육급여 : 시도교육감 (시군구청 신청대행 가능) 송부 교육급여 신청대행인 경우 15일 이내 처리기관 생계 의료 주거 : 시 도지사 교육급여 : 시도교육감 통지대상 생계 의료 주거 :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교육급여 : 이의신청인 불복시 생계 의료: 6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이의신청 주거 : 6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교육 : 6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2015	2016
(145p)	시 군 구청(읍 면 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시 군 구청장(읍 면 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148p)	생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률지원 교육급여 교과서대 : 129,500/년 부교재비 : 38,700/년 학용품비 : 52,600/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 지급 교육급여 교과서대 : 131,300/년 부교재비 : 39,200/년 학용품비 : 53,300/년
(148p)	노인단독 200,000원 노인부부 320,000원 (15.1월~3월) * 15.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노인단독 202,600원 노인부부 324,160원 (16.1월~3월) * 16.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148p)	기초경증 4만원 차상위경증 4만원 시설기초경증 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4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경증 2만원
(148p)	기초중증 20만원 기초경증 10만원 차상위중증 15만원 차상위경증 10만원 시설중증 7만원 시설경증 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중증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10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중증 7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경증 2만원
(149p)	기초급여 18세 64세 : 최대 20만원 * 부부장애인 32만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15.1월~3월 적용) * 15.4월부터급여는 추후통지	기초급여 18세 64세 : 최대 20.3만원* * 부부장애인 32.4만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16.1월~3월 적용(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2015	2016																											
	부가급여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18 64세</th><th>65세 이상</th></tr> <tr> <td>기초</td><td>8만원</td><td>28만원</td></tr> <tr> <td>차상위</td><td>7만원</td><td>7만원</td></tr> <tr> <td>차상위초과</td><td>2만원</td><td>4만원</td></tr> </table>	구분	18 64세	65세 이상	기초	8만원	28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부가급여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18 64세</th><th>65세 이상</th></tr> <tr> <td>기초(생계 의료)</td><td>8만원</td><td>28.3만원*</td></tr> <tr> <td>기초(주거 교육) 생계 의료수급 자 제외</td><td>7만원</td><td>7만원</td></tr> <tr> <td>차상위</td><td>7만원</td><td>7만원</td></tr> <tr> <td>차상위초과</td><td>2만원</td><td>4만원</td></tr> </table> * 16.1월~3월 적용(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구분	18 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의료)	8만원	28.3만원*	기초(주거 교육) 생계 의료수급 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구분	18 64세	65세 이상																											
기초	8만원	28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구분	18 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의료)	8만원	28.3만원*																											
기초(주거 교육) 생계 의료수급 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e) (157 ~ 159p)	정기급여 총 67종 급여 서비스 란의 장애인자녀교육 비 입학금, 수업료, 자활장려금	정기급여 총 64종 (삭제)																											
(171p)	예약금 납부 매분기 시작월 20일 대상자 결정 통지 매월1~18일(장애인활동지원) 매월1~21일(지역사회투자서비스)	예약금 납부 매월 서비스 비용지급 1일 전 12:00 대상자 결정 통지 매월1~27일																											
(173p)	전송 : 카드 발급 신청 정보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전송 (시 군 구 정보개발원) 발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카드 발급 및 배송	전송 : 카드 발급 신청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전송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카드 발급 및 배송 : (전용카드)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BC, 롯데, 삼성카드																											
(179p)	사업별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각 사업별로 상이	바우처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table border="1"> <tr> <td></td><td>대상자 본인 의 서비스 중지 요청</td><td>본인포기로 중지전송 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td></tr> <tr> <td></td><td>대상자가 사망(자동 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 된 경우</td><td>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td></tr> <tr> <td></td><td>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td><td>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 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td></tr> </table>		대상자 본인 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 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가 사망(자동 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 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 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 본인 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 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가 사망(자동 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 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 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2015	2016		
			대상자의 등급변경 으로 자격 탈락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 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187p)	(신설)	가구원 변동 란 중 사망의심자 알림 추가 처리할일 란의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추가		
(193p)	(신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추가(세부내용 본문 참조)		
(195p)	152개 유형, 14.12월 기준	167개 유형, 15.12월 기준		
(206p)	(신설)	본문참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15.7.1)

1

- 신청 조사 결정 제공 등 공정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행의 기본적 절차와 지원근거 제공
-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변동 중지, 환수 등 일련의 관리 절차 마련

2

-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복지대상자 발굴에 이용
- 복지 사각지대 발견시 신고의무(의료인, 교사, 방문간호 종사자, 통 리장 등)

3

민관협력 기구의 구성 업무범위가 보건복지에서 사회보장(고용,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조직(읍면동 협의체) 신설

4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가능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사회보장정보 표준화 등 협의를 위해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운영(정보검증, 연계강화 등)

정보보호대책 수립 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 요구, 위반시 고발 징계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회사회보장급여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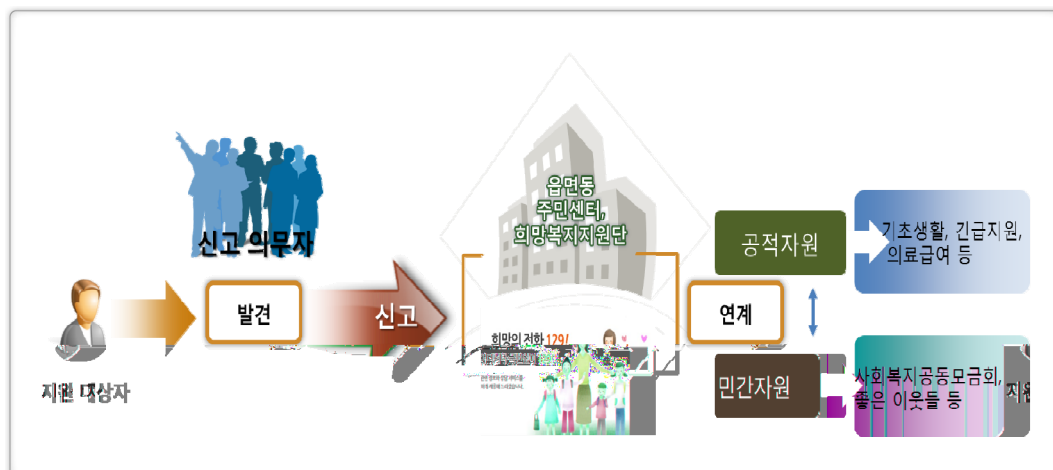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신청 조사 결정 제공 등
공정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행의 기본적 절차와 지원근거 제공

2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3



4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해당 보장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
3.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2.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

제1편 총괄

제1장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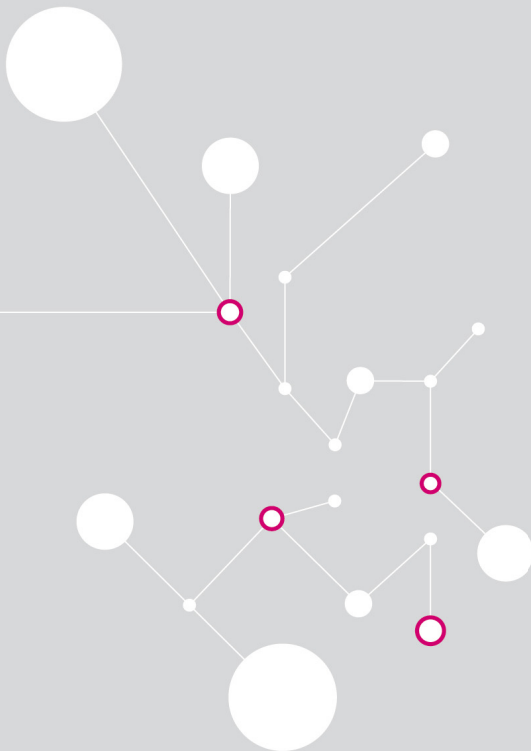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제3장

(e)

M I N I S T R Y O F H E A L T H & W E L F A R E

제1장 통합업무 일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i

● 0./4 / /

B

ㄱ

ㄴ

ㄷ

ㄹ

ㅁ

& c '

4. 적용 방법



i

&

'

- * 개별법령 등에 의해 통합지침과 다른 예외를 둘 경우에는 “보건복지급여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협의 필요

5. 주요내용

· (1)

- & c ' 1/2 ' *
*
- & 1/2 ' *
*

· (2)

1

- & ' $\perp$ 6 *
- 1/2 i i * 1/2 *
- & ' ~ *
- $\hat{A}^*$
- ~ $\hat{A}^*$
- ~
- & ' *

2

- & ' *

● &

*

~

~

Á

*

Á

※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 &

*

3

● &

±

※ 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자 중 보장결정 전 긴급히 생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 &

*

&QKQ'

&c

~

4

● &±

±

'

&

c

'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6 *

/3

● & ' * *

6. 업무 절차별 적용대상 사업

	시 군 구(읍 면 동) 신청 전체 사업
	가구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노인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등 소득 재산조사,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생활시설실비 입소이용료지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노인일자리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등
	보장결정.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보육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u>사회서비스 이용권</u>,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사회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교육비),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양육수당), 아동청소년사업(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장애인입양아동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교육비, 양육비)등 서비스 사회서비스이용권 등
	인적 변동사항관리 : 전체 사업 소득 재산 변동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거주지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보장비용환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II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

대상 사업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바우처사업 노인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일반수급자)시설 입소 신청 등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 증명서 장애인복지 카드 장애인차량 표지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중점보호대상자 사례관리 읍면동 상담 후 단순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단순서비스 연계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읍면동 강화 모형) 또는 중심 읍면동(중심 읍면 동 강화 모형에서 각각 직접 사례관리 수행하거나, 희망 복지지원단으로 의뢰(읍면 동에서 통합사례관리가 불 가능한 경우) 소득 재조사자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 팀으로 분배	긴급복지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입양아동지원 등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상담, 대상선정	시 군 구
	시 군 구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보육료, 양육수당 별도조사 없음	즉시처리	시 군 구 요청 서비스 연계팀 통합조사 관리팀	사업팀 자격확인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주태조사 의뢰 (기초생활)			욕구 조사 소득 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기초)	
	사업팀 결정, 통지	시 군 구 요청 사업팀 결정, 통지		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 서비스계획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급여 지급	사업팀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 서비스 제공	사업팀 급여 서비스 제공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기초생활)	읍 면 동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 서비스 점검	통합조사 관리팀/사업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사업팀 급여 중지	사업팀 서비스 중지		희망복지지원단, 읍 면 동 종결처리	사업팀 급여중지

*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등 협조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등급 심사는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조사·보장결정·보장중지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경우 모훈지청(문화재청)에서 신청·접수, 선정통지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 청소년특별지원 : 예외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가능

2.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1 ()

- $\hat{A}$
 - & ' ,
 - ~ *
 - & $\hat{A}$ '
 - ~ *
 - * * * * *
 - * * * *
 - * * *
 - & 6 ' 6 6 ~
-

2 ()

- - ~ 6 6 * * ~ 6
 - & $\hat{A}$ '
 - ~ 6
 - ~ ~ ~ 6
 - 6 & '
 - ~
 - ~ 6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

Á

*

*

● ㄱ

(ㄱ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되,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시 반영

3

()

●

⊥

4

●

* 보장결정 이전 조사 관련 소명 처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

.

1

()

(

●

●

/3

*

⊥

- *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팀에 통지하고 사업팀에서는 해당 월 급여 변동 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 익월급여에 반영

3

()

●

i

1/2

⊥

- * 양곡 공제 :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양곡공제 연간계획'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액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

⊥

⊥

&

⌘

*

á

'

-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상계 계획 수정
- *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양곡 계획 수정

4

()

●

⊥

⊥

&

*

⌘

*

'

5

()

●

⊥

⊥

⊥

⊥

●

⊥

⊥

&NBD

'

&c

'

⊥

$$\begin{array}{c} \textcircled{\bullet} \\ i \end{array} \quad \begin{array}{c} \&C \\ \text{б } \overline{\overline{\Gamma}}\dot{A} \end{array} \quad , \quad \begin{array}{c} \perp \\ C \end{array} \quad \begin{array}{c} \&\overline{\overline{\Gamma}}' \\ \perp \\ \overline{\overline{\Gamma}} \end{array} \quad ,$$

■

$$(\quad)$$

- $\sim$
- $\perp$
- $\&\overline{\top}$

2

$$\left(\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

3

()

4

$$(\quad / \quad)$$

제1장 통합업무 일반 15

3.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

● $\pi \perp$ 6& ' *

$\cap$ 6

● $\perp$ $\cap$ $\cap$

~

● * *

6

.

1 :

● $\perp$ ~

Á

● * * ~ 6 * ~

2

: ,

● & ' & c ' 3

$\cap$ *

● & ' ~ *

* $\cap$

& $\perp$ '* $\pi \perp$ $\perp$ $\cap$

3

:

● & ' ≡ ~ 6

* ~ ~ 6 ~ ㄱ ½

6

● & ' *

ㄱ

(

* 주 사례관리자로서 '복지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 /07' , 6

6 & .7,7 ' ,

≡ *

III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육구 주택조사(LH시행) 등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만 65세이상 노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 * 16년 노인단독 100만원, 노인부부 160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text{소득평가액} = \{0.7 \quad (\text{근로소득}^* \quad 56\text{만원})\} + \text{기타소득}^{**} \quad \times$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 (\text{일반재산} \quad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quad 2,000\text{만원}) \text{부채} \} \quad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quad 12\text{월}] + P^{**} \quad \times$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특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기준연금액의 50% 산정)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금융재산 포함)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

(15.4 ~
16.3
)
16.4

기초연금 급여액 : 월 최고 단독가구 202,600원, 부부가구 324,160원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기준연금액(202,600원) 또는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
 * 국민연금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수급권자는 A급여액을
 통해 산정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부부2인 수급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참고 기초연금 급여액 표

단독 수급 가구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bp) = 기준연금액 250% 국민연금액
 (기준연금액 2/3 A급여액)+부가연금액 중 최대값

소득인정액(16년)	82만원 미만	82만원 이상 84만원 미만	84만원 이상 86만원 미만	86만원 이상 88만원 미만	88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Min (bp, 18만원)	Min (bp, 16만원)	Min (bp, 14만원)	Min (bp, 12만원)
소득인정액(16년)	90만원 이상 92만원 미만	92만원 이상 94만원 미만	94만원 이상 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 98만원 미만	98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부부1인 수급가구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bp) = 기준연금액 250% 국민연금액
 (기준연금액 2/3 A급여액)+부가연금액 중 최대값

소득인정액(16년)	142만원 미만	142만원 이상 144만원 미만	144만원 이상 146만원 미만	146만원 이상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Min(bp, 18만원)	Min(bp, 16만원)	Min(bp, 14만원)	Min(bp, 12만원)
소득인정액(16년)	150만원 이상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154만원 미만	154만원 이상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158만원 미만	158만원 이상 16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부부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bp1, bp2는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16년)	132만원 미만	132만원 이상 136만원 미만	136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140만원 이상 144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bp ¹ +bp ²)	Min[(bp ¹ +bp ²), 28만원]	Min[(bp ¹ +bp ²), 24만원]	Min[(bp ¹ +bp ²), 20만원]
소득인정액(16년)	144만원 이상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160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3. 영유아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읍 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양육수당 (0~83개월) :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3개월) :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3개월) : 100~200천원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계층 월22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438천원 장애아 보육료 월 438천원 방과후 보육료 100천원 방과후 장애아보육료 월 219천원 * 16.3월부터 적용

全
全

4.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경증(3~6급)장애인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신청권자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차상위 경증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록 장애인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
		경증장애수당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 월 4만원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중증 : 월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경증 : 월 10만원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7만원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2만원

5.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구비서류 주택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중증장애인 본인명의로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예외적인 경우, 제3자 명의로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필요) 본인 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16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100만원, 장애인부부 160만원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상시근로소득공제*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5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금융재산 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4%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금융재산 포함)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기초급여(공통) <u>2015.4월~2016.3월 : 최고202,600원</u> <u>2016.4월~2017.3월 : 205,230원 (잠정)</u>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부가급여(차등)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table> <tr> <td></td><td>65</td><td>65</td></tr> <tr> <td><u>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u></td><td>8만원</td><td><u>28,3만원¹⁾</u></td></tr> <tr> <td><u>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u></td><td>0원</td><td>0원</td></tr> <tr> <td><u>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u></td><td>0원</td><td>7만원²⁾</td></tr> <tr> <td><u>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u> <u>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u></td><td>7만원</td><td>7만원</td></tr> <tr> <td><u>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u> <u>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u></td><td></td><td>14만원³⁾</td></tr> <tr> <td><u>차상위초과(일반)</u></td><td>2만원</td><td>4만원</td></tr> </table>		65	65	<u>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u>	8만원	<u>28,3만원¹⁾</u>	<u>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u>	0원	0원	<u>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u>	0원	7만원 ²⁾	<u>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u> <u>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u>	7만원	7만원	<u>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u> <u>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u>		14만원 ³⁾	<u>차상위초과(일반)</u>	2만원	4만원
	65	65																					
<u>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u>	8만원	<u>28,3만원¹⁾</u>																					
<u>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u>	0원	0원																					
<u>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u>	0원	7만원 ²⁾																					
<u>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u> <u>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u>	7만원	7만원																					
<u>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u> <u>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u>		14만원 ³⁾																					
<u>차상위초과(일반)</u>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u>2015.4월~2016.3월 : 202,600원</u> <u>2016.4월~2017.3월 : 205,230원(잠정)</u>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6. 긴급복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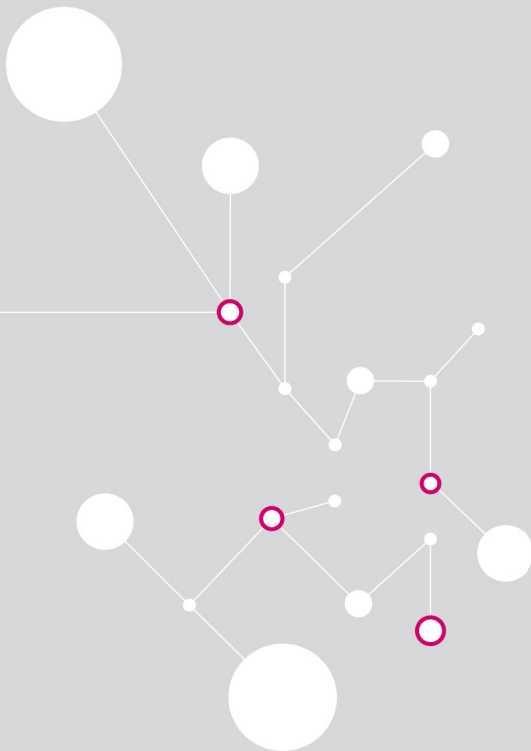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서식 신청서 별도 없음. 단, 해산 장제 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필요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지체 없이 처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table><tr><th></th><th></th><th></th><th></th></tr><tr><td rowspan="7"></td><td rowspan="4"></td><td>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td><td>월 113.1만원 (4인) 6회</td></tr><tr><td>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비급여)</td><td>300만원 이내 2회</td></tr><tr><td>국가 지자체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td><td>월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 12회</td></tr><tr><td>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서비스 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td><td>월 140.2만원 이내 (4인) 6회</td></tr><tr><td rowspan="3"></td><td>초 중 고 수업료 등 필요비용</td><td>초 21.4만원, 중 34.1만원 고 41.8만원 및 입학금 수업료 등 2회 (주거 지원 4회)</td></tr><tr><td>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 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td><td>1회 (연료비 6회)</td></tr><tr><td>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td><td>무제한</td></tr></table>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월 113.1만원 (4인) 6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비급여)	300만원 이내 2회	국가 지자체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월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 12회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서비스 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월 140.2만원 이내 (4인) 6회		초 중 고 수업료 등 필요비용	초 21.4만원, 중 34.1만원 고 41.8만원 및 입학금 수업료 등 2회 (주거 지원 4회)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 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무제한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월 113.1만원 (4인) 6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비급여)	300만원 이내 2회																				
		국가 지자체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월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 12회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서비스 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월 140.2만원 이내 (4인) 6회																				
		초 중 고 수업료 등 필요비용	초 21.4만원, 중 34.1만원 고 41.8만원 및 입학금 수업료 등 2회 (주거 지원 4회)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 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무제한																				

7.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 부 가족 포함)
		보호대상자의 소득 재산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5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2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 월 50,000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50,000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포함) : 만24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1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 수업료 실비지원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의의

I

구축배경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 $\pm$ Ω $\hat{A}^*$
- $\bar{}$ $\&$ $*$ $*$ $*$ $*$ $1/1/2$ $\bar{}$

2. 추진배경

- $\sim \hat{A}^*$ $/.. \sim$ $*$
- B $\pm$
- i $\sim$

※ 전체 업무중 자산조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 $1/2$ B

3. 추진 경과

- $@NP-GQN$ $\&.6,2 /0'$ $'$
- $\bar{}$ $/$ $\&.6,/0 .7,2'$ $'$

- & * .7,1,/' ' ,
- 1/2 & .7,2,1. B ' * .7,4,7 "
- 6
- 6 0 & .7,4 /0' ' ,
- & c ' 1/2 & /.,/ ' ' ,

II

추진방향

1. 자산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6

3.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

- π i 1/2
1/2 ~ 6 1/2

4. 지자체 조직 인력 재배치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 ∩ 6
- ~
- *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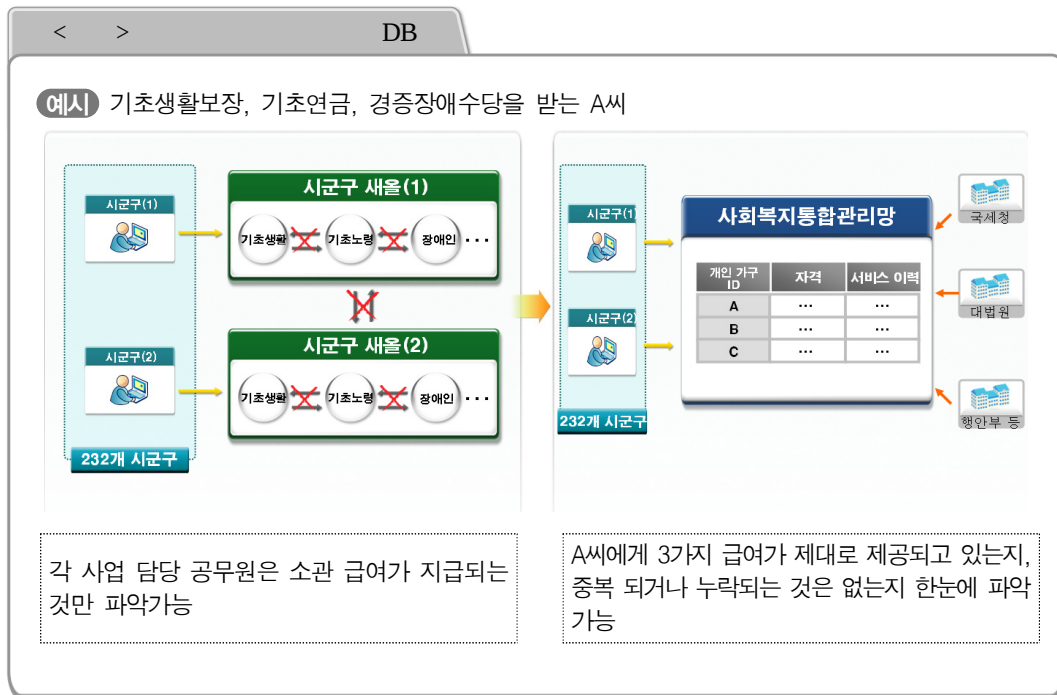
Ⅲ

주요내용

1. 개인별 가구별 DB 구축

● & ' B@ ~ 6
 ±
 ± ~ 6
 ● & 1/2 ' /0. 1/2 ± 1/2
 ~ 6
 *

* (기존)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DB → (개선) 전국, 개인별·가구별 DB



2. 소득 재산조사의 표준화

- & ' /3½
½
i
- &½ '
½

예시

(기 존) 경증장애수당, 보육료, 기초연금 등을 각각 신청

경증장애수당 신청 ⇒ 경증장애수당 조사 ⇒ 경증장애수당 결정

기초연금신청 ⇒ 기초연금 조사 ⇒ 기초연금 결정

보육신청 ⇒ 보육 조사 ⇒ 보육 결정

(개 선) 가구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일괄신청

일괄신청 ⇒ 통합조사 ⇒ 결정



3.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bullet \quad \& \quad ' \quad \sim \quad / .1/2 \quad /3$$
$$\pe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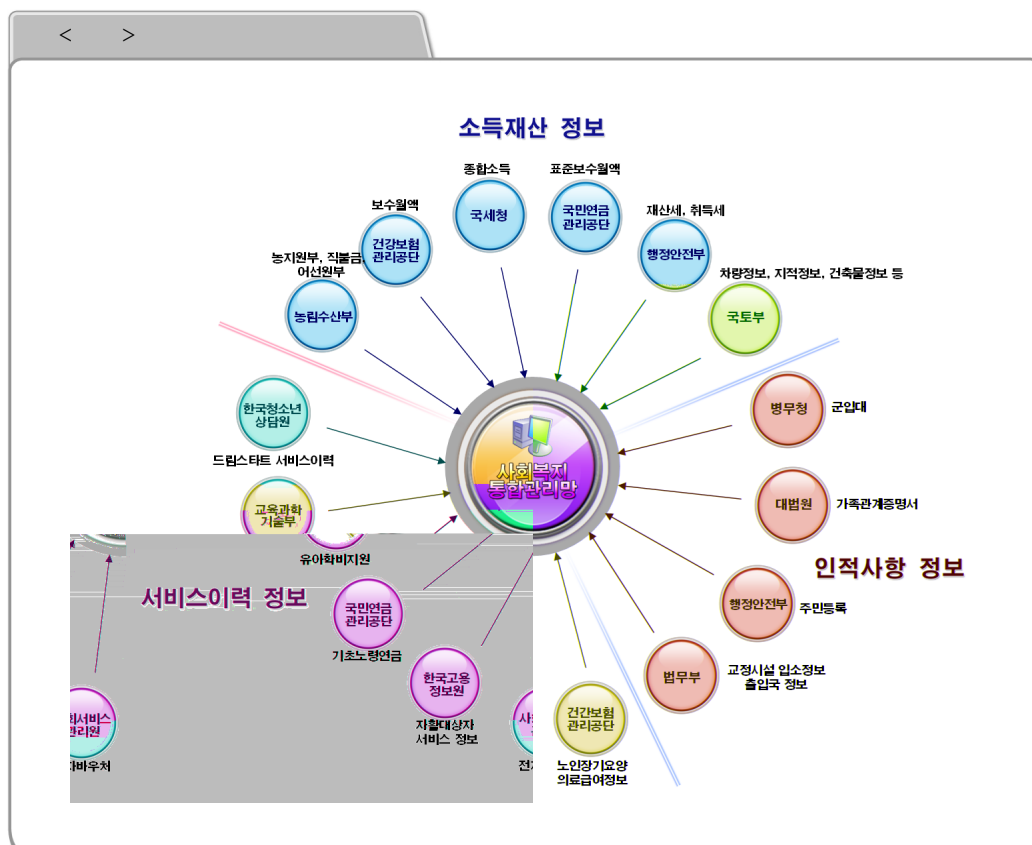
* 시·군·구마다 담당자별로 소득·재산 공적자료로 각 기관에 요청하여 개별적으로 조사(연 1회)

● $\frac{1}{2}$ ' $\frac{1}{2}$ 05 $\frac{1}{2}$ 0/6 $\frac{1}{2}$ *

/3,0 '36 $\frac{1}{2}$ 45/ ' *

i

* (인적·소득·재산) 65종, (자격정보) 50종, (수혜이력) 18종, (기타 업무처리용) 538종

$$* \quad \underline{\underline{=}} \quad \underline{\underline{=}} \quad \underline{\underline{A}}^*$$


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1/2 B
- * 장애인부부, 노인,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각각 신청

6

~

- & 1/2 ' 6

* 사업별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37종 → 6종으로 통합

&/07'

6

1/2

6

& .7,7' ,

6

6

6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 & ' i n ~ 6

~ ~

- & 1/2 ' & c ' 6 71 Á

~

1/2

6

n

* ㄱ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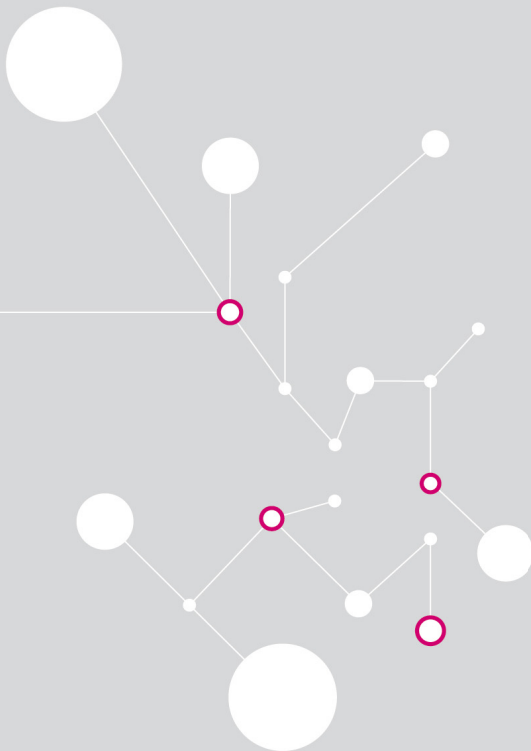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업무 : 읍·면·동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 * ~ 6 * ~
*
& 6 ' 6



제3장 개인정보보호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3장 개인정보보호

I

일반규정

1. 관련 법령

- 1/2 *
- 1/2 1/2 & 1/2 ' 1/2
- * B 1/2

2. 정보보호 주체

- 1/2 & C ' * *
- 1/2 & 1/2 ' 1/2

3. 보호대상 정보

- 1/2 8 1/2 1/2
- 1/2

- 예시**
- 일반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이메일주소, ID/PW, IP주소 등
 - 신체적정보 : 유전자정보, 건강상태, 질병, 장애, 진료기록, 신체적 특징 등
 - 재산적정보 : 금융재산,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소득, 동산, 부동산내역 등
 - 사회적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전과, 범죄기록, 직장, 고용주, 근로경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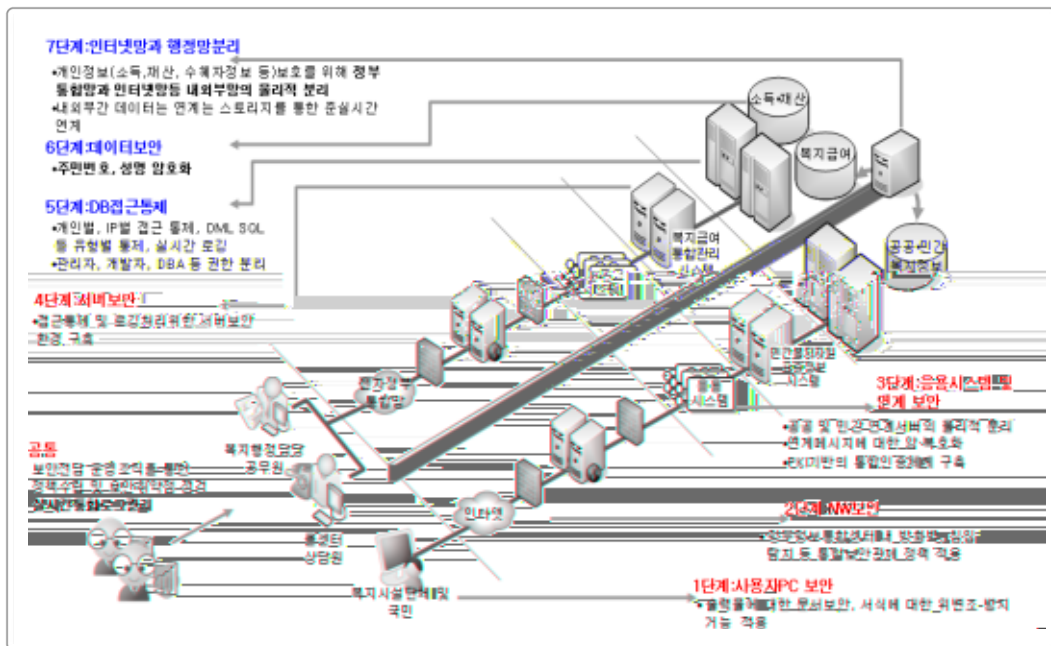
4. 개인정보 위험 요인

●	8	~ 1/2	*
●	8	1/2	*

II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1. 물리적 기술적 보안 정책



?NG

 $\frac{1}{2}$

● B@

~ *

B@

B@

 $\frac{1}{2}$

6

*

Á

& c '

&Qcaspc MQ'

*

* ±

* D

*

6

Á

 $\frac{1}{2}$

/

& '

Á*

B@ Xmlc

NA

~

Á*

 $\frac{1}{2}$

Á*

*

2. 관리적 보안 정책



*

*

&

'

예시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수정입력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만 권한 부여

±

~

Á

~



& c '

*

*

*

&

'

Á

Á

1

~



c

&/ '

&0 '

±

6

1

* 1/2

6

3. 법 제도적 정책

- $\acute{A}$ & $\perp$ 3 1 '
- ~
- * * *
- $\acute{A}$
- $\perp$ 1. '
- $\acute{A}$
- i
- $\frac{1}{2}$ & $\perp$ 12 '
- $\perp$ *
- ~
- $\frac{1}{2}$ 3 $\acute{A}^*$
- $\perp$ π 32
- π / . / π
- π $\frac{1}{2}$
- 3 3 π
- 3 3 π
- 3 3 π
- B 00 4 * 01 0 4

11
 11
 B 26
 01 0 4 1 11 3
 00 4 * 01
 0 4
 1 0 11
 11 /0
 / 1 & 06
 , 11
 11 07
 /0 4 11 3
 1 11
 /0 4
 1 0 11
 11 /0 4
 / 1 01
 11
 /0 4 11
 3 1 11
 /0 4 1
 0 11

III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1. 배경

- 개인정보의 중요성 증가
 ○ 개인정보의 유출·침해 사고 발생 빈도 증가

- 2017년 12월 12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미국CSI/FBI 보고서(02)에 따르면 외부 해커에 의한 유출사고는 20%인 반면, 고의적 유출사고가 80%나 됨

2. 내용

- 개인정보 열람내역(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 열람내역(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 개인정보 열람내역(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비공무원이 가족관계, 소득 재산, 금융재산 정보를 열람

- 개인정보 열람내역(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모니터링 후속 조치

● 1/2

& C ' .

 $\mathbb{A}^*$

*

6

 $\frac{1}{2}$

6

 $\ast / 1/2$ $\frac{1}{2}$ $\mathbb{A}^1$ $\mathbb{T}$

& C'

7

2

*

 $\hat{A}$ $\ast \quad 1/2$ $\hat{A}$

: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제2장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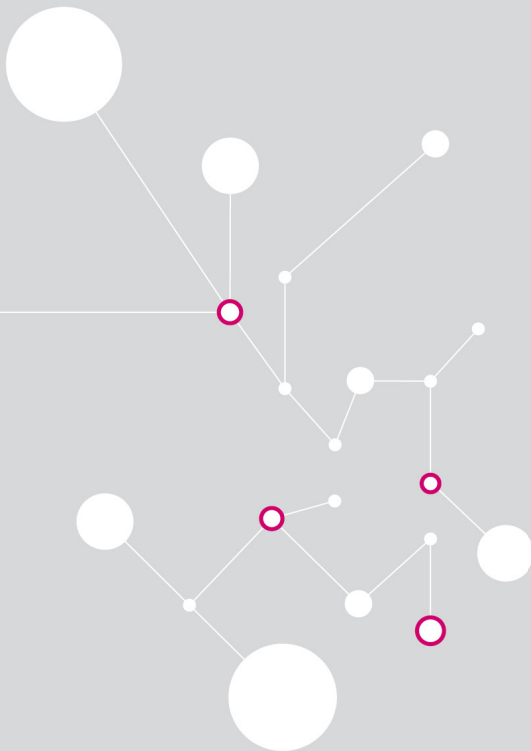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제4장

제5장

M I N I S T R Y O F H E A L T H & W E L F A R E

제1장 신 청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1장 신청

I

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1. 목 적

- $\frac{A^*}{\frac{B}{C}}$ $\frac{D}{E}$ $\frac{F}{G}$

2. 상담유형

- 8 $\frac{A}{B}$ ~ $\frac{C}{D}$ 6
- 8 $\frac{A}{B}$ $\frac{C}{D}$ ~ $\frac{E}{F}$

제2편

제1장

신

청

4. 유의사항

- ~ 6 * 6 Á ~ i ±
- ± 6 Á* ~
- ±
- 6 ±
- ±

II 신청

1. 신청권자

- _____
- _____ ㄱ
- _____
- _____

2. 신청장소



&

'

6

※ 기초연금금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 8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종교 학생 교육비)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6

6

~

6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 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희망키움통장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보육(보육료지원) *양육수당은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만 제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장애인등록 및 관련 서비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기준 참고 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첨부) 차량등록증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알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빙 자료
기타(사업별 신청자)	시설입소신청서 해산 장제급여신청서	건강진단서(시설입소시 해당자) 출생 또는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

'

3

*

/

~

제2편

제1장

신

청

4. 신청절차

● & ' _____ ~ ≡

● & ' 1/2 6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 ' 6

*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참조

● & ' 6

~

5. 유형별 처리방법

●

8 B * π* & *
* π '* π* ≡ *
& * ± *

~

●

Á π 6 i

8 _____ & '* ≡ *

* 영유아 보육·양육수당은 별도의 조사 없이 사업팀 이관



8 * 1. * ; ±

< >

- 기존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시,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정보시스템에 입력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추가 및 정보의 변경, 보장의 추가, 보장의 변경, 첨부서류 변경 및 신고소득·재산의 변경

6. 신청시 안내사항



8 30일 & ~ 60일 ~ '

8 /2 & ~ 1. ~ '

ㄲ 8 1. & ~ 4. ~ '

8 /2 & ~ 1. ~ '

~ 8 /2 & ~ 1. ~ '

ㄲ 8 1. & ~ 4. ~ '

※ 금융조사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은 30일 변경 추진 중으로 개별법령 개정 시 별도 통보예정



* 6 ~



* &QKQ'

&c ' ~



Á

& B ' Á

~ * Á * ±

제2편

제1장

신

청

* 6
*
±
± 6
± ~ 6
& π ' Á ~
± 8 * B * B *
*
π ±
8 π ±
* ± * π ±
± 8 π Á Á Á
± ±
* 4. * &
'* 6

& π ' 장애인연금법 제 16조에 따라
Á ~
± 8 * B * B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8 π ± * 1/2 *
* ± * π
± (

* 지급정지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_____	±	π ±
	± _____ ½		
B	8 /	* 1천만원	π* 6 & 27 '
	π 8 /	3..	π& 07 1 '
	± 8 /	/	π& 13 / '
	π 8 /	3..	π& 03 1 '
	8 /	* 3..	π* 6 & 32 '
	~ 8 /	* 3..	π* 6
& 07 0 '			
	± 4½ & 1.. '	Á &	
,			
	* *	i	*
0.	~		
●		Á	
B ~	*	i ±	
	& '		
● Á			

	~		
	± ±		
π	±	Á	

제2편
제1장

신

청

$$\begin{array}{cccccccc}
 & \perp & & \perp & & * & & * & & * & & * \\
 \hline
 & \perp & & \perp & & & & & & & & \\
 \hline
 \hat{A} & & & & & & & & & & & \\
 \hline
 & & & & & & & & & & & \\
 \hline
 & 3 & & \hat{A}^* & & \sqcap & & & & & & \\
 \hline
 \end{array}$$

*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 (2) 조사대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3) 조사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 (4) 조사결과처리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참고)

III

접 수

1. 신청 등록

- 6 ~
- i
- & c '* & '* & c '
- $\perp$ *

2.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6 & ' ' ,
- 6

제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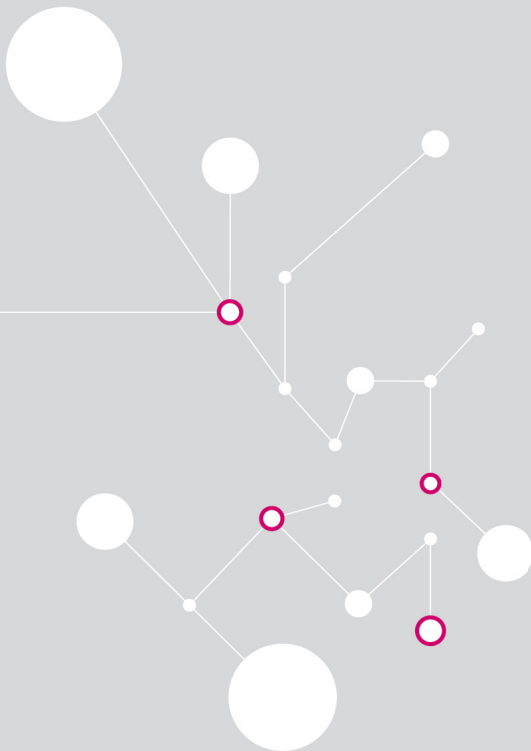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제1장

신

청

제2장 조 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2장 조 사

I

조사개요

1. 조사종류

- 8 ± ± n ±
- 8 ± n ±
- 8
- 8 6
- * ~ ±
- / & '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2. 조사대상

- B * ± 8 ~ 6 *
- 7 8 ~ 6

제2편

제2장

조

사

3.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

4. 조사원칙

- ~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증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
- * ~
- Á
- Á

5. 조사방법

- 


































































6. 조사절차(신청조사)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신청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관리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관리팀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명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통합조사 관리팀
	추가 자료제출 요구(7.자료제출요구 참조)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관리팀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를 통한 재산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여부 판단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의뢰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통합조사 관리팀

7. 자료 제출 요구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고용 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파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취업 퇴직사실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 확인서	사업자 소득 파악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여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어업소득 파악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임업소득 파악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 파악(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u>무료임대확인서</u> (<u>사용대차확인서</u>)	<u>사적이전소득 파악</u> <u>주거급여 대상 확인</u>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임대차계약서(전 월세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임차보증금 파악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개인간 사채 확인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근로능력 판정
	통장사본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8. 유의사항

- * 6 ~ Á
- ~ ± ~ Á*
- ~ ~ ± ~

II

보장가구의 결정

1. 목 적

- ~ ~ 6 *
- ~ ~ 6
- ~ 6

제2편

제2장

조

사

2. 사업별 보장단위

- 8 ~ 6
- ㄴ 8 ~ 6 1/2

			**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가구/개인	개인

*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선정·보장 가능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3. 사업별 가구의 범위

- ㄴ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	부모 및 형제 자매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가정 해체로 조부모 양육 시)와 아동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인과 그 배우자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동거인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아동 *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미만 (취학 시 만22세) 아동

				*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미만 자녀 (취업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부모 및 형제 자매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30세미만 자녀 (취업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가구원과 분리된 가구의 주 소득자 교육, 양육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이 확인된 사람 등	거주불명등록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또는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 (사실혼 포함) <u>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자</u> *고유식별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아동의 부모 또는 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 (사실혼 포함) <u>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자</u> *고유식별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해당 사업지침 참조)

제2편

제2장

조

사



		()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사업별로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u>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u>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u>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u>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 > 가출 행방불명 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배우자중 혼인신고 후 2년 경과된 사람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20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 등록 시)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 청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u>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u>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u>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u>

			< _____ > 가출행방불명 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주소득자(생계 의존) 자녀(생계 의존) 동거인(생계 의존) 사실혼 배우자(생계 의존) 외국인 배우자(생계 의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 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재외국민
		부 또는 모(외국인포함)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자녀외의 세대원 < _____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 22세)을 초과하는 혼인 전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자'는 조사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제2편

제2장

조

사

5.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X	X	X	X	X

	()	
보장가구 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권자의 가구범위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등을 확인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가구구성형태(재혼한 부모, 부모가 다른 자녀 등에 따라서 제적등본 확인 08.1.1일 전 '가족관계 변동 자료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주민 등록 조회를 통해 부양의무 자가구원 등록

6. 공적자료 조회

~ 6

7. 보장기관이 다른 가구원 조사 및 변동처리 방안

~ 6 ~ 6 ~ & ㄷ*

' i ㄷ

& '

*

ㄷ

※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주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보장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자료를 스캔등록 후 처음 신청한 주 보장기관에 알림기능으로 제공되고, 주 보장기관에서 변동자료를 적용하면 관련 적용항목을 자료 제출한 다른 보장기관에 반영토록 함



3. 소득 산정기준

* 근로상태 변경없이 공적자료에 대한 소명시도 동일 기준 적용

 / ' * & * * * ' * & * ' ' & $\overline{\Pi}$ ' ,

1½ ‘ ,

● π & *

‘ ’

$\cdot$

$\bullet$

$*$

$\&$

$\sim$

$\&$

$*$

$*$

$*$

$*$

$*$

$\&$

$\underline{\underline{}}$

$\underline{\underline{}}$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 * & ' 1½ ‘ 0’ ’

● || & * * & * * ||

'

,

- 1)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2)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계속 유지함

()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반영할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공적자료로 연계된 전전전분기와 전전분기의 월평균소득)

예시 12월 확인조사시 공적자료 반영시에는 1/4, 2/4분기의 월평균소득

- 공적자료가 현재의 일용근로자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소명한 경우에도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예시 12월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간 소명자료 반영시에는 전전분기, 전분기 평균소득 반영

4. 사업별 소득 조사 항목

● $\perp$ ~

i

● $\perp$ ~

~ ~

8

& '

~

8 i

& '

Á*

& '

예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 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
- ②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
- ③ 기초연금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만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되고, (×)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미적용

제2편

제2장

조

사

				*		,	
1.							
							×
							×
					**		×
2.							
							×
							×
							×
3.							
4.							
		△***					
							×
5.							
							×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연금(공공일자리소득)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포함

*** 기초연금(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
()

1 :
2 :

※ 「행복e음」연계 후 적용 (4월 이후 예정이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
,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

,
()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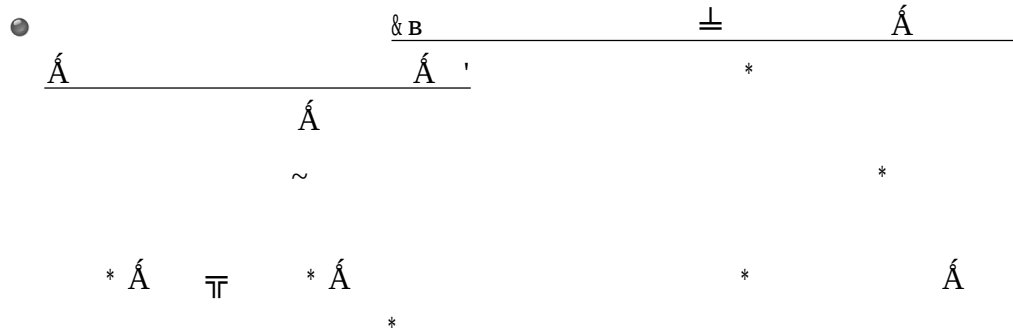
●
()

:

예시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

● 16.1 , ()
() ()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국세청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부록 사업별 서식 6호)를 제출받아 처리

- ① 근로하였으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 ②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③ 조회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 수급자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받을 것
- ※ ①, ②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액이 조정됨을 민원인에 설명할 것
- ※ 확인조사시 정비화면에 입력된 내역은 시스템으로 취합하여 국세청으로 전달되므로, 확인서 징구 및 입력 작업 철저 요망
- ※ ③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타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를 제출받아 결과 반영

& ' '



6

ㄷ ㄷ



ㄷ

ㄷ

1'

ㄷ

ㄷ

ㄷ

&Á

'

ㄷ

ㄷ

ㄷ

&/

&03

- '

&/

/..

'

&Á

'

ㄷ

ㄷ

ㄷ

&

//,4

- '

B ~

&Á

'

ㄷ

ㄷ

ㄷ

&

1/,4

- '

&

'

ㄷ

ㄷ

ㄷ

&/

/..

- '

& ' '



*

*

'

~

2'

ㄷ

'

&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3)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1

& ~ '

● & '3' * * 4' * ~
* 5'

& '

● B & ' ㄸ

● & ' Á * * ~ ~ *

Á ~

=

-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ㄸ *

Á Á

● ~ * Á

● ~ & B '

- 5)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 6)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 판매하는 업
- 7)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 판매하는 업

2

& ~ '

● & '

& '

● B & ' ㄷ

● *

Á Á

● ≡ & ' * * *

● ~ & B '

3

& ~ '



~ ~

± ㄷ

& '



B

&

'

ㄷ



*

Á

Á



= & '

~

*



~

& B

'

4

& ~ '

8

*

*

& '



B

ㄷ



~

*

Á

Á



B

&

'

=

=

B

B

Á

~

& B

'

예시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제2편

제2장

조

사

1

① ~ ' 8

② ' '



B

③

'



~ *

2

① ~ ' 8 ㉞

② ' '



㉞

* B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 연계 ('16.1월부터), 이외
사업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이자소득)을 반영

3

① ~ ' 8 ㉞ * ㉞

② ' '



㉞

/ * 0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4

& ~ '

● B ㉞ B ㉞

& '

● ㉞ ㉞ ~

● ㉞ Á* ㉞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은 부채로만 반영

.

1

& ~ ' 8 i ㉞ i ㉞

㉞

㉞ ㉞

& '

● ㉞

㉞

㉞ *

㉞ ㉞

~ ㉞

㉞ & *

~

~

●

B ㉞ * ㉞ * ㉞ * ㉞ * B

㉞ ㉞

제2편

제2장

조

사

$\hat{A}$ $\perp$
 $\perp$ & $\perp$ * $\perp$ * $\perp$ *
 π' $\perp$ & π^* π'
 $\hat{A}$
 $B \sim$ i $\perp$ & π^* *
* 4 03 '
i $\perp$ & π'
 π
 π 6'
 $\perp$
 $\sim$
& '
& '
& '
* $\hat{A}$ * π^* π' *
 $\sim$ * $\sim$

※ 공적이전소득 세부항목의 소득산정 여부 및 기준은 사업별로 다름

& '
 $\perp$ *
 $\sim$ $\perp$

제2편 제2장 조 사

제2편
제2장
조
사

2 (, ,)

& ~ ' 8

& ' 7'

● & ' 8

8 B *

● & ' 8

& ' 8

⊥ Á

8 B *

8 B *

3 ()

● 1/2 8

⊥ & ' 8

● 8 B

※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9)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마. 보장기관 확인소득

1

● $\perp$ ~ $\acute{A}$
 $\perp$ ~ $\acute{A}$
 *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 $\perp$ $\perp$ $\perp$
 * * *
 *
 $\perp$ Π $\acute{A}$
 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2

● ~ $\perp$ * $\perp$ * $\perp$ * $\perp$
 $\perp$ & $\perp$ $\perp$ ' ~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 '
 &/' ~ $\acute{A}$ $\perp$
 ~ $\acute{A}$
 ~ $\acute{A}$ $\perp$
 * 6 6
 ~
 $\acute{A}$ $\acute{A}$ ~ $\acute{A}$

제2편

제2장

조

사

0' Á ~ ±
 ' ~ 4. Á
 , ~
 Á ±

1' ± ~
 Á ±
 ± 6 Á
 Á
 Á ~
 Á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
 &/' ' ,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0' ± ~ ¾ Á 6
 1' *
 & Á ~ ~ '

3

~ '
 ● /
 ● / ~ Á
 & '
 /

&/' ¶
⊥ ~
* Á ~
* *

		‘ Á 6 ’		Á	
Á *	Á ~			~	±
*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0'					±
	‘	~	4.		Á
	,				± ½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5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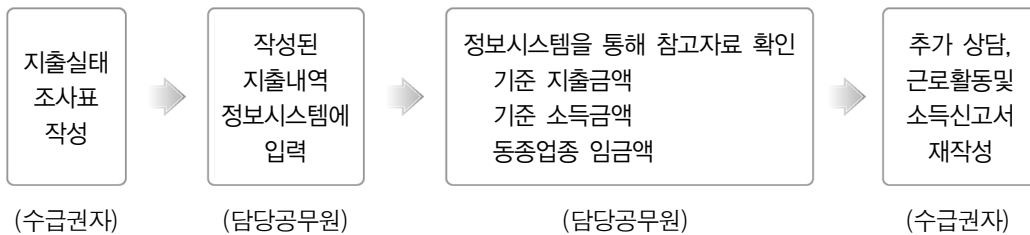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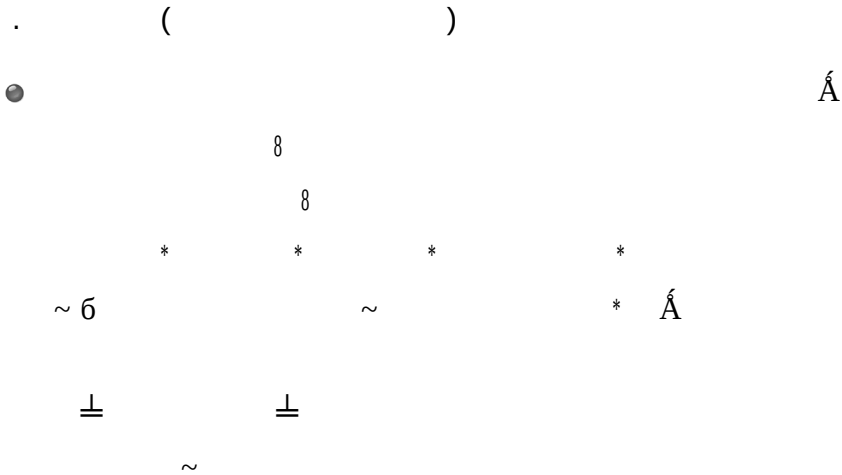
	‘	~	4.		Á
	,				“ ” ±
4.	±	/.	Á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조건부 과제외사유를 만족하는 소득의 종류가 될 수 없음.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다른 종류의 실제소득임

&1'					±
	±	~			
					±

&2'					Á
					±
	~	±	Á	Á	

6.



· ± Á*

※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사업별 서식4호) 참고

· ㄱ * ㄱ * ㄱ Á

-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 동종업종 임금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 $$\begin{array}{ccccccc} \bullet & \perp & & \sim & & \acute{A}^* & \\ & 3 & & ' & \acute{A} & , & \\ \bullet & \acute{A} & & & & * & * \\ & \Pi & & & & & \\ \bullet & \acute{A} & & \acute{A} & & \overline{\Pi} & \sim \\ & \acute{A} & & & & & \\ & . & & & & & \\ \bullet & & & & & & \& \\ & , & & & & & \\ \bullet & & & & & & \end{array}$$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 1 ()
- /.'* // ' & /.2 / * 0 * 1 ' *
- * *
- * 11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10) 논밭 임야 등

11) 건물, 시설물 등

- ~ ㉠ & ㉠ '
- & / . 2 2 3 '
- / .. ~
* 6
- & 4 // '
- & 4 / 2 / 5 '
* * *
- & 67 0 '
- ㉠
& '
- & '

2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을 적용함에 유의

- * * & * Á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예시 중소도시에서 8,000만원 주택 보유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적용하고 1,2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적용액(6,800만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을 적용

-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

● ± * * * B ~

● ±* ±* ±*

·

● & /02 '

* * * *

2. 재산의 조사범위

● ~ 6

* * ±* * ~

~ 6 ~ 6 ~ 6

3. 사업별 재산조사 항목

				*					
1.									
	,	,							
								×	
2.									
3.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금융포함) / 장애인자립자금대여(금융제외)

** 현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미연계 항목

4. 재산가액 산정기준

● ~ ~ D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보정계수(0.95)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 당)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시 군 구청장, 1 당)	개별공시지가 면적
	(, ,)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 군 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 군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수급권자가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 재산으로 처리)

& ~ ' * *
 ● 8 & 0 0 / 0 ' π *
 & 0 / 0 ' π
 ● 8 & c ' *
 * Á ~
 & ' * * π
 ● 8 * ~
 π& π* π '
 ● 8 π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 ' * * 6
 ● 8 * *
 ± & ' ~ * * 6
 & * * * π
 ,

제2편

제2장

조

사

●

$\frac{1}{2}$ & ' ~ Á Á
 & * ' c & & c ''
 Á*
 ~

*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2

,
 & ~ ' 8 & /.2 / 1 ' * & * '

●

& /.2 / 1 ' 8
 π Á

●

& 4 2 '
 & 0 / 0 ' 8

* Á ~

Á Á

& 4 2 ' 8

6

* * * * *
 $\frac{1}{2}$ π & '

< >

-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정보시스템의 토지 주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보정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3

& ~ '

●

*

~

ㄸ&

ㄸ*

ㄸ*

~

ㄸ

'

~

& '

●

~

ㄸ

ㄸ*

ㄸ

Á

&

'

●

/0'

~ ㄸ

$$\text{임차보증금가액} = \text{임차보증금} \times \text{보정계수}(0.95)$$

* 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

*

4½

/½

/½

ㄸ

&

4

'

4

& ~ '

8

& /.2

2

3

'

●

8

●

8

ㄸ

6

12) 보정계수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 ' .

2

/1'

 $\sim \mathfrak{N}$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5

 $\& \sim '$

● / ..

2

i

6

 $\hat{A}^*$

6

 $\dot{A}_{RT}$

* 건설기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은 동산으로 처리

*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종은 자동차로 처리

& ' .

● 2

 $\frac{1}{2}$

2

/..

2

2

*

A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액을 조시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 (시기는 추후 통보)

6

 $\& \sim '$ 

& 4

//

†

✱

&

! *

&

1

$$(\quad)$$

-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굴

13)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 '

2

7

/6

8

8

8

8

8

& '

*

2

8

$\& \sim '$

0

& '

6

!

π $\emptyset$ 26
 $\sim \mathbb{D} \&$ $\sim$ ' $\pi \&$ π '
 π π $\perp$ $\emptyset$ $\sim$ $\pi \&$ $\perp$ π ' $\pm$
 π

9

$\& \sim$ '
 $\bullet$ π
 $\&$ '
 $\bullet$ $\acute{A}^*$ π $\frac{1}{2}$ $\sim \mathbb{D}$
 π $\&$ π^* π π '

10

$\& \sim$ '
 $\bullet$
 $\emptyset$ $*$ $*$ $*$
 $\emptyset$ $*$ $*$ $*$
 $\&$ '
 $\bullet$ $\acute{A}^*$ $\sim$

제2편

제2장

조

사

1

- π * * * B ~
- π^* π^* π^*

2

- π & * '
- $\pm$ * π
- $\perp$
- π & ' & '

※ 단, 잔액(대출)증명서는 소명일 전월 이후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토록 함

3

- $\emptyset$ ~
- B & B 0/ 1 * 01 0'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자력학인(구 우선돌봄차상위) 사업 포함

- π & π /. 0 * // 0 * /0 '
- π & π /0 / '
- $\perp$ & $\perp$ /1 '
- ~ & ~ // * /0 0* /0 1'
- & 3. 0* 3. 1'
- $\frac{1}{2}$ 6 & $\frac{1}{2}$ 6
- /4 0* /4 1'
- & 01 '

4. 4'

1 1'

~ 6 & B 8 ~ 6 * 7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7 <

7* 7* 7 6 7 8 1½

7* 7* 7 8

* * 7* 8 ~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 * * 8 ~

7 8 7 ½

7

: <

7

: <

8 7 7 / 7 7

7 8 7 ½ 7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7 8 /.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ㄷ

ㄷ



8

8 /



ㄷ

*

~ 6

~ 6

&

*

,

Á

ㄷ

ㄷ

ㄷ

&

,

ㄷ

ㄷ

3

1

ㄷ

1

0

ㄷ

4



ㄷ

ㄷ

&

,

ㄷ

&

,

ㄷ

11

6

Á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Á

ㄷ



1

● /02
& ' * * *

2

● B 1/2 ~
~

-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에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3

- ' ,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 '
- & '
※ 확인사항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 * ≡& ' _____

4

기초생활보장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 ¹⁴⁾ 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타법의료급여 중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 규정 적용
기초연금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모든 국가유공자 차량이 아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재산산정에서 제외 지차제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은 전부 재산 산정에서 제외 예시)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소유한 차량 (적용방법) 해당 가구에 재산산정 제외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노인 부부 각각 1대에 한하여 제외 가능
장애인연금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경우라도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며,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씩 제외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개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산에 산정 (고급자동차 우선 적용)

- 14)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또는 보호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호처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에 유의

제2편

제2장

조

사

기초생활보장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 사용자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등급 1 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¹⁵⁾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 하고 있는 자동차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일급 41,680원/14년)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¹⁶⁾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거동이 곤란한 경우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질병 부상으로 차량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차량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차량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	--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 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차량 (2015년부터 50cc 미만도 이륜차에 포함)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보유한도 제한 없음)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기초연금 장애연금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단,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고급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의 자동차로 기록되어 대표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기준 적용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준용
차상위자활지원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 15)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량
- 16)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99년 5월식의 경우 09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1

● ~ 6 (& * * ₩ ±
,
~ ~ ((* (((* ₩ ±
~ ‘ ~ 6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 ‘ ,
~ C
± ~
± ~ ± Á

2

● ~
8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8 ₩ ±

*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 6 * *
- * & ' * 6 *
- 6 6 ㄸ
-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화장장 등 포함)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 6
- * ㄸ ~ 6 ㄸ
- * (기초연금)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
- ± ± ± *
- ± & * 6 ~ * ~ ± ㄸ
-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양육비 포함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
- ㄸ ㄸ
- ㄸ ㄸ& ' ㄸ ㄸ ±
-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ㄸ
- ~ *
- * ㄸ (
- & * i * ± '
- ㄸ ±
-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소진시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씩 차감 (기타 보장)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씩 차감



1.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라.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카. 비영업대금의 이익 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소득 및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소득 가. 제5조의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대상자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 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와 제외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2.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토 지 : 지적법 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나. 건축물 :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다. 주 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 가. 입목 : 입목, 지상의 과수. 입목과 죽목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선박 가. 항공기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선 박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선박, 기선 범선 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제18호까지 규정에 의한 회원권 가.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라.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제8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가.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 금융자산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 운송보험 포함)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가.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근로 소득) * 확인조사시만 반영	분기	고용장려금: 전월 근로 소득	매분기 초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 소득) * 확인조사시만 반영	년	고용부담금: 전월 근로 소득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1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사업주가 분기별 신고한 자료	분기	별도 표 참조 신규 신청사: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 한 가장 최근 6개월 자 료)	매분기 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12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1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12	수시
	()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의 월 수령액	연1회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고정 : 1월 변동 : 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1회	
	(,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매각 현황 제공	반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매각 현황 제공	반기

제2편

제2장

조

사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금융재산별 가액 요구불 예금: 3개월 평균잔액	수시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수시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년초 확인조사 시점(2회)

*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수산물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농업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1	2	3	4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다음해 5월말

VI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승 용 차 : 월 100%
	{0.7 (근로소득 56만원)} +기타소득*	[(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연 소득환산율 / 12월+P*	× 연 4%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긴급복지지원 : 소득인정액제도 미적용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평가액) 상시 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0.7 (근로소득 52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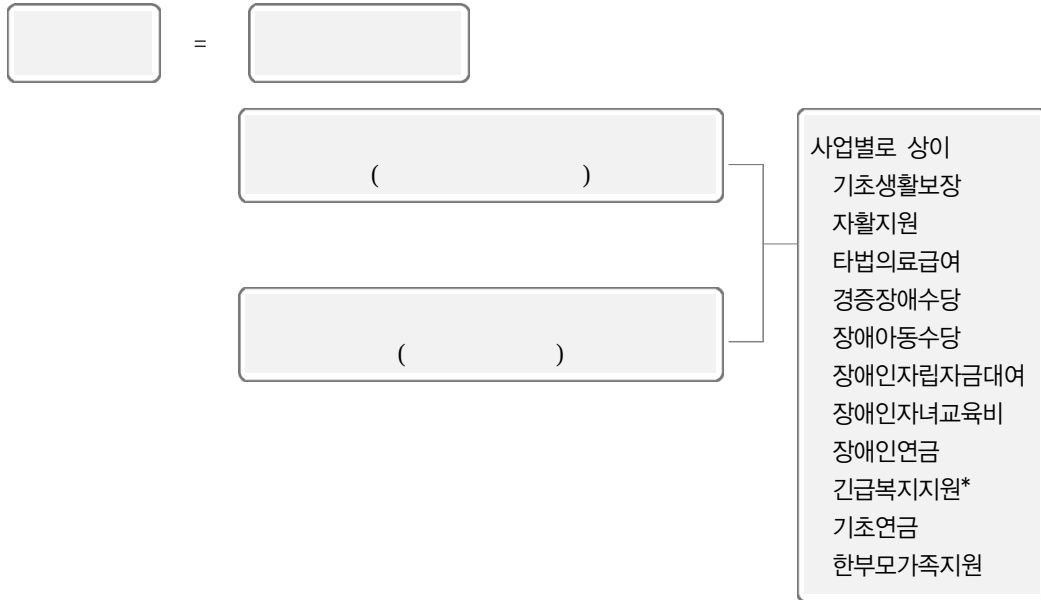
제2편

제2장

조

사

2.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액 미적용

(1)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제2항에 의한 추가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¹⁷⁾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 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 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¹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 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u>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 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u> 입양특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월15만원)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기초생활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¹⁹⁾(타법의료급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5,4.1~16.3.31 : 282,600원)에 해당하는 금액
	<u>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로서 평균 1개월간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u> <u>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등 월평균 지출액</u>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이 경우 차감되는 주거비는 주거지원 기준을 넘을 수 없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

- 17)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 18)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아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19)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제2편

제2장

조

사

(2)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만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 및 사업소득(대학생제외)	20만원 나머지30%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30만원 나머지30%
	65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30%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30%
	특례보호기간중인 북한이탈주민	30%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10%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	30%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 제 16조에 의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휴학생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 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 이외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 (행복e음 자동반영)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적용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전액 공제 *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하역종사자) 미만자의 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0원”으로 처리

$\bullet \frac{1}{2} \quad 8 \quad \sim 6$
 $\hat{A}$
 $\sim$

$\bullet \quad \pi \quad 8 \quad \sim D_8$
 $\sim D'$
 $\pm$
 $*$

~ 6
 π

			중소도시	농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타법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차상위분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지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농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begin{array}{ccccccc} & & \sim & & * & & \\ & & & & \overline{\Pi} & & \hat{A}_* \\ & & & & & & \end{array}$$

- ※ 장애인연금은 자동차 및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서만 공제함에 유의
- ※ 기초연금 사업에서는 공제의 순서가 없으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

1

● ㉠ ㉡*

2

● ㉠ ㉡

● ㉠ ㉡

㉢& * B ~ * ㉣ * *

* B 2

'

㉤& * B * *

*

B & '* ㉥ ~ ~

㉦ ㉧ ㉨

● 1/2 & '

& '*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 불인정

● ㉠

3

● ㉠ ㉡

㉢

< >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사업별로 상이)

- π π $\perp$ π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중 (반영 시기 추후 별도 통보)

- $\frac{1}{2}$ & ' π $\acute{A}^*$
 - &0 ' 6

- π π $\acute{A}^*$ & π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등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8 π * π π

4

- * * π $\pm \acute{A}^*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 $\pm$

※ 기초연금 사업에서는 부채차감 순서가 없으며, 재산의 총액에서 차감

5

- & ' ,
- ㄸ
- & ' ‘ ’
- & ' &/ ' ,

6

- ㄸ

()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월 6.26%	월 100%
	연 4%	연 4%	연 4% *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적용

VII

부양의무자 조사 (기초생활보장사업)

1. 조사의 내용

-
-
-

2. 조사방법

•

• ~

~ 6

•

()

•

* ~ ~

±& ,

*

•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8

/, .2%

Á*

2, /5%

•

•

*

*

*

*

*

※ 부양의무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제2편

제2장

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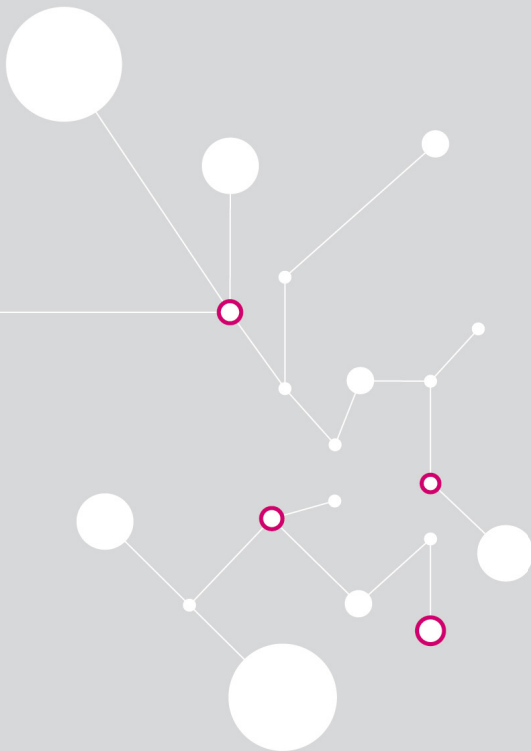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연령산정 방식

● 8 & $\pm$ ' ~ 6 6 Á
‘ ’
* * $\pm$ ‘ ’

제3장 보장결정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3장 보장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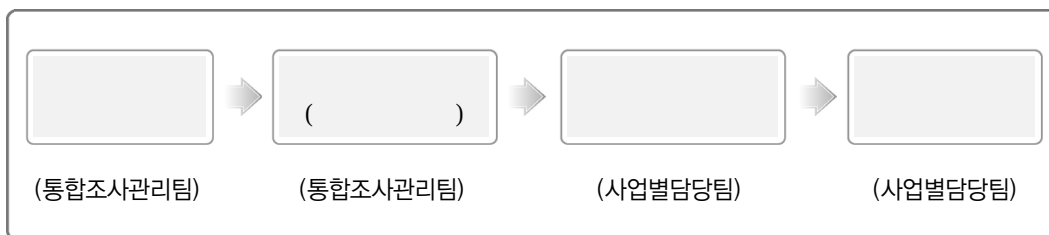
I 개 요

•

⊥

•

⊥



& ' ,



II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 복지급여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29%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 43% 교육급여 기준중위 소득 50%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16년 단독 100만원, 부부160만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16년 단독 100만원, 부부16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재산 대도시: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2%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중위 소득 60%)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급여 제외	X	X	X	X	X	X	X
		65세 이상 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만 18세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어린이 집 이용 만 0 5 세	어린이 집 미이용 만 0 5세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 수당 (18세미만 등록장애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2.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소득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 150% (건보료로 판정)	생계급여 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급 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구성원 포함), 다만 기준중위소득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건보료 판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건보료 판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원칙(건보료 로 판정) 사업별로 상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등 제외),	소득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150% (건보료로 판정) 서비스내용 월14만원 ~22만원	소득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100% (건보료로 판정)
	만 65세이상 만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장기요양 보험 등급외 A, B의 노인 장애 1 3등급 또는 중증 질환자 등 시군구청장 인정자 (차상위 계층 이하)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인정조사 표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 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인정조사표 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출산일 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별 상이	만 65세 미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1~3급등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 세대)	만18세미만 으로 뇌병변, 지적 지체성 청각,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중복 장애인정)	양쪽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언어 등록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III

보장결정

1. 조사결과 통보

- $\hat{A}^*$
- * π^* π
- $\perp$ $\perp$
- * π $\perp$
- $\&$ 1. ' π ~

※ 연장된 민원처리기한(기초생활의 경우 60일)까지 금융조회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는 선
보장결정 후 사후 조치

2. 보장결정

- $\&$ 6 ' $\perp$ $\&$ ' $\perp$
-

통 지

_____ $\perp$ _____ $\overset{\epsilon}{A}$ _____ $\perp$

$$\sim \frac{QKQ'}{\Lambda^2} + \text{c.c.}$$

8 *
 8 & * ' * 6 * $\underline{=}$ * *
 Á
 8 &
 8 &

●	$\emptyset \underline{1.} \&$	$\sim$	$\underline{4.}$	$\sim$	'
●	$\emptyset /2 \&$	$\sim$	1.	$\sim$	'
●	$\overline{\overline{\emptyset}} \emptyset 1. \&$	$\sim$	4.	$\sim$	'
●	$\overline{\overline{\emptyset}} \emptyset 1. \&$	$\sim$	4.	$\sim$	'
●	$\emptyset \underline{/2} \&$	$\sim$	1.	$\sim$	'
●	$\sim \emptyset /2 \&$	$\sim$	1.	$\sim$	'

제2편
제3장
보
장
결
정

V

이의신청

1. 개 요

●

~

6

~

2. 법적근거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 40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연금 법 제18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긴급복지지원 법 제16조	지침	한부모가족지 원법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급여 중지 포함)	기초연금과 관련된 처분(지급결 정, 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신청에 대한 처분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복지조치	<u>지원결정 내용</u> (연장결정 포함) <u>지원중단 및</u> <u>비용반환 명령</u>	보육료 양육 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급여 중지 포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긴급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u>지원중단 및</u> <u>비용반환</u> <u>명령을 받은</u>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대리인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리인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보육료 지원 신청자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6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3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	서면	서면		서면	구두 또는 서면	서면

3. 이의신청 절차

	생계 의료 주거 시 군 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교육급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 신청 대행 가능)	시 군 구청장 (읍 면 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특별자치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 군 구청장)	시 군 구청장 (긴급지원 담당부서)	시 군 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시 군 구청장
	10일 이내 교육급여 신청 대행인 경우 15일 이내	즉시			10일 이내		
	생계 의료 주거 시 도지사 교육급여 시도교육감	시 군 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 군 구청장)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읍 면 동장)	시 군 구청장
	30일 이내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15일 이내	1개월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 대상 최초처분 결정일자로 소급	급여신청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달로 소급 급여신청 이외는 처분 결정월로 소급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	
	생계 의료 주거 이 의 신 청 인, 시 군 구청장 교육급여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시 군 구청장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생계 의료:60일 이내보건복지부 장 관 에 게 이 의 신청 주거 6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신청 교육 6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4. 이의신청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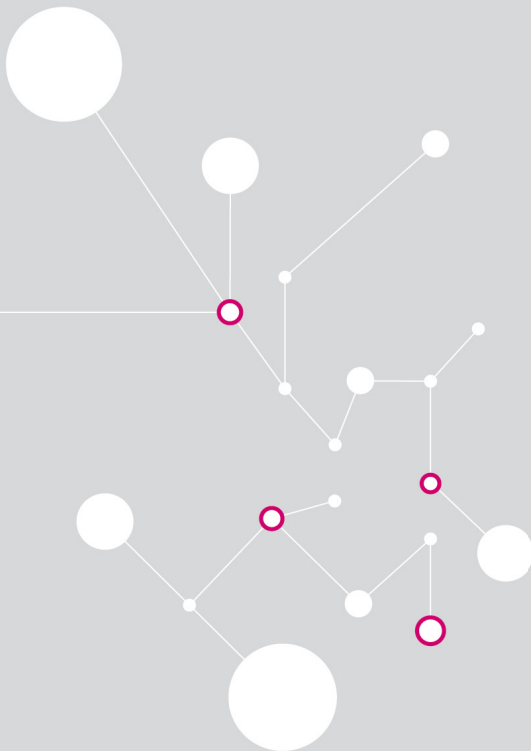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 & ' ,

● 6

& ' ,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4장 급여 서비스 실시

I 급여 서비스 개요

1. 주요 복지급여

대 상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 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65세이상 노인 중 기준 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이상 경증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1~3급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자녀 (기준중위소득 52%)
급여액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자가가구 : 주택 보수범위 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 급여지급	입학급 수업료 금지 (지역)별 교과서대 131,300 /년 부교재비 39,200 /년 학용품비 53,300 /년	1인 60만원	75만원	노 인 단 독 202,600원 노 인 부 부 324,160원 (16.1월~ 16.3.월) * 16.4월부 터 급여는 추후통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4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중증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중증 7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경증 2만원	교과서대 : 131,300원/년 부교재비: 39,200원/년 학용품비 : 53,300원/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만0 5세 영유아	고등학교 재학생	12세 미만 아동	중 고등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기초급여 18세 64세 : 최대 20.3만원* * 부부장예인 32.4만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16.1월~3월 적용 (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 부가급여*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취학전84개월미만 월10만원 장애아동:36개월 미만 월20만원, 36개월이상 월10만원 농어촌양육수당 : 만0 5세 아동 10 20만원	금지 (지역)별	월 7만원 5세미만 아동 양육 만25세 이상 미혼모 부자 및 조손 가족은 월 5만원 추가	연 5만원	월 5만원

* 부가급여

구분	18 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8만원	28.3만원*
기초(주거교육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16.1월~3월 적용('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매월 20일	수급자로 결정된 날	매월20일	분기별 25일까지	사유발생시		매월25일	매월20일	분기별 납입기한 전
	신청일		신청일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 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월할 계산			100%	100%	
	중지된 달 까지 지급*	중지일 까지 지급	중지된 달 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15일 이전 신겨주지 16일 이후 구겨주지		15일 이전 신겨주지 16일 이후 구겨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15일 이전 신겨주지 16일 이후 구겨주지	15일 이전 신겨주지 16일 이후 구겨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매월20일	매월25일	분기별 납입기한 전	매월 20일	연회 3월 급여지급일 (3.20)에 지급 단, 3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신규보호대상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날 이후 급여 지급일에 지급	매월 20일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100%	100%	월할 계산	100%	100%	100%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시설퇴소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지급	15일 이전 신거주지 16일 이후 구거주지	급여지급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에서 지원	미정

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i)			
	0~2	3 5		
	만0 2세 전계층	만3 5세 전계층	기준대상자 중 만0세 12세의 미취학 장애아	기준소득액 이하(법정저소득 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 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 무관지원 연령별 정부 재원단가 전액지원	소득수준 무관지원 월/ 220천원	월 438천원 *누리만3 5세 장애아 : 438천원	정액 100천원 * 방과후장애 아동 : 219천원
	바우처카드 결제 후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일			
	지원유형에 따라 일할계산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종지된 달까지 지급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소재지 보장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			

()						
기준대상자 중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의(요양 서비스 필요) 노인 골절 등으로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1~3급 장애인 (만6세 이상~만65세미만)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기준대상자 중 출산(예정)일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선정기준 개별 적용	만65세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1 3급 등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만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를 가진 만 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시간: 24시간, 27시간, 36시간 내용:가사 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급여: 기본급여 430 1,063천원, 추가급여 91 2,464천원 (추가급여간 중복 가능) 내용: 중증 장애인의 사회 활동지원 위해 지급(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지원)	시간 단태아(2주) 쌍생아(3주) 삼태아(4주)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별, 지역별 상이	시간: 24시간, 27시간 내용: 가사간 병서비스 제공	월14 22만원상당의 언어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 지원 (지역별 상이)	월16 22만원상당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프로그램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매월(27일)대상자 결정처리 및 전송완료된 대상자에 대해 익월 바우처 생성 원칙
(단, 산모 신생아사업의 경우 수시신청이며, 결정통보 후 익일 생성)

익월 바우처 생성 중지(2개월 미사용, 2개월 본인부담금 미납, 부정행위자)

바우처생성 시 거주하는 보장기관에서 월단위 바우처 지급원칙

단,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전출 시 해당 바우처 중지되며, 산모 신생아사업의 경우 1회성사업으로 전출입처리 없음

II

복지급여

1. 급여 지급절차

(10 15)	(15 24) *	(16)	(18)	(18 20)	()
(10 20)	(20 24)	(21)	(23)	(23 25)	
	정보시스템				

* 급여자료생성은 당월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이후에는 급여지급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불가(단, 지급제외처리는 가능)

1

● ± & * ~ 6 *

±

2

● ± i ±
● ± ± Á ±

● ± & /3 ' ~ ± ~ ±

3

● ㉠ ㉡ ㉢

4

● ㉠ &NBD ' &c ' ㉡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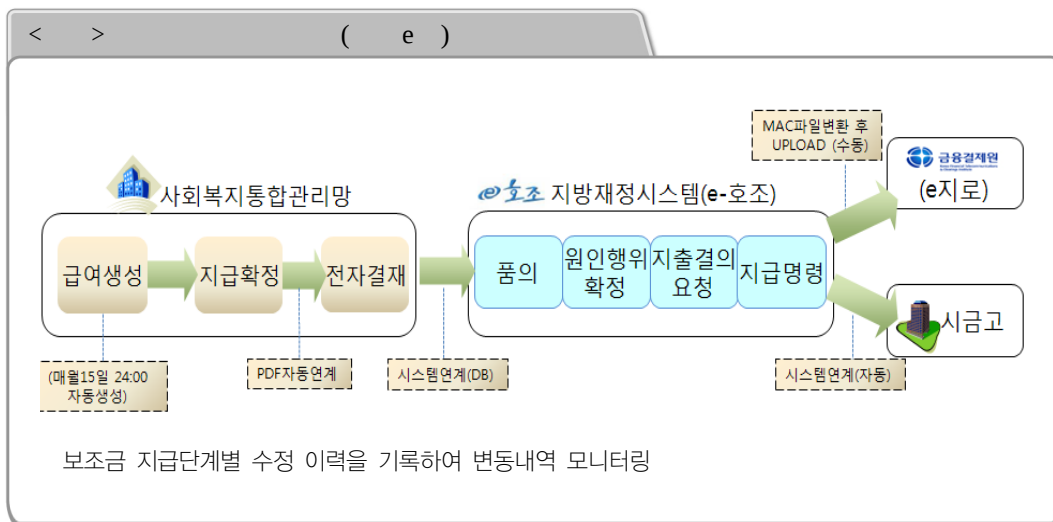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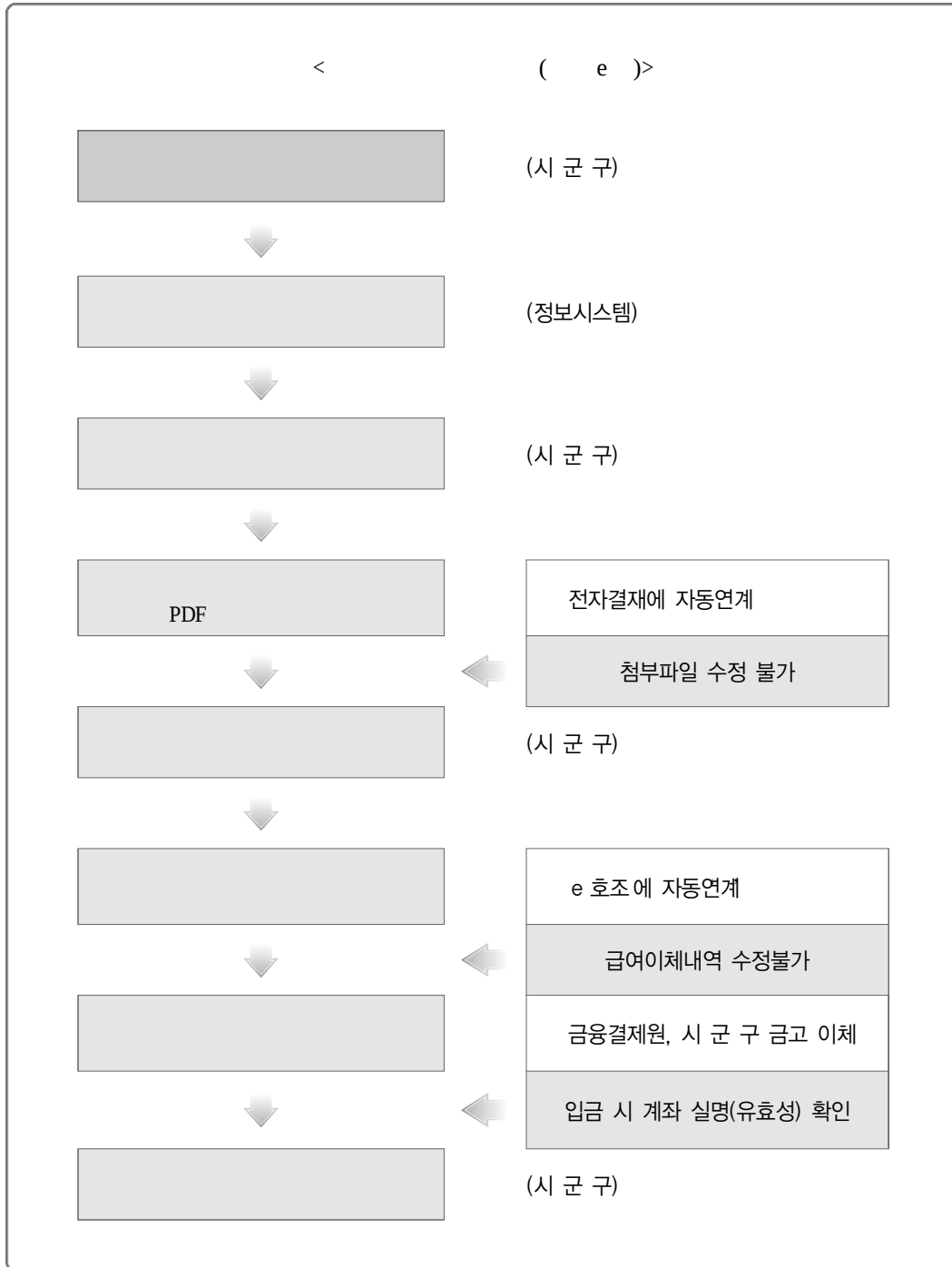
● &c ' ㉠ c &T' ' i 6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6

● ㉠ ㉡ ~ ㉢ ~







(e)

정기급여 : 총 64종

				e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일반)	매월지급	
	생계급여(시설)	생계급여(시설) 주,부식비 등	매월지급	
		생계급여(시설) 월동대책비	매월지급	
		시설위로금 특별위로금	매월지급	
	주거급여	주거급여	매월지급	
	교육급여(일반)	교육급여(일반) 입학금	분기지급	
		교육급여(일반) 수업료	분기지급	
		교육급여(일반) 교과서대	분기지급	
		교육급여(일반) 부교재비	분기지급	
		교육급여(일반) 학용품비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교육급여(시설) 입학금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수업료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교과서대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부교재비	분기지급	
		교육급여(시설) 학용품비	분기지급	
	기초생활양곡할인	기초생활양곡할인	매월지급	X
	차상위계층양곡할인	차상위계층양곡할인	매월지급	X
	자활급여	자활급여	매월지급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매월지급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매월지급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매월지급	
	입양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매월지급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매월지급	
	양육수당	양육수당(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매월지급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매월지급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매월지급	
	기초연금	기초연금	매월지급	

				e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매월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매월지급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생계, 의료)	매월지급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시설)	매월지급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매월지급	
	장애인급여(지자체)	장애인급여(지자체)	매월지급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매월지급	
	장애아동수당(시설)	장애아동수당(시설)	매월지급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매월지급	
	장애아동수당(지자체)	장애아동수당(지자체)	매월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자녀교육비 교과서대	분기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 부교재비	분기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부자가정아동양육비	부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조손가정아동양육비	조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청소년한부모 모자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양육비	매월지급	
	청소년한부모 부자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양육비	매월지급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	모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부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조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모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부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조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한부모가족학용품비	모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부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조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e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의사상자자녀학비	의사상자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의사상자자녀학비 입학금	분기지급	
		의사상자자녀학비 수업료	분기지급	
		의사상자자녀학비 교과서대	분기지급	
		의사상자자녀학비 부교재	분기지급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매월	

수시급여 : 총 4종

				e
	해산급여	해산급여	수시지급	
	장제급여	장제급여	수시지급	
	생계급여(긴급)	생계급여(긴급)	수시지급	
	의사상자 장제급여	의사상자 장제급여	수시지급	

청구성급여 : 총 43종

				e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교육지원)	긴급복지(교육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해산비지원)	긴급복지(해산비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장제비지원)	긴급복지(장제비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주거지원)	긴급복지(주거지원)	수시지급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수시지급	
	긴급복지(연료비)	긴급복지(연료비)	수시지급	
	긴급복지(전기료)	긴급복지(전기료)	수시지급	

				e
	청소년한부모부자 검정고시학습비	부자검정고시학습비 등록비	수시지급	
		부자검정고시학습비 교재비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 검정고시학습비	모자검정고시학습비 등록비	수시지급	
		모자검정고시학습비 교재비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부자 자산형성계좌	청소년한부모부자자산형성계좌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 자산형성계좌	청소년한부모모자자산형성계좌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부자 아동의료비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의료비	수시지급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의료비	수시지급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요양비)	수시지급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수시지급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수시지급	
	본인부담보상제	본인부담보상금	수시지급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금상한금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자립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상담지원)	청소년특별지원(상담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활동지원)	청소년특별지원(활동지원)	수시지급	
	청소년특별지원(기타지원)	청소년특별지원(기타지원)	수시지급	
	사할린한인지원 (배우자항공비)	사할린한인지원 (배우자항공비)	수시지급	
	사할린한인지원 (아파트집기비품)	사할린한인지원 (아파트집기비품)	수시지급	
	사할린한인지원 (국내임대주택입주비)	사할린한인지원 (국내임대주택입주비)	수시지급	X

				e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수시지급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수시지급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수시지급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시지급	X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수시지급	
	운영보조금(시설)	운영보조금(시설)	수시지급	
	기능보강보조금(시설)	기능보강보조금(시설)	수시지급	
	사업비(시설)	사업비(시설)	수시지급	

2. 급여기준

-
- $\perp$
0. & π $\perp'$
* π 03
 $\perp$ $\perp$
● $\sim$ $\perp$ 8
 $\perp$
 - $\perp$ $\frac{1}{2}$
* $\perp$ $\perp$ $\frac{1}{2}$
※ 단, 기초연금의 사전신청인 경우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의료급여, 긴급복지는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 입양아동지원은 '수급자로 결정 통지한 날일 속한달' 이 급여개시일이 됨
 - $\perp$ $\perp$ $\perp$

- $$\begin{array}{ccccccc} \bullet & & \perp & & \perp & \frac{1}{2} & \&\perp & & \perp \\ & & \perp & \frac{1}{2} & \&\perp & & & & \\ & \perp & & \perp & & \perp & & & & \end{array}$$

•

-  $\perp$ &/3 ' $\emptyset$ & ' 6 $\perp$
 $\perp$ &/4 ' $\emptyset$ 6 & ' 6 $\perp$

※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급여확정이 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보장기관에서 급여지급

- ~ 6 ~ 6 ±

■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제외

3. 급여변경

-
- - ~ 6 ~ 6
 - ~ 6
-
- $\perp$ * $\perp$ * $\perp$
-
- *
-
- $\perp$ & ' _____
 -
- ※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 8 * *
 - 8 * ~
- &QKQ' &c ' ~

4. 급여중지

· 급여중지 사유 발생 시

① 급여중지 사유 발생 시

② 급여중지 사유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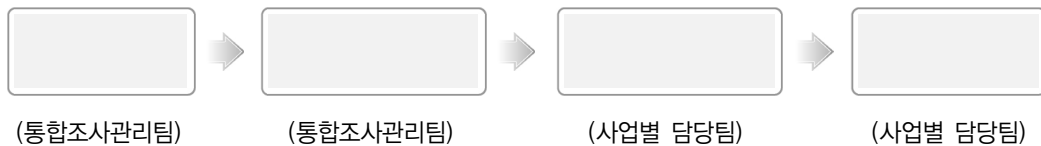
※ 기초연금 지급 정지로 처리

· 급여중지 사유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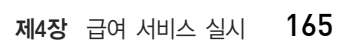
※ 급여 중지는 수급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급여 중지 후 서비스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급여중지 사유 발생 시

· 급여중지 사유 발생 시



기초연금사업은, 지급정지 상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진단이 내려진 병원진단서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 ㄱ 1 & ' ± ~
 ~ ±
 & B 7 1 '
 ± & B /0 /1 1 '
 ※ 한부모가족지원(자녀학비), 장애인복지(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기관(학교)계좌로 지급 가능
 ± & B /2 0 '
 & ± 1 1 '

※ 단, 기초연금사업에서 부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가 동의하면 배우자 일방의 계좌에 입금 가능함

3

● $\perp$ $\perp$ * * ~ π
 π *
 6 π & *
 ' π π & * '
 π $\perp$ $\perp$ $\perp$ $\cdot$ $\cdot$ 6 c ' ,
 $\perp$ π * $\cdot$ 6 π &
 $\perp$ π & * ' π &
 * ' π
 c ' , 6 π * π $\perp$
 ~ $\perp$
 . : 1 1

1

● π $\perp$ $\perp$ π $\perp$ 0½
 $\perp$ & ' $\perp$
 ● * / $\perp$ ~ 0½ $\perp$ & ' Á
 /½ & .7 4 7 '

2

● 0½ π $\perp$ $\perp$ / /
 ~

※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지원결정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부모 등 보호자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65세 이상 노인
()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입양아동의 부모
	입양장애아동의 부모
()	청소년
, , ,	한부모

제3자(기관)가 수급자가 되는 급여 : 장제급여, 교육급여, 의료비지원 등

1.

• 도입배경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용통장 도입(본인도 입금불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압류방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35조(압류금지)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방지 등)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방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담보 및 압류금지)

-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수급자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통장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2.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 (기존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상담 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게좌 등록관리)
-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시 각별히 주의요망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
*12(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13(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15(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 입금제한 및 압류거부

- 참여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동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방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통장으로 '압류명령서'를 제시,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함

3.

● 은행 이체이후 입금 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 오류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임에도 압류여부가 “NO” 되어 있거나, 일반계좌임에도 압류여부가 “YES”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 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행복e음 “지방재정 연계 처리현황” 메뉴, 오류현황 화면에서 조회(오류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변경 후 재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 처리하여 재지급
-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4.

- 수급자가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시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해당급여의 수급금만 입금이 허용되므로 '카드 결제 후 취소시 카드사의 카드 환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 납부금'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 본인도 해당 복지급여 이외의 다른 금품을 입금을 할 수 없으므로 카드 결제사용은 가급적 자제토록 안내



1

- 6
& 0. '
- 6 B * * 6
- Á* B ±
- π

2

- 8 05
-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수시 전송 (전송기한 제한 없음)
- ~
- ~
-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송일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 ~
- ~
- * 신규 대상자에 한하며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 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단 장애인활동지원원 전송일자 제한이 없음에 유의)
- 6 ±
- *
- π

3

- ±
- 8 & *
- 6& ' '
- *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8 $\perp$ _____ & 6 _____
 _____ ,
 _____ $\perp$ 8 & ' _____ & B ' @A* *

●

8 * * ~ * *
 * _____
 ~ &QKQ ' 8 _____ ~ *

4

●

 π

~

●

 $\frac{1}{2}$

* * ~ 8 / // ~
 * 0 /~/. * 1 //~03

※ 납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일까지 입금

* * * *

5

●

6

 π π

~

Á

~

6

●

&

'

&

'

7

- 6
- 1 &3 * /3 * 03 ' ~
- &frn8--lctq,qmag_jqcptgac,mp,ip' ~
- * 6

2. 바우처 생성 및 지급 기준

- 8 & / ' *
- * ~
- // ~ & ~
- *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및 바우처 생성 제한 대상자 제외
- / ~ 8 / /. & ' *
- * ~
- / /. ~
- 0 ~ 8 // 03 *
- * ~
- // 03 ~ Á
- 8 & c ' *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해야 함

- 6 ㄷ
-
- & ' ~ & ' ㄷ
- *
- ㄷ
- ㄷ

3.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 관리

-
- ‘ ,
- ㄷ ㄷ ‘ ,
- * * * 0½
- ㄷ
-
- ㄷ& ㄷ* * ~*
- ㄷ ' * ㄷ
-
- * * ~ * *
- *

“ ” 6 *

0

~

Á 6

• ±

& ± ' '

±

± c

~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0

~ *

* 0½ 0½ 0

6 0 ~ & *

,

.

• *

&c ' ~ &QKQ'

4. 서비스 중지

- .
 -
 -
- ~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0½
- 0½
- ~
-
- ~
- 0½
- 6
- c
- _____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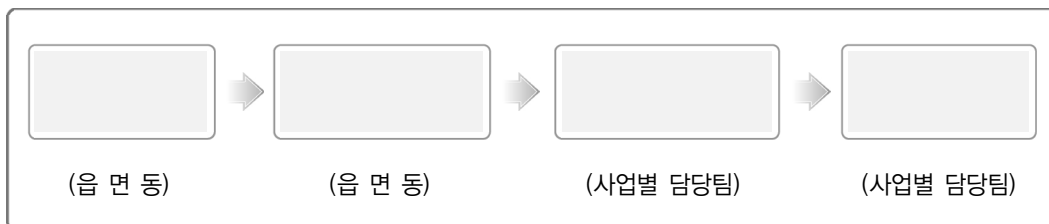
c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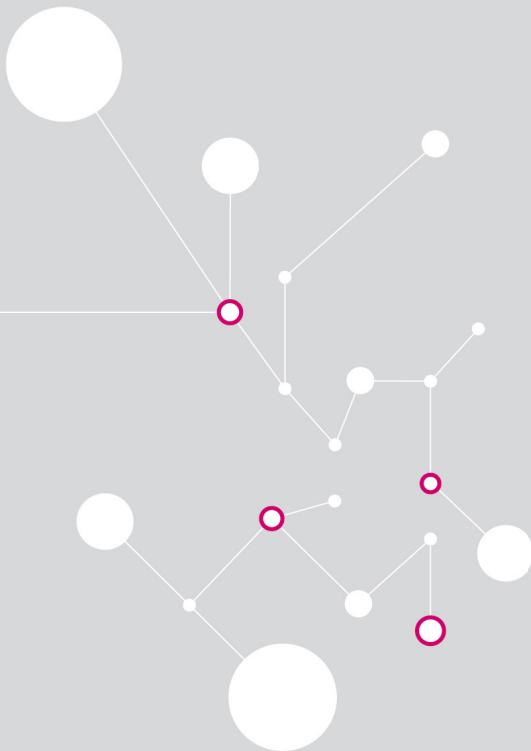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5. 사업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16,600원 344,520원	무료 64,000원	개인별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입금 (가상계좌)
	430,000원~3,527,000원 (47시간~391시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은 2만원.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건보료판정)	개인별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입금 (가상계좌)
	450,000원~1,620,000원 (10일~20일)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제공기관에 따라 다양)	제공기관 직접납부
_____	사업별 상이	사업별 상이	제공기관 직접납부
	217,680원~255,150원 (24시간~27시간)	무료 19,710원	지정된 계좌에 납부
	140,000원~220,000원	무료 80,000원	제공기관 직접납부
_____	160,000원~220,000원	무료 60,000원	제공기관 직접납부



제5장 변동 사후관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5장 변동 사후관리

I 변동사항 관리

1. 개요

- $\perp \sim 6$ $\ast \perp \acute{A}$
 $\perp \cap \ast \perp$
- $\perp \sim 6 \ast$
 $\ast$

2. 변동사항 확인대상

- $\perp \perp \cap \perp \ast \perp \ast$
 $\perp \ast \sim 6 6$
 $\perp \ast$
 $\perp$
 $\ast$

3. 변동사항 확인방법

- $\perp \acute{A}$
- $\perp \ast \cap \ast \perp$
-

·
● ㄱ * ~ 6 & * 1*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 ㄱ
● ㄱ ~ 6 6 ~ 6
● ㄱ
●
● ㄱ ~ 6



	근로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연금소득 금융조회시)
	기타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재산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재산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차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사망*, 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거주지 변경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군입대, 군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해외출입국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교정시설 입 퇴소	매월 2회 변동사항 발생시
	출생, 결혼, 이혼	매년 1회 변동사항 발생시

* 사망일자가 없는 경우 사망신고일자로 공적자료 제공됨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세대 전부	알림	
	가구원 일부	알림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해당자 보호중지 등 ×
	출생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
	사망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
	이혼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 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 사업별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군 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교정시설 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출소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가출		해당자 보호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
	사망의심자	알림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소득 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공적자료 외 신고소득 재산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성명,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근로능력	만65세 이상자 알림 만18세 이상자 알림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장애인 등록 알림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가구 특이사항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세대 전부	알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일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출생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결혼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이혼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군입대, 군제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교정시설 입출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소득 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성명,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변경처리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가구 특이사항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 ~ 6

&

* 단독가구 사망·말소 시 자동으로 자격을 중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줌(알림기능)

*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종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단, 장애인연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멸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을 적용

$$\begin{array}{c} \text{B} \\ \perp \sim \mathfrak{G} \quad \text{B} \quad \mathfrak{A} \\ * \text{ 기초연금의 만65세 미도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보육 양육수당의 차상위 수급자의 부모} \\ \text{B} \quad \frac{1}{2} \quad \mathfrak{A}^* \sim \mathfrak{G} \\ \sim \mathfrak{G} \end{array}$$

* 기초연금의 장기출국자(해외체류 60일 이상자의 경우)는 지급정지 대상자로 처리하고, 입국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인 경우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지급 중지

B

/

7.

Á*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경우 1회 해외체류기간의 기준을 60일로 함

5. 거주지 변경 처리

● ~ 6

	전체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급여 실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동일보장가구 해당 : 전출 미처리 동일보장가구 미해당 : 전출 처리 전출처리 한 경우 보장가구원수 변경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시스템에서 전입 사항 알림 동일 주소지내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동일 보장가구원 유무 확인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동일보장가구에 미해당하는 경우에 전출 미처리 지원대상 가구원수 변경 급여변경 등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 하여 지원결정(필요시 조사)
	영유아 보육	시스템에서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전출통보	시스템에서 수급자(아동)의 전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시스템에서 서비스 수급자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자격 중지 서비스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전입시 시스템에서 알림 대상자가 받던 서비스가 신거주지에서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여부 확인
	한부모 가족지원	시스템에서 부/모의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 원본서류 최초신청지에서 보관,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송

		,				()	
	동일보장가구의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 군 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긴급지원대상자 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 군 구	이용시설 소재지 시 군 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부나 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예시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원 1인이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보장가구로 보호받는 등록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단위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급여는 개인단위 급여이므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예시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노인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가구단위의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기초연금은 개인단위의 □ .

급여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

1. 개요

- $$\begin{array}{ccccc} & & \mathfrak{n} & & \perp \\ & \nearrow & & \nwarrow & \\ \mathring{A} & & & & \\ & \nwarrow & & \nearrow & \\ & * & & * & \sim \\ & \searrow & \mathring{A} & \swarrow & \\ & \perp & & & \end{array}$$

2. 누락 추가서비스 안내

- [illegible]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 : 교육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 의료급여 자격 취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이상이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

< >

(15.9.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만 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증장애인(만 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써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만 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써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4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인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인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5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인면서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6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중복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이나 차상위(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 중 차상위(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1> 2>.....> 7> 8 순으로 대상자 제공

● ~ ~ ±
 Á* ~ &

● ~ ~

예시 만 65세 도래자 : 기초연금 신청 안내, 의료급여 종별 변경(2종 1종), 근로능력 변경(유 무)
 기초생활수급자 중 : 중학교 진학 예정자의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변경 안내

● ± ± ~

예시 '10.12월에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여 4인가족 소득인정액이 1,390천원으로 나타나
 탈락('10년 4인가족 기준: 1,363천원)하였으나, '11년도 기준 1,439천원 이내인 경우
 신청안내

± * ±* ±*
 ~
 6

3. 중복 급여 서비스 방지

● ± ±
 ± ~
 ± ± ±

$\frac{1}{45}$ * $\frac{1}{3,10}$ "

	(A)		(B)	
1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2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3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4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5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6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7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8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9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10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11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12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13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14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15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16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17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18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19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20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21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2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3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24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25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26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A)		(B)	
27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8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29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30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31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32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3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34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35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36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7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8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39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40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41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42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3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4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5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6	방과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7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8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9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0	장애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1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2	다문화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3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4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A)		(B)	
55	유아학비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6	기초주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57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58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59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60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1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62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63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4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65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6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복지부
67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복지부
68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69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0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1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2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73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74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5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복지부
76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복지부
7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8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9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80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81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82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복지부

	(A)		(B)	
8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8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85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86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8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88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89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90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취약농어가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91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2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9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4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95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복지부
96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복지부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복지부
97	장애인생활시설비 입소이용료 지원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98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99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100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1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102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3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104	고교학비	교육부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105	고교학비	교육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06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부	고교학비	교육부
107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부
108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고교학비	교육부
109	고교학비	교육부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보훈처
110	산재근로자복지사업(장학금)	고용부	고교학비	교육부

	(A)		(B)	
111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장학금	보훈처
112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국가장학금(,)	교육부
113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대통령과학장학금	교육부
114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115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복지부
116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보훈처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17	교육정보화지원	교육부	유선전화, 인터넷통신요금감면	미래부
118	교육정보화지원	교육부	사랑의 그린 PC 지원	미래부
119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0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121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122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3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4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25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자활근로	복지부
126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자활근로	복지부
127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8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29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30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1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132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부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133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4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청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35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고용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부
136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고용부
137	기초보장해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13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복지부	기초해산급여	복지부

	(A)		(B)	
13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복지부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140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여가부	저소득층창업지원	복지부
141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여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복지부
142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복지부	주거현물집수리사업	복지부
143	취업수강료지원	보훈처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부
144	기초연금	복지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복지부
145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복지부
146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147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복지부	긴급지원(생계지원)	복지부
148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복지부
149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복지부
150	언어발달지원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인지력향상서비스)	복지부
151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152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153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4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155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156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7	기초주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58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159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0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1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2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3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A)		(B)	
164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5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6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7	기초장제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장제비지원	복지부

※ 상기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에서 중복 확인 기능 구현 대상도 포함

※ 상기 유형의 개별사업 지침 상 규정하고 있는 중복 유형을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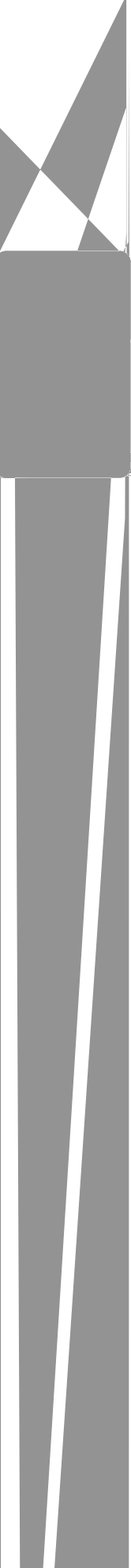
※ 시스템 상 자동차단 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절차 진행



e

- ① 급여서비스간 자격유지에 따른 중복은 두 급여 미생성
- ② 급여서비스간 자격중지, 자격유지인 경우는 사업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유지 급여서비스만 생성

	생계급여	의료 자활급여특례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주거급여	의료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u>사용대차자</u>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 생활가정, 노숙자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자활소득공제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 급여, 시설급여)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 군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

㉠ 1/2 ~ 6 ㉠ * * * * ㉠ '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중지대상, 연령기준 초과, 장애 등 자격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중지 되었는데 경증장애수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으로 인해서 부가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 중지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 조회결과 미적용 사례 등

● ㉡

㉡

㉡ 유형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자, 차량병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기존부정수급이력자 등

● ㉢

㉢

㉢ 예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 복권당첨금, 전국 화장장 등의 사망자 정보 등

●

㉣ & '

㉣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절차를 따름

~

㉣ ☞ 복지부는 의뢰 건을 검토하여 자체처리 가능으로 판단시 해당 지자체로 반송하고 중앙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후 결과를 송부

5. 급여중지자 관리

● ㉠ & ' 3 ㉡

3

● ~ 66 ~

7. 의사무능력(미약)자 관리

※ 점검결과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 [국기초 서식43호] 참고

※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표」에 반기이내 등록

예시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관리 - 6월 31일까지 점검결과 등록 완료

8. 사망의심자 정보 관리

※ 한국장례문화진흥원(화장장, 외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행복e음(장제급여)

※ 사망의심자 정보가 입수되면 사망 익월 이후 급여 미생성('14.8월 적용)

※ 건강을 묻는 등 우회적으로 질문 또는 병원으로부터 확인 등

※ 사망확인등록에서 사망의심자 확인결과를 '사망'으로 처리시 1인 단독가구는 자격·서비스가 자동 중지되므로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 후 결과등록 필요('15.2월 적용). 단, 생존자로 확인한 수급자의 급여가 미생성시에는 사망확인등록에서 확인결과를 '생존'으로 처리

III

보장비용 환수

1. 보증비용의 정의

● & ' i $\perp$ $\pe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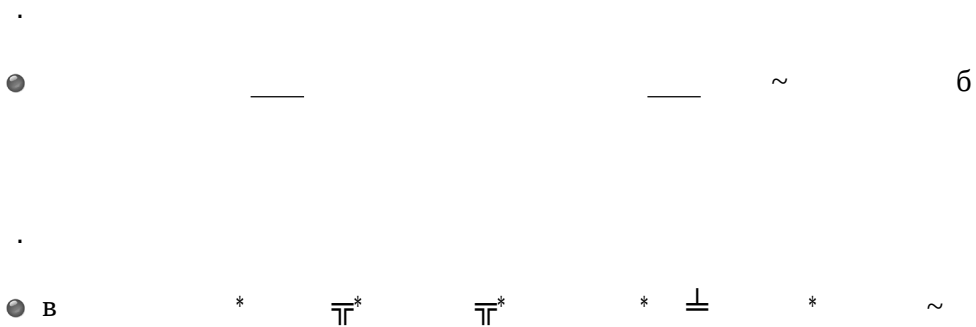
● & $\frac{1}{2}$ ' $\perp$ $\pe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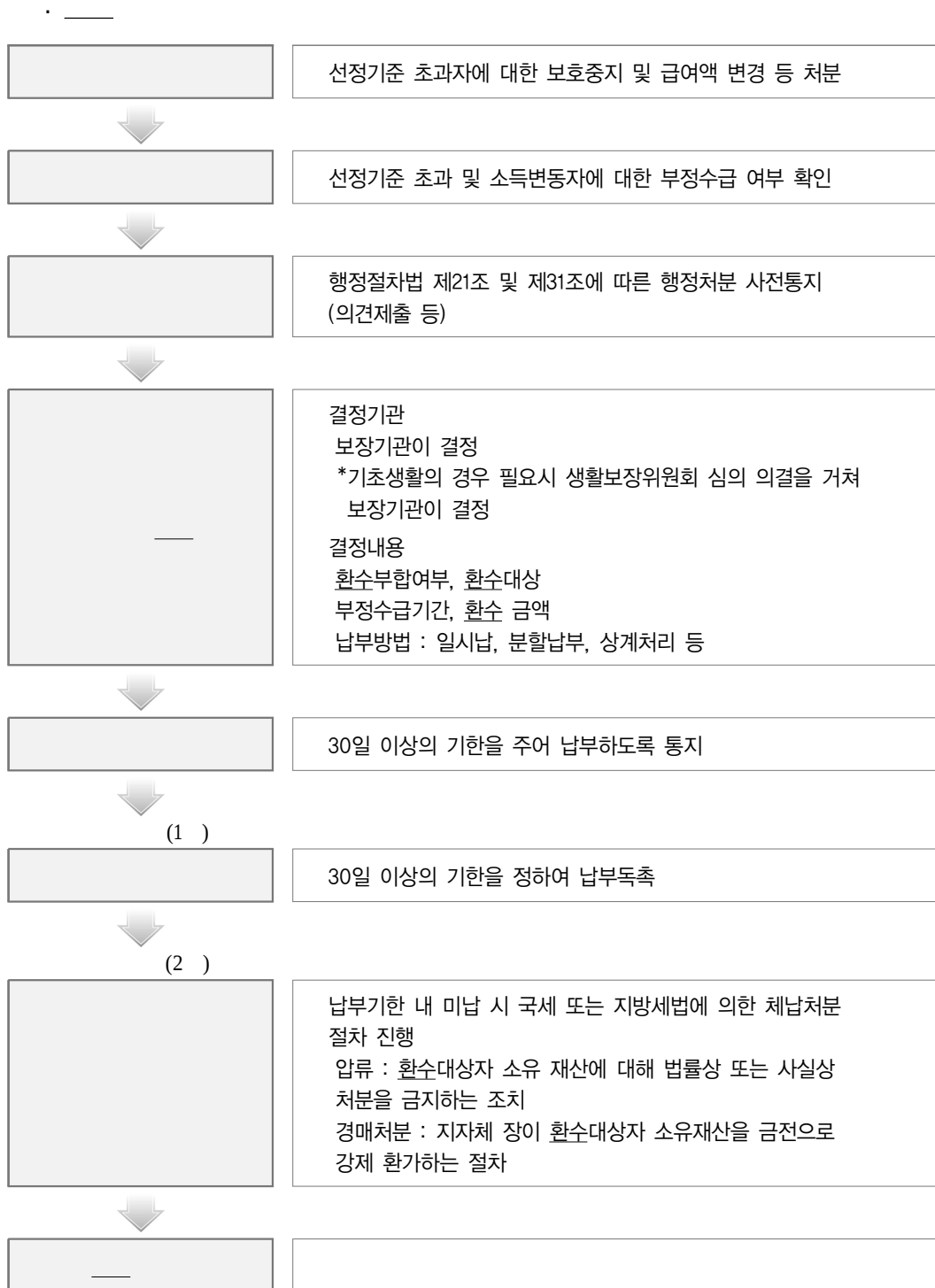
2. 보증비용 환수 관련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46조	기초연금법 제 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 5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비용징수	환수	환수	환수	비용환수	비용징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수급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u>잘못 지급된 경우</u>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 등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지급된 경우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u>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u> <u>지원받지 아니 하였으나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u> <u>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u> <u>=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u>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포함) 장애인자녀 교육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한부모 가족지원 교육비/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자립 지원수당 검정고시비/ 고교학습비 자산형성계좌

3. 보장비용 환수 절차





●$\frac{1}{n}$& 1. '

●$\frac{1}{n}$& 0 1. '

IV 반환명령

1.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긴급복지법 제15조	아동복지법 제3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
	반환명령	반환	반환명령	반환명령

2. 반환요건 및 대상

- ①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면인 경우에 해당

3.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	~
±		
		±
	~	±
½	Á	

4. 반환 절차 및 처리방법



: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

부 록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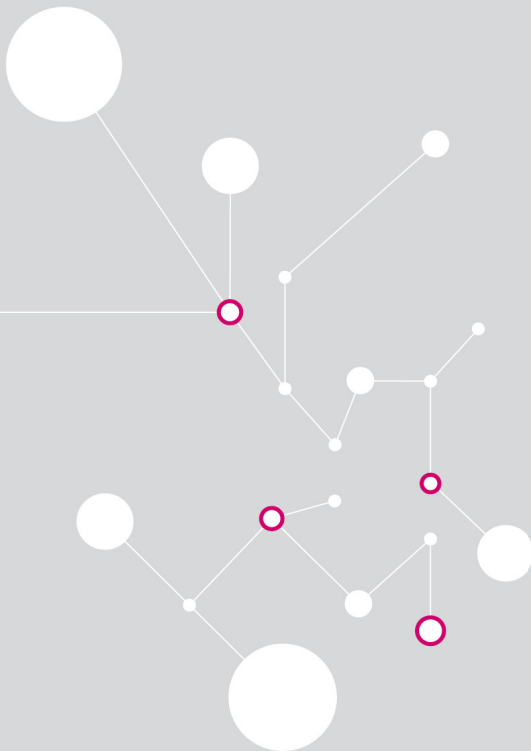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제2장

제3장

M I N I S T R Y O F H E A L T H & W E L F A R E

제1장 서 식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18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222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223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225
[별지 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226
[별지 제3호서식] 복지대상자[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227
[별지 제4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228
[별지 제5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230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정 변경(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231
[별지 제7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241
[별지 제8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244
[별지 제9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256
[별지 제10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258
[별지 제11호서식] 보장비용 부담이득 환수 통지서	259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260
[별지 제13호서식]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261
[별지 제14호서식]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263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264

II. 사업별 개별서식

(사업별 서식1호)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65
(사업별 서식2호)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266
[사업별 서식3호]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271
[사업별 서식 3-1호]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273
(사업별 서식4호) 지출실태조사표	274
(사업별 서식5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76
(사업별 서식6호)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277
(사업별 서식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278
(사업별 서식8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27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

[1 면]

[illegible]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 2) 해당자에 한함
-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주거유형 : ☐ 임차 ⁵⁾ ☐ 자가 ☐ 기타 ⁶⁾) ☐ 교육급여 ※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 에 모두 √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 시 신청하는 급여의 ☐ 에만 √ 표시
☐ 자활급여	☐ 차상위 자활급여
☐ 영유아보육 ·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① 생활지원 ② 건강지원 ③ 학업지원 ④ 자립지원 ⑤ 상담지원 ⑥ 법률지원 ⑦ 활동지원 ⑧ 기타지원()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호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 1인가구 ② 취약가구 ③ 출산 ④ 학교생활 ⑤ 직장생활 ⑥ 자립준비 ⑦ 보호자일시부재 ⑧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긴급활동지원
☐ 노인복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소생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 ⁷⁾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Ⅱ)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급 계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 6) 가정위탁(임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 7)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8) 동일보장가구의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지재

[3 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안 내 타 관 계 인	공통	본인, 가족, 친족 ⁹⁾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청소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⁰⁾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서 발급)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변경)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0/. 075 & 4.e- & ''

[4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주거급여법」 제24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제4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센터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0/. 075 & 4.e- 11

부
록
제1장
서
식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1>

[별지 제1호의2서식]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주재배작물명)	()	()	()	()	()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정기지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적	이전소득 ²⁾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원	원	원	원	원
	선 박	원	임목재산	원	원	원	원	원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원	원	원	원	원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금융재산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동 산	□ 소 (마리, 원)	분양권	원	원	원	원	원	원
		□ 돼지(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원	원	원
		□ 기타가축(마리, 원)	회원권	원	원	원	원	원	원
		□ 종묘(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계·기구류(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기타(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소계 (A-(B+C+D))	원	원	원	원	원	원	원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원	
	임대보증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⁴⁾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지출비용 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6.1.1>

[앞면]

()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³⁾ (서명 또는 인)

- 1)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6.1.1>

		()	()	
☐ 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신청구분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대상자	☐ 일반노인 ☐ 독거노인 ☐ 부부가구	방문·주간 서비스기간(일) ☐ 월 27시간(9일), ☐ 월 36시간(12일)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야실 카드 ☐

신
청
서
비
스

부
록
제1장
서
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시설 입소 (이용) 대상자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간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간	
입소 (이용) 시설 안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가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가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가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가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기 타						
입소 (이용) 사유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0/. 075 & 4.e- & ''

[]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해산인원	()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유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유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서 식 22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

[앞면]

						처리기간 10일 (단, 장애인 자립자 금대여의 경우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호구분 * 담당공무원 확인 정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복지		☐ 기타 저소득층	
용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주택(전세)자금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생업자금() ☐ 기술훈련자금 ☐ 장애인보조기구구입자금 ☐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 자기계발훈련비 ☐ 의료비 ☐ 기타 ()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075 & 4.e- & ''

[뒷면]

창업(구입)형태 ¹⁾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사업명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자동차구입	사업장 위치		☐ 있음 (m ²)					
		임대내용		☐ 전 세				원	
				☐ 월 세				원	
				☐ 기 타				원	
				☐ 보증금				원	
		차량내용		☐ 신 차		년식,		원	
☐ 중고차				년식,		원			
기술 보유	현재 종사직종	자영업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경 력	년	
		근로자			근로자				
		기 타			기 타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사업 일정 ²⁾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운용	총 사업 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 월별 ()		
	신청응자금 액	원					- 년매출액 ()		
	부족자금 확보	☐ 확보 ☐ 미확보							
기술·경영지도 계획	☐ 지역자활센터장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 받고 싶은 내용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응자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0/. 075 & 4.e- & ''

[별지 제5호서식] 〈시행 2016.1.1〉

()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	
응 자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응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위 응자금응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_____ _____귀하						
구비 서류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 대여 결정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응자금액, 응자일자, 응자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응자불가결정시 사유 등)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요망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같음.

0/. 075 & 4.e-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1〉

[1 면]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세대주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
---------	-------	------	-----

부 록

제1장

서

식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075 & 4.e- & "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활동지원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활동지원 등급과 지급예정 월 한도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 [] 긴급활동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 합으로 계산됩니다.
※ 단, 긴급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 법 제3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2.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계좌
3. (서비스 개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가사카드 포함)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대표번호(☎1577-2514) 혹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 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면]

□ 부 적 합				
신 청 내 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중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월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 해당 ☐ 기타()		

0/. 075 & 4.e- & ''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0/. 075 & 4.e- & ''

[4 면]

조 건 부 수 급 자	대상 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특이 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조건부수급자() ☐ 기타()			
	보장 안내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

graph TD
    A[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7일 이내 방문·전화상담)] -- 보고 --> B[시 군 구]
    B -- 자활사업의뢰 --> D[자활사업실시기관]
    C[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 -- 자활사업참여 --> D
    C --> B
  
```

0/. 075 & 4.e- & ''

[5 면]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산 정 내 역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¹⁾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²⁾ (다) 원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참고】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 가구규모</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td> <td>471,201</td> <td>802,315</td> <td>1,037,916</td> <td>1,273,516</td> <td>1,509,116</td> <td>1,744,717</td> <td>1,980,317</td> </tr> <tr> <td>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td> <td>649,932</td> <td>1,106,642</td> <td>1,431,608</td> <td>1,756,574</td> <td>2,081,540</td> <td>2,406,506</td> <td>2,731,473</td> </tr> <tr> <td>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td> <td>698,677</td> <td>1,189,640</td> <td>1,538,978</td> <td>1,888,317</td> <td>2,237,656</td> <td>2,586,994</td> <td>2,936,333</td> </tr> <tr> <td>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td> <td>812,415</td> <td>1,383,302</td> <td>1,789,509</td> <td>2,195,717</td> <td>2,601,925</td> <td>3,008,132</td> <td>3,414,340</td> </tr> </tbody> </table>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가구 기준) + 235,600원(7인가구-6인가구 기준)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0/. 075 & 4.e- & ''

[별지제7호서식 <개정2015.7.1.>

[10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17

신청인 (보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 소	지										
모장 신청	☐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영유아보육·유아학보 ☐ 아동·청 소 년 ☐ 한부모가 ☐ 노인복지 ☐ 기타 () ※ 제출서류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표기함													
구 분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시유)	건강상태 (정해, 질병)	근로능력 유무·시유	학력·재학여부 (학교장 확인반)	자격증 (경 력)	복지급여개좌 (금종/관영)	직업 구분	직업 구분	취	태	모장상태
기구원	이									직업			전환번호	이름모장 모장점장
	이													
	이													
	이													
	이													
부양 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학	가구 원수	직 업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 소득원천액	재산의 소득원천액	소득 인정액	월평균 지원금	부양능력 판정 사 유	
	이													
	이													
	이													
	이													
조사 결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생형) ☐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사유 ()													

297mm × 210mm (인화·용지) 28
 28 (제출용품)

$\frac{1}{297\text{mm} \times 210\text{mm}} \left(\frac{\text{원바탕지}}{\text{g/m}^2(\text{제할용품})} \right)$

[illegible]

부록
제1장
서
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illegible]

(갑-2)

관리번호			세대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직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초생활 보장사유	☐ 연소(18세미만) ☐ 연로(65세 이상) ☐ 질병(병명:) ☐ 장애(유형: 등급:) ☐ 임신 ☐ 청소년학부고(25세 미만) ☐ 실직·미취업 ☐ 사업실패 ☐ 저임금·저소득 ☐ 직업훈련 ☐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 기타() (해당되는 경우 체크)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명), 부양능력 미약(명), 부양능력 있음(명)					
부양의무자	☐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특례수급자	☐ 특례유형() ☐ 특례수급자(가구전체, 가구원 일부) ☐ 특례급여 개시일() ☐ 특례급여 종료일()					
근로능력판정			판정사유			
긴 급 여	☐ 급여액() ☐ 급여일시() ☐ 급여사유()					
생 계 급 여	☐ 가구원 수 ()					
주 거 급 여	☐ 월세임차료 ☐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 전세자금대여 ☐ 주거인정지원비 ☐ 주거급여 제외					
교 육 급 여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해 산 급 여	☐ 해산자 () ☐ 해산일자 () 장 제 급 여 ☐ 사망자() ☐ 사망일자()					
각 종 검 면 제 도	복 지 전 학	☐ 설치 ☐ 미설치(사유:)	시청료감면고객번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기 타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갑-3)

관리번호									세대주	
자활지원 대상자										
성명	조건부수급자 구분									
	자활역량평가점수	자활방향	근로여부	가구특성	유형	자활의지				
성명	자활사업					조건 이행여부				
	내용	의뢰기관	사업명	참여기간	급여(임금)	이행여부	급여종지일(자개일)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시		세대주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명	보육시설·유치원 명	시설전화번호	이용기간	성 명	보육시설·유치원명	시설전화번호	이용기간						
영유아보호자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비 고	성 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비 고						
이동·청소년													
구	□ 부모사망 □ 부모기출 □ 부모양 모기출 □ 부가출 모시망 □ 부모장애 □ 부모폐질 □ 부모이혼 □ 부모복역 □ 기타()												
성 명	육 구 및 문 제	보 호 방 향		시 설 일 소		입소기간							
				시설명		소제지		입소일자					
성 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성 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청소년 특별지원													

297mm×210mm(일반용지 60g/m(채월용종))

(갑-5)

관리번호			세대주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한부모가족사유	☐ 배우자사망 ☐ 배우자기출 ☐ 배우자유기 ☐ 배우자생사불명 ☐ 배우자해외장기체류 ☐ 배우자 장기복역 ☐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이혼 ☐ 미혼모 ☐ 미혼부 ☐ 조부모가정 ☐ 기타 () ☐ 청소년한부모(25세 미만) (해당되는 경우 체크)								
학비지원	성명	학교명	학년반	성명	학교명	학년반			
이동양육비지원	성명	지원기간	성명	지원기간	성명	지원기간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자산 좌지원	성명	계좌명	계좌개설일	계좌(찾는 날짜)	성명	1차	2차	3차	
					연도	연도	연도	연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부담액	성명	1차	2차	3차	4차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지급률	성명	1차	2차	3차	4차	성명	1차	2차	3차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도	연도	연도	연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진수단	학습비우치지원 (검정고시 등)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1)

관리번호											세대주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성명	복지욕구	□ 보장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의료비 □ 학비 □ 자립대여 □ 시설입소 □ 활동보조서비스											
장애 특 성 사	종합장애등급	심사원료여부		최초장애등록일		중복장애유무							
	주 장 애												
	진단이력	유형	등급	심사원료여부	결정일자	장애판정기관							
장애사유	주 장 애	□ 선전성 () □ 후천성 ()	발생연령		부 장 애		□ 선전성 () □ 후천성 ()	발생연령					
장애사유	발생연령	교부일자		일 자		특수교육		기관명		기간			
	종 자	기 관	학교명	학년/반		직업훈련		직 종		기간			
	자	지급개시일자		학년/반		의 료 비		대상자		의료급여종별 □ 1종 □ 2종			
	자	지급개시일자		지급개시일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자	지급개시일자		지급개시일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대상자	대상자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차량번호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발급일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발급일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개월용종))

(을-2)

관리번호	작성일자 : (작성일자 :)										성명	세대주
장애연금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급개시일	지급정지		자격상실		수급사항					
			일 자	사 유	일 자	사 유	해당구분	지급액 구분				
장애연금							☐ 장애인 단독 ☐ 장애인 부부 1인 ☐ 장애인 부부 2인	☐ 기초급여 ☐ 전 액 ☐ 감 액(원)				
	개인현황	☐ 1회차() ☐ 2회차() ☐ 3회차()			이의신청		사유	☐ 수급 미해당 ☐ 장애연금 급여액 ☐ 수급권 상실 ☐ 부당이득 환수 ☐ 기타				
							결과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사유	☐ 사망 ☐ 소득·재산 증가 ☐ 해외체류 60일 ☐ 재소자 ☐ 기타				
이력					부당이득		금액					
							환수	☐ 환수완료 ☐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금액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기타				
					과태료 부과		사유	☐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 거짓 자료제출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 수급권 소멸 발생 미신고 ☐ 기타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3)

관리번호								세대주	
노인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검진일자	조치 의견	검진의료기관	검진결과(정상여부 등)			
강진단	1차 검진								
2차 검진									
취업일선	대상자 성명		희망직종	취업일자	취업기관	비		고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성명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4)

관리번호					세대주			
기초연금 대상자								
(작성일자 :)								
대 상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작성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등)		지급개시일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상실일 및 상실 사유	수급사항		
						해당구분	지급액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1인 수급 ☐ 부부가구 2인 수급	☐ 전액 ☐ 감액(원)	
이 력	변동 이력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이의신청	사유	☐ 수급 미해당 ☐ 기초연금 급여액 ☐ 수급권 상실 ☐ 부당이득 환수 ☐ 기타	
		소득·재산 변동일 및 사유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부당이득	결과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초연금 급여액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과태료 부과	사유	☐ 소득·재산 ☐ 거짓자료 ☐ 조사·질문거부 ☐ 수급권 상실 ☐ 기타	
		초연금 환수원료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금액	금액	☐ 30,000원 ☐ 120,000원	
		초연금 환수원료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환 수	환 수	☐ 30,000원 ☐ 120,000원	
내 역						환(응답)		

(을-5)

관리번호						세대주						
노숙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랑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복지요구	☐ 시설입소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기타()								
	시설입소	대상자		시설명		소제지		입소일자		입소기간		
후원·지원봉사 내용												
후원 현황		후원자		후원방법 (정기, 일시)	후원기간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후원용도	소년소녀 가장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현금	물품		월후원액	후원금관리자	관계	
지원 봉사 현황		지원봉사자		지원봉사방법 (방문요일/시간)	지원봉사기간	지원봉사 내용		지원봉사 대상자	비고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297mm×210mm(일반용지 60g/m(제할용품))

(병-1) (관리번호 : 세대주 :)

상 담 내 용										구	판	명	주	요	변	동	사	항			
1차 상담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2차 상담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상	담	자	년	월	일	직	성	(서명 또는 인)	재	산	항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앞면]				
										자와 관계 (직·종교·학계 등)				
										보장 구분 □ 기초생활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				
										근로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응차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연대보증인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응차지	직업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응차지	직업							
자금종류 및 용도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생업자금 ☐ 장애인보호조기 구입자금 ☐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 자위) ☐ 사무보조기구입비 ☐ 자기계발훈련비 ☐ 의료비 ☐ 기타()														
사업 개요														
응차내용	응차금액	금	원	응차일자	년	월	일	응차기간	년	거치	년	상환	이자율	%
	상환방법 ☐ 거치기간이자 (매월, 분기, 연2회, 연 1회) ☐ 원리금 (매월, 분기, 연2회, 연 1회)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제철·용품))

부록
제1장
서
식

복지대상자 통합영양관리

$$| \mathcal{O} | \tau : 1/00$$

출력대상 : 기초생활 보장

[illegible]297 mm × 210 mm (일반용지 60g/m²(제화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 >

()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환수) 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아동복지법」 제60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 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075 & 4.e-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1〉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신청인
대 리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과의
신 청 인 주 소		관계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전화번호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환수 ☐ 기타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의 상 보장 시장

안 내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1〉

[1 면]

가입
기수

()

처리기간 30일

부 록
제1장
서
식

☐ 동의

- 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적립금은 목적으로 한 적립수준이 도달할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희망키움통장 (생계·의료수급자통장), (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해지하여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해지 사유
(통장) 근로소득 5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3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통장) 본인적립금 3회 이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소득·자산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사업참여중 수급자 책정시 등
-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
 - * 지급요건
(통장)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통장) 3년 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통장)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 입금과 지자체의 내일키움 적립 승인 및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신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모두 생성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과 가입유지 가능한 사업단에 성실참여(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하셔야 매월 적립 승인이 이루어지고 내일키움장려금이 생성되며 내일키움수익금은 참여하시고 계신 사업단의 수익금에 따라 차등 생성됩니다.
- 만약 저축 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 및 사용용도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환수해지'하여야 하며 가입유지 기간 동안 적립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 지급됩니다.
 - * 환수해지 사유 : 가입 가능한 자활근로사업 5월 연속 미참여, 본인 3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교육 및 사례관리 연 4회 미만, 신규 사회복지서비스사업단 연말 매출 기준 미달, 지급요건(가.항 또는 나.항) 미충족 등
 - ** 지급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 (탈수급 포함)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나. 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제외)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금융복지지원사업 제외)
 -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신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계약

- 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월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36개월이며, 납입일은 매월 20일
---------	-----------------------------

-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자 (생년월일) (성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 >

가입 기수	()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형(금융) ☐ 사회서비스형A(매출액 10% 이상) ☐ 사회서비스형B(매출액 10% 미만) ☐ 사회서비스형C(매출액 '0'인 사업단) ☐ 인턴·도우미형)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근무지					
신청내용	월별 저축액원 ※ 저축기간은 36개월					
구비서류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본인적립금 입금기한	첫 입금년월일까지 (이후 매월 입금일 20일까지)					
귀하를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대상으로 결정(추천)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희망·내일키움통장적립 예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민간위탁기관장 직인 문의 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075 & 4.e-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7.1>

[1 면]

()									처리기간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별도안내시 까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 번호			
	주소							휴대 전화		
								E-mail		
가족 사항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위와 같이 의료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보훈지(방)청장,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4.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출하는 곳 관할 보훈지(방)청, 문화재청

(사업별 서식1호)

동의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수급 희망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함께 기입하여야 합니다.(통보서를 받으실 실제 주소를 상단에 기입) ○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0/. 075

4.e- &

'

(사업별 서식2호)

카드 신청인	성명	한글		대상자와의관계	
		영문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신청카드	카드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임의선택불가)□ ※ 우체국, 신한 현대증권은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카드발급 금융기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한□ 현대증권□		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직장정보 (본인)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청구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이메일	
카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문자 알림 서비스(SMS)	① 신청 ② 미신청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현금카드기능	① 신청 ② 미신청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 현금카드 기능 가능여부 및 연결 계좌는 카드사별 상이]
바우처 사용내역 e-mail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체크카드명세서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결제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2)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함

4) 카드비밀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함

5) 체크카드 연결계좌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NH농협카드(NH농협은행) 롯데카드(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C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 현대증권)로 가능함

6)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인 경우 “전용카드” 한정적으로 발급(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밖에 없을 경우 카드 미신청)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파악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금융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신한카드 ☐ NH농협카드 ☐ 롯데카드 ☐
 BC (IBK기업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수협은행 ☐ 광주은행 ☐ 우체국 ☐ 제주은행 ☐ 신한 ☐
☐ 현대증권)의

개인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신한카드 ☐ NH농협카드 ☐ 롯데카드 ☐
 BC (IBK기업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수협은행 ☐ 광주은행 ☐ 우체국 ☐ 제주은행 ☐ 신한 ☐ 현대증권 ☐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신청카드사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신한카드 ☐ NH농협카드 ☐ 롯데카드 ☐ BC(IBK기업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수협은행 ☐ 광주은행 ☐ 우체국 ☐ 제주은행 ☐ 신한 ☐ 현대증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 22조, 제 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이용할 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 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

(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차세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 그린카드(에코머니 멤버십) 서비스의 제공 정산1)
- 롯데멤버스 및 롯데마트 다동이클럽 가입 및 서비스 제공·관리2)
-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 (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정산의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아이행복카드 관련 제휴기관, 나이스 등 VAN사, 롯데멤버스 제휴사2) , 다동이 클럽 제휴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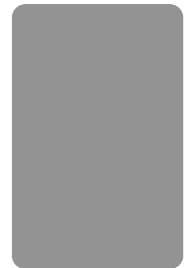
■ 개인정보 활용 공공기관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수사기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1), 지방자치단체1)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다만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사가 신청하신 카드를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신청카드관련 제휴기관은 별도의 안내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서의 바우처카드 부분 작성 요령

- 필수 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필수 기재사항 제외: 직장 관련정보
-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기재란'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 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 표시
 - 신용카드: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 체크카드: 사용시 마다 연결계좌 잔고 내에서 즉시 결제가능
 - 전용카드: 신용불량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 (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요류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 청구서 수령지 -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 신용카드: 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메일로 발송
 - 유의사항: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읍·면·동 중 선택하여 표시하며 배송지별 관련배송정보기재
(예:자택-보호대상자주소, 직장-직장주소,전화번호, 읍·면·동-읍·면·동주소)
※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자택 카드수령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로 카드수령 지정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배송지 정보 중 읍·면·동정보(읍·면·동명, 담당자명, 읍·면·동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읍·면·동주민센터의 해당내용으로 상세기재함.
예) 읍·면·동명: 교1동사무소, 담당자명:홍길동, 읍·면·동주소: 서울 종로구 교1동 112, 읍·면·동전화번호:02-1234-5678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14세 이상은 체크카드 발급가능.
 - 14세 미만은 카드발급 불가
 - 현금카드 기능 - 카드사 및 은행별로 상이하여 카드발급 과정에서 별도 안내
-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각 카드사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별 서식3호]

[1면]

()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신청 카드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실물카드	☐ 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상카드 (인증번호)	☐ 노인단기가사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실물 카드 수령지	수령인	☐ 발급대상자 ☐ 보호자(배우자) ※ 수령자가 보호자(배우자)인 경우 성명, 연락처를 기재	
		성명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주민센터는 주소 기재 불필요)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상카드 (인증번호) 수령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내국인 ☐ 외국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 휴대전화 가입자의 범위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따른 신청인의 범위와 동일 (본인, 배우자, 친족, 기타관계인)			

환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용

[2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대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카드, 전화번호, 주소, 환급계좌(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바우처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초과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자격 종료 후 5년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자 : 우체국 및 포스트피아(배송·투봉), 유비벨록스(카드 제조사), 드림시큐리티(문자발송)
- 제공목적
 -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수신(SMS)
 - 본인인증,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환급계좌 실명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우체국 및 포스트피아: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 유비벨록스: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 드림시큐리티: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이동통신사
- 보유기간(제공받는자)
 - 우체국: 배송완료 후 1년, 포스트피아: 투봉완료 후 10일, 유비벨록스: 제작완료 후 1개월, 드림시큐리티: 발송완료 후 1개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

[사업별 서식 3-1호]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보호자)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바우처 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부
록
제1장
서
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① 서비스 신청인(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②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③ 보호자(법정대리인)와 카드 발급 신청인과의 관계는 행복e음 등을 통해 공부 상으로만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 075 4.e- & ']

(사업별 서식4호)

[illegible]

〈참고〉 지출항목별 해당품목

식품비	1.곡물 및 가공품	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과일	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빵 및 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외식비	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월세	월세
광열수도비	7.수도요금	수도료
	8.전기요금	전기료
	9.취사, 난방비용	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의복, 신발	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의료비	11.입원, 진료비	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2.의약품비	양약, 조제약
교육비	13.고교납입금	고교납입금
	14.보육료	보육료
	15.교재, 참고서비	중고교재, 참고서값(1인당)
	16.학원비	입시및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7.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
	18.기타오락비	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교통통신비	19.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및전철, 화물운송료
	20.자동차유지비	부품및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1.전화요금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2.인터넷이용료	인터넷이용료
기타	23.담배, 술값	소주, 맥주, 담배
	24.가사용품 및 서비스	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5.가타 잡비	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6.사회보험료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업별 서식5호)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소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서식6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실 확인 내용					
통보 내역			소명 내역		
사업장	근로기간	일용소득	유형*	소명금액	소명 사유
소명 유형 안내 (아래의 유형 번호를 작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소명사유를 작성) ○ 유형① : 근로를 하였으나 통보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 유형② :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 또는 폐업 ○ 유형③ : 현재 일용근로를 안한다고 주장(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근로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동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국세청 통보 내역과 상이한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니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별 서식7호)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복 지 급 여 계 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0/. 057 & 4.e- & ''

(사업별 서식8호)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안내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

배우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나.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입니다.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

(서명 또는 날인)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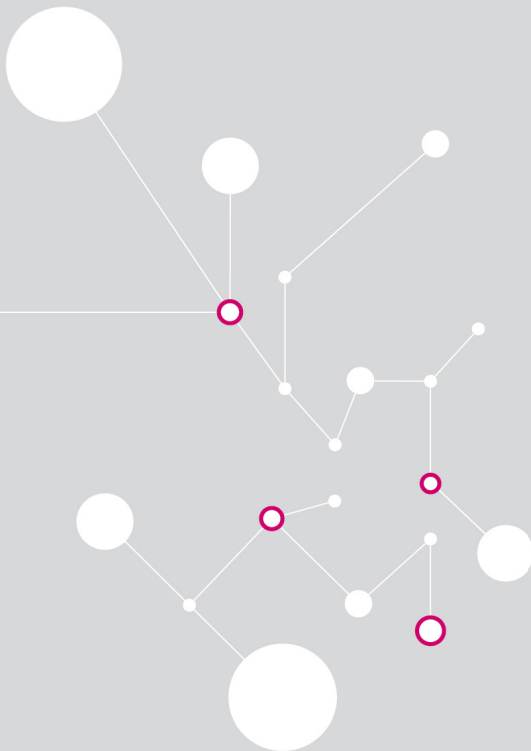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0/. k k 075k k! &6.e- ' &6.e- ']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ac{1}{2} \quad , \quad \frac{1}{2} \quad , \quad \frac{1}{2} \quad , \quad \frac{1}{2} \quad , \quad \frac{1}{2}$$

*
1/2
1/2

$$\frac{1}{3} \quad 33 \quad \frac{1}{2} \quad \frac{1}{3} \quad 37^*$$

$\frac{1}{2}$

4. 조직운영체계



● 1/2

& c ' 1/2

*

,

● 1/2

&

“ ”,

& c '

,

● 1/2

&

“ ”,

,

- 1/2 & “ ”, ,
- 1/2 1/2 & 1/2 “ ”, i & ,

5. 주요정보시스템

- . (e)
- $\perp$ n Á ,
- . (e)
- & c ' 1/2 1/2 Á* ,

6. 용어정의

동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규정의 정의를 차용하나 동 법 규정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동 지침에 규정된 바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 1/2 “ ” 1/2 1/2 & 1/2 , ,
- $\pm$ “ ” * ~ * * * *
- 0 3 * 7
- Á “ ” 1/2 Á 6 , * B * ,

“ ” π $\sim$

,

$\frac{1}{2}$ “ $\frac{1}{2}$ ” $\frac{1}{2}$

$\ast \frac{1}{2}$ $1/$

,

$\frac{1}{2}$ “ ” $\frac{1}{2}$

$\frac{1}{2}$ $\ast$ $\ast \frac{1}{2}$ $0.'$

,

$\frac{1}{2}$ $\pm$ “ $\frac{1}{2}$ ” $\pm$ $\frac{1}{2}$

$\frac{1}{2}$ π

$\frac{1}{2}$,

$\frac{1}{2}$ “ $\frac{1}{2}$ ”

σ $\frac{1}{2}$,

$\frac{1}{2}$ “ ” $\ast$ $\ast$

$\frac{1}{2}$

,

$\frac{1}{2}$ “ $\frac{1}{2}$ ” $\frac{1}{2}$ $\sim$

$\ast$ $\frac{1}{2}$ $\ast \frac{1}{2}$ 1

$\ast \frac{1}{2}$ 1 $\frac{1}{2}$ $\frac{1}{2}$

,

$\frac{1}{2}$ “ $\frac{1}{2}$ ” $\ast$ $\ast$ $\ast$ $\ast$ $\ast$ $\ast$ $\ast \sim \ast$

$\ast$ $\ast$ $\ast$ $\ast$ σ $\ast$ $\ast$ $\ast$ $\frac{1}{2}\ast$ $\ast$ π

,

20) 1인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 $\frac{1}{2}$ “ ” $\frac{1}{2}$ $\hat{A}^*$
 $\frac{1}{2}$ $\frac{1}{2}$ ~
- “ * “* * * * *
 B $\hat{A}$ B
 $*$ $*$,
- $\perp$ “ $\perp$ “ 0 3
 1 / π^* $*$ π
- “ ” & c ' $\perp$
 01 / i ,
- $\perp$ “ ” 7 $\perp$ ~
 $,$
- $\perp$ “ ” $\perp$ $\hat{A}$,
- “ ” $\perp$,
- “ ” $\perp$ $B \sim$
 $,$
- “ ” $\perp$ /6 1 & c ' $\perp$
 $*$ $*$ π $*$ & c ' ,

다음 정의는 동 지침에서 고유하게 정의한 것으로 동 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 ” i $\perp$
 $,$
- $\frac{1}{2}$ “ ” & c ' $\frac{1}{2}$
 $,$

- 1/2 “ ” & c ' 1/2
Á*
*,
- 1/2 “ ” & c ' 1/2
1/2 ± *
- 1/2 “ 1/2 ” 1/2
*,
- 1/2 “ ” & c ' 1/2
*,
- 1/2 1/2 i ” & c ' 1/2
1/2 ± * i
*,
- “ ” & c ' “ ”,
& ,'
- 1/2 “ 1/2 ” 1/2
1 'n 1/2 * * ~ * 6
*,
- ± π “& ” * * ' * ~ *
~ * & ' ,
- Á “ n ” * * ±*
1/2 Á Á ,
- 1/2 “ 1/2 6 * *
6 6 ~ , ± “ ”
Á “ ” 1/2 ,

- “ ”, ½ ~ Á 6
“ & c ' B@
- &Clapynrgthl' ”
π
π
6 &bcapynrgml' Á ,

7. 주요서식

- / , ½ & * '
- 0 , ½
- 1 , ½ & * 1 '
- 2 , ½
- 3 , ½
- 4 , ½
- 5 , & '
- 6 , ½ 1
- 7 , ½
- /. , ½ & * * ' 6
- // , ½ & * * * '
- /0 , ½ & * ' 6
- /1 ,
- /2 , ½

8. 상세규정 등 붙임

- /, & $\perp$ * $\frac{1}{2}$ *
- 0, $\frac{1}{2}$
- 1, $\frac{1}{2}$ *
- 2, $\frac{1}{2}$
- 3, $\frac{1}{2}$
- 4,
- 5,
- 6, $\frac{1}{2}$
- 7,

9. 시행

,

10. 경과규정

,

11. 유권해석체계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 $\frac{1}{2}$ “ & 2 ” ’
& c ' $\frac{1}{2}$ $\hat{A}^* \frac{1}{2}$
- ,
 $\frac{1}{2}$ $\frac{1}{2}$
- & c ' $\frac{1}{2}$
- 6 ,
- 6 ,
- .
- & c ' $\frac{1}{2}$ & “
” , $\hat{A}^*$
~ ,
- i $\frac{1}{2}$
,
- *
 $\hat{A}$,
- $\frac{1}{2}$ 1 ,
- $\frac{1}{2}$ $\frac{1}{2}$ $\frac{1}{2}$
& , ' $\frac{1}{2}$ $\perp$,
& c ' $\frac{1}{2}$
& $\frac{1}{2}$ “ ” ,
,

나.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 $\frac{1}{2}$ & , ' $\frac{1}{2}$ $\perp$ / .
i ,

$\frac{1}{2}$ ~ *
 / . $\frac{1}{2}$ & , ' $\frac{1}{2}$
 ,
 ● * $\frac{1}{2}$ & , ' $\frac{1}{2}$ $\perp$ ~
 Á / . Á *
 *
 3 ,
 6 Á $\frac{1}{2}$ & , '
 $\frac{1}{2}$ $\perp$ ~ ,
 ● *
 $\frac{1}{2}$ & , ' $\frac{1}{2}$ $\perp$
 ,
 ● $\frac{1}{2}$ & Á , '
 * π 3 Á
 ,
 ● $\frac{1}{2}$ Á ,

다. 행정 조치

● $\frac{1}{2}$ $\frac{1}{2}$ “
 & 3 ” ‘
 6 ,
 $\frac{1}{2}$
 ,
 ● 6 “ & 4 ”
 ‘ $1\frac{1}{2}$ Á* π ,
 $\frac{1}{2}$ & $\pm$ * Á * $\frac{1}{2}$ ‘
 π Á ~ $\pm$,

& * * ' Á
 D ,
 & ' ½
 ”“
 ,
 & ' ~ Á
 ,
 ½ & ½ = ' ~ ”“
 ½ & ' Á ”“ ”“
 ,
 ½ ”“
 Á ”“ ”“ Á ”“
 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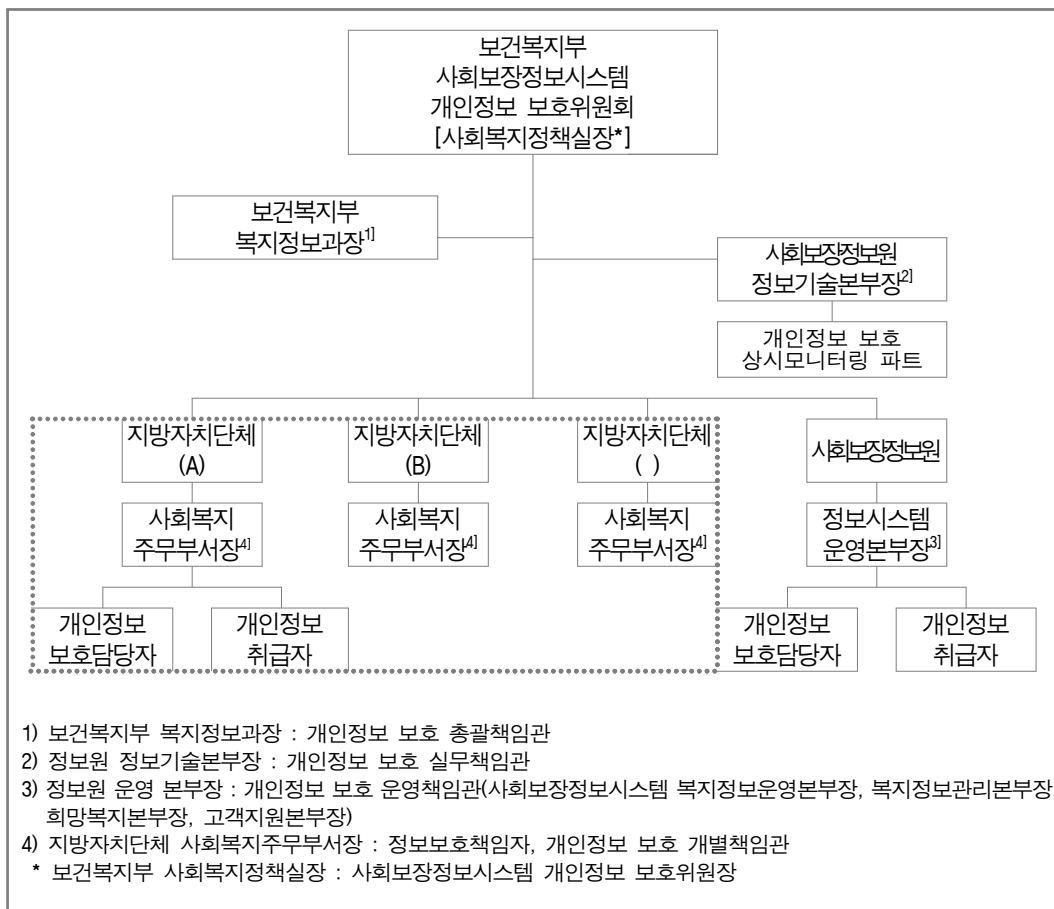
라. 징계 사후관리

- ~ ½ “ & 3 ” ’
 Á * ½
 Á ,
- ½ ”“ ”“
 Á Á * ”
 Á ,

III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 c ' 1/2
 ± 1/2 ± ,
 1/2 ± & c ' 1/2
 * 1/2 ,
 & 1/2 * 6 ' 6 ~
 1/2 * “ * & 1 ” ‘
 ,
 1/2 1/2
 ,
 < >

	(e)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 감독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시 민원 접수처리 ●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수행

.
 ● 1/2 1/2 ± 1/2
 ,
 * * * 6
 1/2 ,
 & * ' / *
 Á*
 1/2 “ & /2 ' 6 ,

< >

	공무원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반기 1회
		시스템 교육	정보원 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반기 1회 수시
	임시직 및 비공무원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분기 1회
		시스템 교육	자체인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1)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교육(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을 수행한다.

※ “붙임 7. 교육 관리체계” 참조

$\frac{1}{2}$ $\hat{A}$ *
 $\frac{1}{2}$ & / '
 $\hat{A}^*$ / $\hat{A}$
 $\hat{A}$,
.
● $\frac{1}{2}$ $\frac{1}{2}$
& $\frac{1}{2}$ $\perp$ ' ,
 $\frac{1}{2}$ * * $\frac{1}{2}$ *
 $\hat{A}$ $\pm$
,
● $\frac{1}{2}$ $\perp$ $\frac{1}{2}$ $\pm$ $\frac{1}{2}$
* $\frac{1}{2}$
,
 $\frac{1}{2}$ $\perp$ & c ' $\frac{1}{2}$
& ' * $\frac{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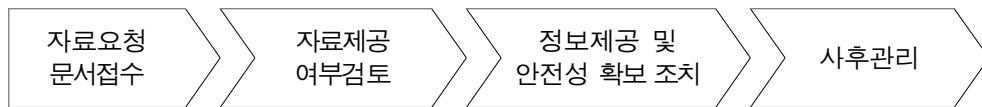
$\frac{1}{2}$ $\perp$ $\frac{1}{2}$ $\frac{1}{2}$
 $*$ $\frac{1}{2}$
 , 6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
 ● & c ' $\frac{1}{2}$ Á
 ,
 $\frac{1}{2}$ ~ * * *
 Á ,
 $\frac{1}{2}$ & “ *
 1 ' & 1” ' ,
 ~ *
 ,
 $\frac{1}{2}$ “ & 0” ' ,
 ,
 .
 ● & c ' $\frac{1}{2}$
 1 , * i $\frac{1}{2}$ /6
 0 * 1 ,
 $\perp$ /0 1 i ~
 B $\pm$ $\pm$ 6 $\pm$

6 1/2

● & c ' 1/2 & ' ~



※ “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참조

&/ ' & c ' 1/2 Á 1/2 “
& 2' ' 1/2 * * *

, Á
* ㄱ Á
, Á*

l % ð! i

l.”

$\frac{1}{2}$ ~ Á* Á*
 ~
 ,
 ~
 ,
 * ~
 $\frac{1}{2}$,
 &1 '
 $\frac{1}{2}$ ~ *
 & SQ@* AB ' ,
 * & “ ' ,
 & 5” ' Á $\frac{1}{2}$ “ & 4”
 ' 6 ,
 * & “ ' ,
 & 5” ' Á $\frac{1}{2}$ “ & 4”
 ' 6 ,
 ~ *
 * Á
 ,
 * 1 ~ $\frac{1}{2}$
 * * * ~ * $\frac{1}{2}$
 07 6 ,
 &2 '
 1 1 $\frac{1}{2}$ “
 1 & 6” ' Á*
 1. * * * /.
 ,

부록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 6
Á* & “
/1 ' 6 ,

● ½
& c ' ½
Á Á* ½ * π *
* ½ 6 *
Á
½ ~ /
5 ,
*
& B B ' Á ,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½
& c ' ±
½ ± , ± ~
& c ' ,

● ½
± AART ±
Á*

● NA
½ ~
Á ½ ,

Á*

*

,

NA ½ ~ Á

Á ½

,

Π *

Π *

/

● ½ -

½ ½ Á

*

*

*

,

* ½ ~ ~

,

IV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 & c ' 1/2 ,
- & c ' 1/2
- , & c ' 1/2 1/2
- 1/2 Á ,
- 1/2 Á
- 1/2 ± & c ' & ,'
- 1/2 * Á 1/2
- Á* Á ,
- & c ' 1/2 3
- Á ,
- & c ' 1/2 & / ' Á
- , & c ' 1/2
- ¶ 1/2 & c ' 1/2 ,
- < >

	(e)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 마련 및 적용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연간 교육 결과 보고 •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 실태점검(반기1회) 및 개선 • 그 밖에 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등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 & c ' 1/2

i ,

● & c ' 1/2

,

& c ' 1/2 Á 1/2

± ,

1/2 ± & c ' & ' ,

1/2 *

Á 1/2

,

& c ' 1/2 ± Á* 1/2

& ¶ ' ,

1/2 ,

1/2 * 1/2 * 1/2 ¶

& c ' 1/2

,

< >

(e)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 감독 ●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기록(로그) 생성 ●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통제 관리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관리 ●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

● $\frac{1}{2}$ $\perp$ $\frac{1}{2}$

,

* * *

$\frac{1}{2}$ 6 Á

,

& ,'

Á $\frac{1}{2}$ “ & /2 ' 6 ,

< >

	운영자	정책교육	인증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반기 1회
		온라인교육	정보원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반기 1회

※ “붙임 7. 교육 관리체계” 참조

$\frac{1}{2}$ Á *

$\frac{1}{2}$ & / '

,

& c ' $\frac{1}{2}$

,

Á

Á ,

·

● $\frac{1}{2}$ $\frac{1}{2}$

$\frac{1}{2}$ $\perp$ ' ,

* * $\frac{1}{2}$ *

Á $\pm$,

● 1/2 ± 1/2
 * 1/2
 ,
 1/2 ± & c ' 1/2
 & ' * 1/2
 ,
 1/2 ± 1/2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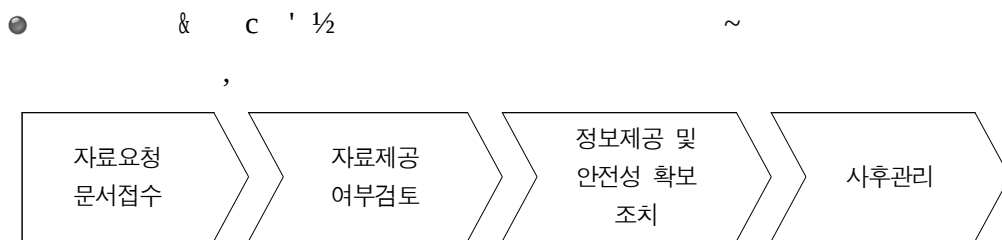
6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
 ● & c ' 1/2 Á
 ,
 ~
 1/2 * * *
 Á
 ,
 1/2 & “ *
 1 ' & 1” ' ,
 ~
 ,
 ● 1/2 *
 * ¶
 ' & /” ' 4. 1/2 &“ *

.
 ● & c ' 1/2
 1 , * i 1/2
 /6 0 * 1
 ,
 ± /0 1 i
 ~
 B ± ± 6 ±

6 1/2



※ “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참조

&/ ' Á 1/2 “

& 2” ' 1/2 * * *

,

Á

* ㄱ Á

,

& ' Á*
 * *
 ,
 ,
 &0 '
 & c ' ½ ~
 & , ' Á* ½ “
 & 3” ' ,
 ~
 ,
 &1 '
 ½ ~ *
 &
 SQ@* AB ' ,
 * & “ '
 & 5” ' Á ½ “ & 4”
 ' 6 ,
 ~ *
 * = Á
 ,
 * 1 ~ ½
 * * * ~ *
 ½ 07 6
 ,

$\frac{1}{2}$ 1
 & 6" ' *
 1. * * * /.
 ,
 $\frac{1}{2}$ 3 Á Á*
 П ,
 & c ' $\frac{1}{2}$ ~ *
 $\frac{1}{2}$ ~
 Á* ~ $\frac{1}{2}$ ± ,
 $\frac{1}{2}$ ~ F-U Q-U $\frac{1}{2}$ *
 * * * * * 6 $\frac{1}{2}$
 ,
 $\frac{1}{2}$ $\frac{1}{2}$ “ & 7” ‘
 * i
 ,
 $\frac{1}{2}$
 $\frac{1}{2}$
 $\frac{1}{2}$ $\perp$
 $\frac{1}{2}$
 $\frac{1}{2}$
 $\frac{1}{2}$ NA
 $\frac{1}{2}$ $\perp$ 6
 *
 $\frac{1}{2}$,
 $\frac{1}{2}$ $\frac{1}{2}$
 $\frac{1}{2}$ “ Á ~ Á”
 ,

.
 ● $\frac{1}{2}$ & ~ ~ 3
 ' $\frac{1}{2}$ ~ $\frac{1}{2}$
 ,
 $\frac{1}{2}$ * $\frac{1}{2}$
 * $\frac{1}{2}$ “
 & 0” ' ,
 * SQ@ $\frac{1}{2}$ ~ 6
 ~ & i * 1 ' ,
 ● & c ' B@ Á $\frac{1}{2}$ 0
 $\frac{1}{2}$ ~ ,
 &/0 $\frac{1}{2}$ ' Á* П
 ,
 ~
 2
 ~ *
 2
 2
 * *
 *
 ,
 (Á* ‘
 /0 ~ Á* П
 Á ,
 6 &/0 $\frac{1}{2}$ ' Á*
 Á ,
 ● 6 $\frac{1}{2}$ ~ “
 ” ,

.
 ● $\frac{1}{2}$ *
 6 ' 6 ~ $\frac{1}{2}$ * " "
 & 1 ' ,
 $\frac{1}{2}$ 6 / . 6
 π * $\frac{1}{2}$ & " ' & / ' ' $\frac{1}{2}$ "
 & ' 6 & 70 ' ,
 ,
 & c ' B@ 6
 *
 ,
 * ~ Á ~
 ,
 * *
 * ,
 π 6 ~ "
 & c ' $\frac{1}{2}$ " ,
 ● 6 Á* & "
 /1 ' 6 ,
 .
 ● Á Á* $\frac{1}{2}$ * π * 6 * Á
 * $\frac{1}{2}$
 / $\frac{1}{2}$ ~
 5 ,
 * $\frac{1}{2}$
 & B B ' ,
 Á ,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 $$\begin{array}{c} \& \quad c' \\ \acute{A} \\ , \\ * \\ ?NG \\ , \\ \frac{1}{2} \quad AART \pm \pm \\ \acute{A}^* \\ , \\ \Omega \\ (\\ , \\ * \text{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 \\ * NON^* \quad * \quad * DRN \quad * Rcjlcr^* \\ \sim \\ , \\ \frac{1}{2} \quad \perp \quad NA \quad QQJ \quad \Pi \\ , \\ B@ \\ B@ \quad \acute{A} \quad \acute{A}^* \frac{1}{2} \\ \& \quad , \\ \frac{1}{2} \\ , \\ B@ \quad \sim \\ B@ \\ , \\ \frac{1}{2} \quad B@ \quad B@ \quad \frac{1}{2} \quad \Pi \\ \acute{A}^* \quad \Pi \\ , \\ B@ \quad \& \quad \frac{1}{2} \quad * \quad * \quad * \\ GN \end{array}$$

$$\perp,$$

,

*

*

,

,

,

*

,

NA $\frac{1}{2}$ ~ Á
 Á $\frac{1}{2}$
 ,
 π * π *
 / ,
 ● $\frac{1}{2}$ -
 $\frac{1}{2}$ $\frac{1}{2}$ Á *
 * * *
 ,
 $\frac{1}{2}$ ~ ~
 Δ Ì

V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 ~* * * 1/2

/ . 6 ,

• / 1/2 *

,
- Á * 1/2 ,
- i ,

& c ' 1/2 * 1/2

& c ' 1/2 6

& c ' 1/2

.
- & c ' ,

,

& c ' 1/2 ,
- & c ' 1/2 ,

& c ' 1/2 Á 1/2 ±

& c ' 1/2 ± ,

& c ' &1/2 ' ,

,

& c ' 1/2 / Á

,

& c ' 1/2 & ' ,

± Á* ~ ,

& c ' ½ ½
 ,
 ½ ± ½ Ⅱ
 & c ' ½ ½
 ,
 < >

	(e)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수립 및 시행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침해 등 관련 민원 처리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행복e음) 관계자 교육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 총괄 관리 감독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개선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영향평가 실시 및 주기적 관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도입과 운용 그 밖의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
 ● ½ ± ½
 ,
 ½ Á *
 ½ & / '
 ,
 * Á*
 ½ “ & /2 ' 6 ,

< >				
()	정책교육	인증강사 (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시스템교육	정보원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 “붙임 7. 교육 관리체계” 참조

·

● 1/2 & 1/2

± ,

3, 1/2 “

”

,

*

* 1/2 *

Á ± ,

1/2 ± 1/2 ± 1/2

*

1/2

± ,

1/2 ± & c ' 1/2

& ' *

1/2

± ,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

● & c ' 1/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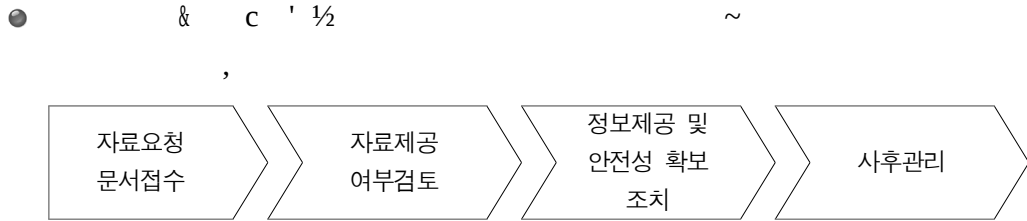
' 1/2 ± ,

● & c ' 1/2 Á

*

,

부록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 “붙임 2. 개인정보의 제공(공통)”참조

&/ ' & c ' 1/2 Á 1/2 “ & 2' ' 1/2 * * *

,

&0 ' & c ' Á 1/2 “ & 3” ' , 1/2 ~ Á* ~ Á* ~ , ~ ,

&1 ' 1/2 ~ * & SQ@* AB ' Á 1/2 “ & ” 4 ' 6 ,

&2 ' 1/2 1 1/2 “ 1 & 6” ' ,

1.	*	*	*
/.	,		
$\frac{1}{2}$	3	Á	Á
¶			,
.			
●	&	c	' $\frac{1}{2}$
		$\frac{1}{2}$	~
Á*	~	$\frac{1}{2}$	±
$\frac{1}{2}$	~ F-U	Q-U	$\frac{1}{2}$
*	*	*	*
	6	$\frac{1}{2}$	*
	,		
$\frac{1}{2}$	$\frac{1}{2}$	“	&
,	*		7”
			i
			,
$\frac{1}{2}$			
$\frac{1}{2}$			
$\frac{1}{2}$	⊥		
$\frac{1}{2}$			
	$\frac{1}{2}$		
$\frac{1}{2}$		NA	
$\frac{1}{2}$	⊥		6
*			
$\frac{1}{2}$	,		
● $\frac{1}{2}$		$\frac{1}{2}$	
$\frac{1}{2}$	“	Á	~
		Á”	
	,		

.
 ● & c ' 1/2 & * ' ± ,
 ● 1/2 & ~ ~ 3 ' 1/2 ~ 1/2 ~ ,
 1/2 AART ± ± Á* ,
 * SQ@ 1/2 ~ 6 ~ & i * 1 ' ,
 1/2 1/2 “ & 0” ,
 & c ' B@ 1/2 ~ & “ ' 1/2 ” ,
 .
 ● & 1/2 * 6 ' 6 ~ 1/2 * “ * & 1 ” ' ,
 1/2 6 / . 6 1/2 & “ ' & // ' ,
 & c ' ,
 * ~ ,

* ,
 “
 π 6 ~
 & c ' ½ ” ,
 ● 6 Á 6
 ' 6 , /1
 .
 ● ½ * ½
 * π * * ½
 6 * Á
 ,
 ● / ½ ~
 5 ,
 & B B 3 ' Á ,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 ½ ~ Á
 ± ,
 ● & c ' ½
 ,
 .
 ● & c ' ±
 ± ,

- $\frac{1}{2}$ $\perp \sim$ $\pm$,
- $\& c'$ * $\acute{A}^* \pi$
1 ,
- $\& c'$ *
- $\& c'$ *
- $\cap$,
- $\&RKQ'$ $\&Dgpcu_{jj}'^*$ $\&GBQ'^*$ $\&GNQ'^*$
- * NON^* * * DRN * $Rcjlcr^*$
 $\sim$,
- $\frac{1}{2}$ $\perp$ NA QQJ π
 ,
- $\acute{A}$ $\frac{1}{2}$ $\acute{A}^* \pi$ $\frac{1}{2}$ $\sim$
 ,
- $\frac{1}{2}$ $\perp$ $\& c'$ $4\frac{1}{2}$
 ,
- $\acute{A}^*$ *
 ,

·
 ● ㄱ * ㄱ *
 / ,
 ·
 ● ½ AART ± ±
 Á*
 ,

[별지 제1호 서식]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7일 기간
------	-----	--------------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	----	------	------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0/.kk 075kkT 5.e-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명	
원천자료 보유기관 ¹⁾	
매체형태 ²⁾	
수집일	
파기일 ³⁾	기관에 인계한 경우 인계한 기관명, 파기일을 작성
파기사유	
위의 자료를 수집 및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기관명) (인) 부서장 : (기관명) (인)	

1) 원천자료를 수집한 기관(예: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대량자료 수집)을 말하여 제공한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한다.

2) 보안 USB, 일반 USB, 외장하드, CD/DVD, 온라인 파일 등

3) 자료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전달용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이르며, 온라인 파일의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것을 파기로 본다.

& ' "

[별지 제3호 서식]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 선택항목 : 연락처(사무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00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000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000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이 용 및 제 공 요 청	접수일 및 접수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와 담당자 작성
	정보제공 요청기관	
	요청사유(사용목적)	
	요청자료 (세부항목, 건수, 기간주기 등)	
	요청근거(관련법률)	
검 토 의 견	제공부서명	복지정보과, 정보원 OO부 등
	제공부서 의견	소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업과가 작성, 다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정보과가 작성
	제공에 관한 기술부서명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기술적 검토의견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시스템으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정보원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

$$: \quad 8 \quad <$$
[illegible]

[별지 제8호 서식]

3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 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부 록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MM&	2	“	&	“ 2 1/2 ” “	” “
					,
1 ()	2 1/2	” “	” Á*	” “	,
2 ()	*	1/2	&	Á 0.// 23 ' 1/2 *	,
3 ()		” “	&	'	
	1/2		,0/'		
/,					
0,					
4 ()		” “	&	' ~ Á	
	1/2		,00'		
/,		0.MM,MM,MM ~ 0.MM,MM,MM			
5 ()	2	” “ ” “	Á 2	” “	
		1	,		
	2	” “	” “	π	
			,		
6 ()	1/2	1/2	” “ 07 *	1.	
		Á &	Á 0./2 5 ' 1/2		
			,		
7 ()		” “			
	1/2	1		,	
	” “		Á		
	1/2	1/2	/4	2	” “
0		1/2	” “	2 π	” “
				,	

8 () 2 ” “ ” “ i
6 * ” “ ~ ,
/, ½
0, ½
1, ½
2,
3,
4, Ⅱ ½
2 ” “ ” / i 6 *
” “ ~ ,
2 ” “ ½ ~
/ & ' ” “ * ” “ ,01'
/ 2 ” “ ” “ ,
9 () ” “ ” “ ” ~ “
” “ 2 ½ ” “ 1
~ Ⅱ ” “ ,
/ ½ 1 2 ” “
2 ” “ 6 ” “ ,
0 Å* 2 ” “ ” “
i / ,
0.MM,MM,MM
2
6 : () 6 : ()

[별지 제10호 서식]

- 2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노력한다.
- 2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2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	-------------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작성 방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	--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	--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	c	'	1/2	±	*	*	~
					Á	*	Á	
	,							
/,				1/2			* 1/2	
0,	~	6		~				1
1/2				,				
1,	~					*		
		Á	~					
2,		1/2		*	*	*	*	*
	*	*	6*	*	*	1/2*	π	*
				,				
3,		ⓑ*		*	*	1/2		
				,				
4,		1/2	&	*	*	*	*	'
	*	*						*
							π	
				,				
5,							*	
	Á 3/4		Á					~
	i							
	±	“	Á	±		*	1/2	”
							“	*
							”	“
								”
	±	-		*				
							-	6
								,
					0. MM	MM	MM	
							8	
							8	
							8	
							8	
							&	'

[붙임 1]

(, ,)

○ 8 ± 1.

,

○ Á 8 ± 3 1

±

B ~

±

±

D

*

*

±

Á

*

Á

,

○ π 8 ± 1/

6

,

π

π 1/2

,

,

6

,

○ 6 8 ± 11

~

Á

~

Á

~

~

Á

*

* π

,

○ 8 ± 12

±

B ~

3

,

*

- 3, 27, *
- 6 8 31 6, 6
- 32, 3
- 33, 1
- 12, 12
- 12, 6

○	±	Á	±	±	Á
i	*	*	±	±	
	~	±	±		
	±	8	±	05	
	B ~				
	~	1/2	01		
	/6	0			*
	*	*		B	
	/7				
	~				
	±				
	6				
	±	0			
π	±				
	±				
	±	*			
	±				
	±	Á			
	±				
	±				
B	6				

○ ½ 8 ½ /3 * /4 * 00
 ½ ½ * ½
 Ⅱ ½ * Ⅱ
 , ½ ,
 ~
 ~
 ~
 Ⅱ 1 ±
 * * Á
 ½
 i i 6 ~
 Á i i ,
 ½ *
 * Ⅱ
 Á ,
 ½ ½
 ½ 6
 Á ½ ,
 ½ ~ ½
 ,
 ○ ½ 8 ½ /5 * /6 * /7
 ½ * 1
 *
 , & ,
 ½
 Ⅱ ½ * ½
 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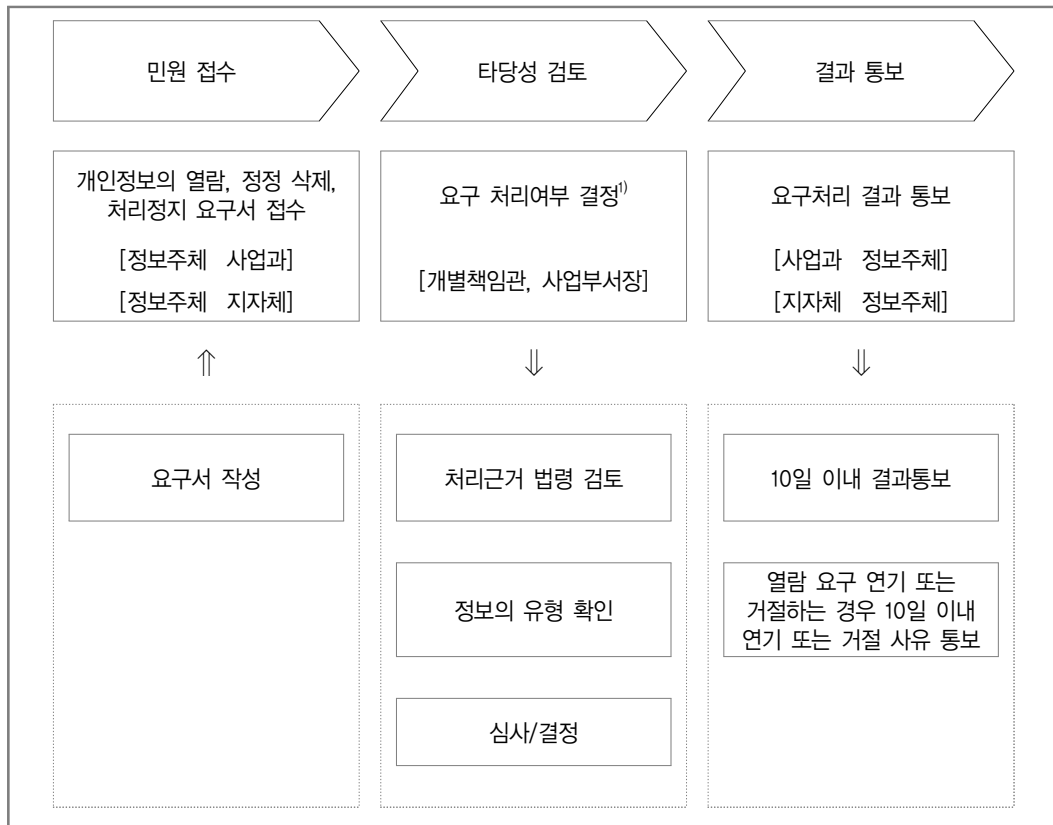
○ 1/2	8 1/2	0/	
1/2			
1/2	*		1/2
1/2			
1/2	6		,
○ ±	Á	8 1/2	01 * 02
1/2	±	Á	
	*		,
○	8 1/2	02 0	
1/2		*	1
±	*	*	Á
~	~		,
○ 1/2	8 1/2	12	
1/2	~	1/2	*
*	6	11	*
			,
○	8 1/2	12 *	13 * 14
1/2	*	*	6 /. ,
	11		,
○ 11	8 1/2	37	
1/2			1/2
			,
○	8	10	
			/
/	11	,	
		/	/
11	,		

[붙임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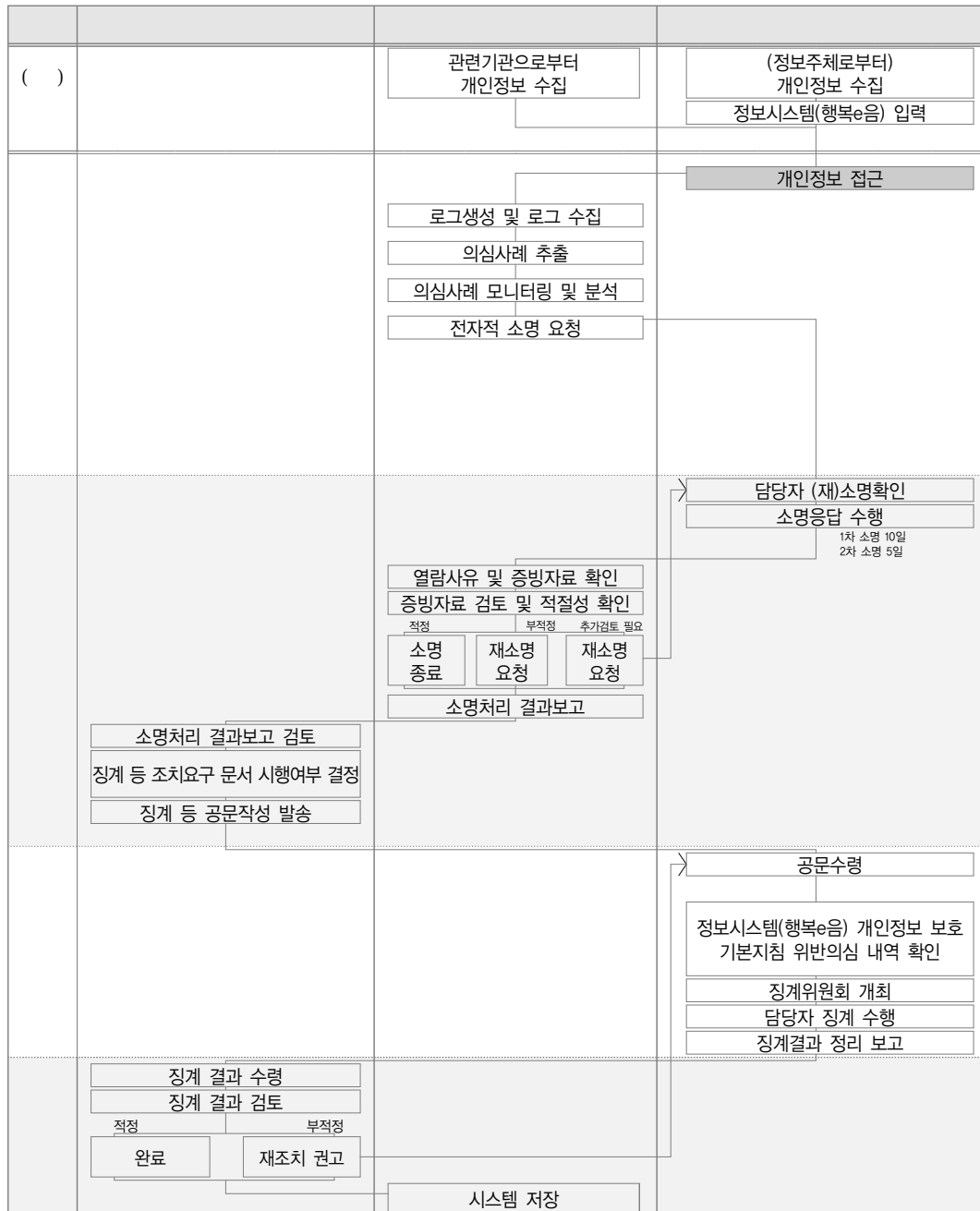
[붙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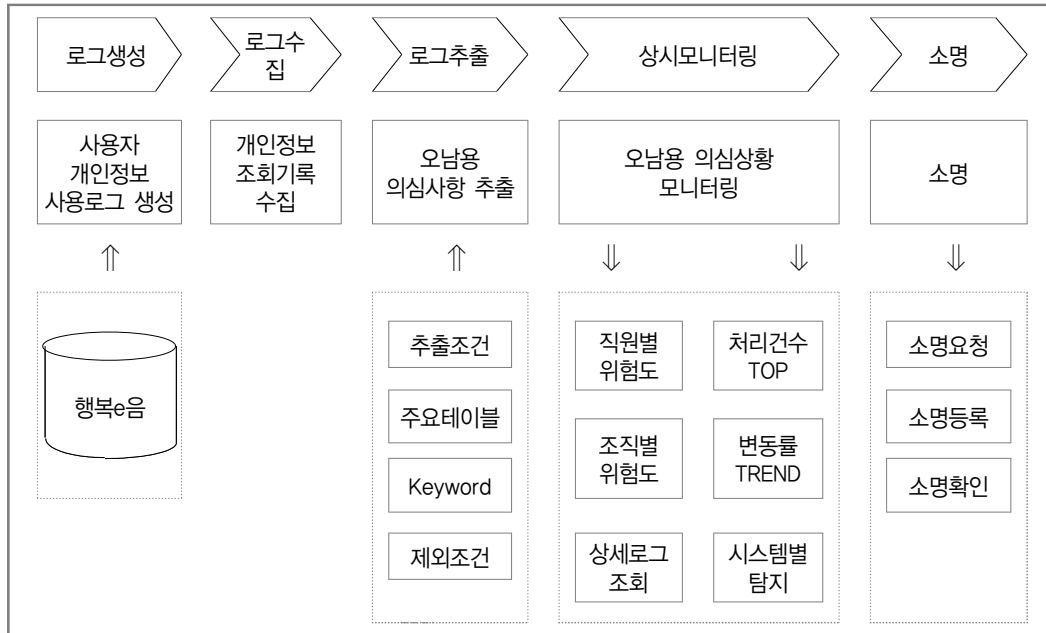


1) 요구처리여부 타당성 결정 시 주의사항

- 요구받은 정보의 유형 등을 확인 후 심사/결정
- 열람연기, 제한, 거절 사유 확인
- 정정·삭제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수집 대상 시 삭제 불가)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증거자료 필요 여부 확인(필요시 정보주체가 제출)
- 처리정지 : 처리정지 거절 사유 확인

[붙임 4]





& ' 1/2

& ㄷ ' & c ' 1/2

& ㄷ ' ㄷ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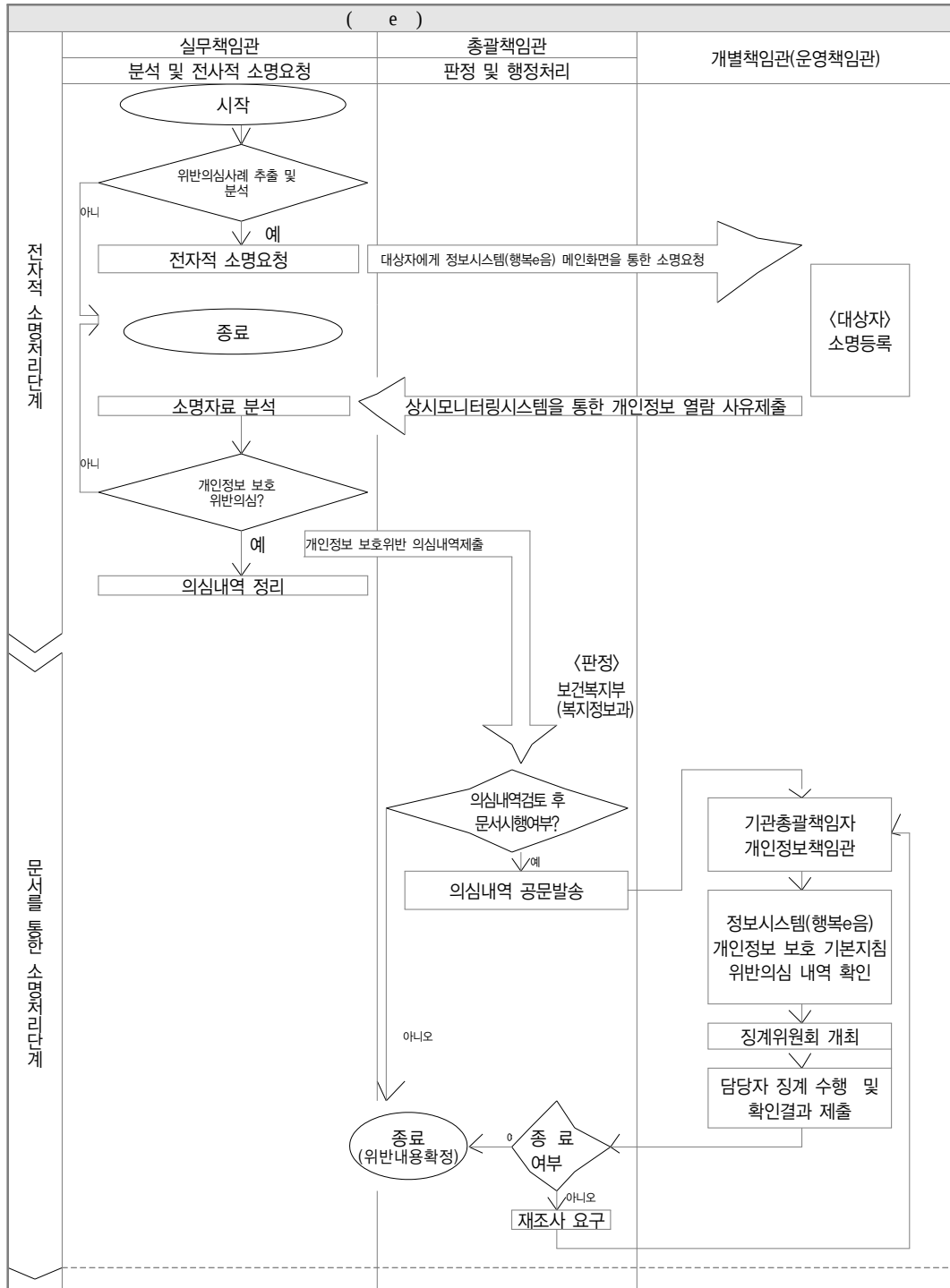
1) 정형화된 형식: 육하원칙 표준화 포맷을 기준

- 열람자 정보 : 성명, 소속, 처리일시, 사용IP, 화면정보, 버튼처리구분 등
- 피열람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ㄷ ' ㄷ i 1/2

& ' 1/2 ㄷ *

& ' 1/2



[붙임5]

○	&	0	'
○	±	.	± 31 32
○ 1/2		37 * 43	
○		1/ * 10	
○	±		
○ 1/2			
○	1/2		
○	&	'	
○ 1/2			
○ 1/2		1/2	
○	7	±	
○ 1/2	6		
		& c ' 1/2	6
	금융(신용, 보험, 계좌 등) 관련 정보 가족관계등록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성 폭력 및 가정 폭력 관련 정보 범죄관련 정보, 건강(질병 진료내역 등)관련 정보 관련 자격 및 수혜서비스, 상담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소득 재산 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민감정보 및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½

½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경고 이상

※ 세부 처벌 기준은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참고

○

i

~

½

/

π

Å

½

~

○ ~

~

~

	1	2	3
	강등	해임	파면
	감봉	정직	강등
	견책	감봉	정직

○

~

±

			1		2		3
	정직	감봉	강등	정직	해임	강등	파면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강등
	경고	주의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	$\frac{1}{2}$		
	& c '	$\perp$	
	$\frac{1}{2}$	$\perp$	
	$\frac{1}{2}$	$\frac{1}{2}$	
	건축	경고	주의

※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는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인정

()

○			
	& ' *		
	$\frac{1}{2}$		
	()	건축	
	()	건축	

○			
	$\frac{1}{2}$	~	
		퇴사	
		경고	

○ 1/2 1/2
1/2 ± 1/2

	()
	경고
	주의

○ ㄱ

±

○ ±

ㄱ * ±
, * Á ±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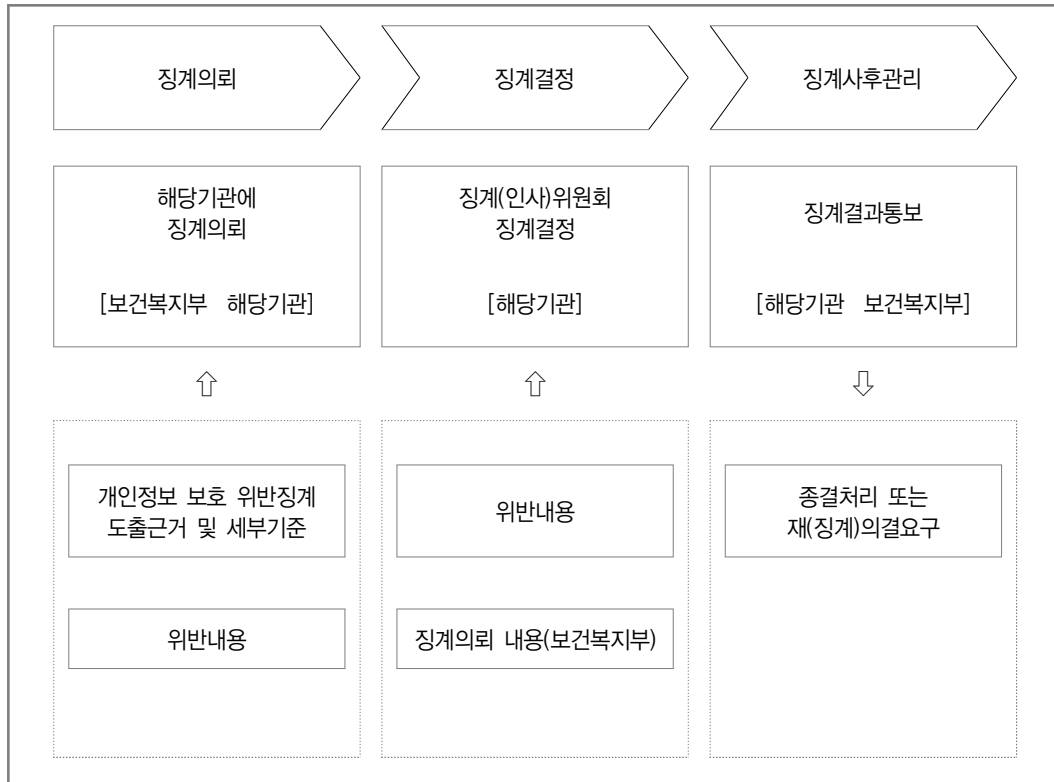
	1. 파면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유출한 경우
	2. 해임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3. 강등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4. 정직 요구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5. 감봉 요구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6. 견책 요구	(중요 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7. 경고 요구	(중요 고유식별정보) 중요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8. 주의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9. 고발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범죄사실로 사료되는 경우

※ 징계의결 요구 및 처리기한(2개월 이내 의결), 집행(통보 후 15일), 재심사 청구(15일)하여 3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책임관에게 회신

※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

[붙임 6]



i

Á* ¶

1½

, &

,

[붙임 7]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반기 1회
		시스템 교육	정보원 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반기 1회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분기 1회
		시스템 교육	자체인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¹⁾	수시
		정책교육	인증강사 (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반기 1회
		시스템 교육	정보원 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		정책교육	인증강사 (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시스템교육	정보 개발원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교육(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을 수행한다.

[붙임 8]

○

1	신규채용, 전입 및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관리			
8	사용자PC 보안관리			
9	임시직,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분기 1회		
10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1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반기 1회		
12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및 보고	연 1회		

○

1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8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관리			
9	사용자PC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위탁사업자 포함)			
10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의심사례와 소명 완료된 사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매월		
12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및 개선	반기 1회		
1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14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			
15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연 1회		

○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관리 감독	수시 (즉시)		
2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3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 감독			
4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감독	상시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관리 감독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 결과 감독	매월		
8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승인	반기 1회		
9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관리 감독	연 1회		
10	연간 교육결과 관리 감독			
11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및 보고			

[붙임 9]

A-Q 8 &Ajgclr' 6 * &Qcptcp'

B@ 8 B@ ~ “ ”
D ~

DRN&Dgjc Rp_lqdcP Npmrmamj' 8

π

MU?QN RMN /. 8 B 6 MU?QN&Rfc MncI Uc` ?nnjga_rgmI Qcaspgy
Npmhcar'
~

NON&Nccp rm Nccp9 ncpqml rm ncpqml' 8 ½ ½
, B &l_nqrCP' B

QQJ&Qcaspc Qmaicrq J_ycp' 8

RcjIcr 8 D

TNL&Tgrs_j Ngt_rc Lcrumpi' 8 6

~

½ 8 π π

&LNIG 9 L_rgmI_j Ns`jga Icy Glđ\_qpsarspc\* ENIG 9 Emtcpl kclr Ns`jga
Icy Glđ_qpsarspc' 8 Á* *

&A?'

8 Á π

&RKQ 8 Rfpc_r K_l_eckclr Qyqrck' 8

GR

8

Á*

8

π

6

&GNQ 8 Glrpsqgm1 Npctclrgm1 Qyqrck' 8

&GBQ'

&Dgpcu_jj' 8

*

&GBQ 8 Glrpsqgm1 Brcargm1 Qyqrck' 8

±

?NG&?nnjga_rgml Npmpc_k kgle Glrcpd_ac' 8

*

π

8

*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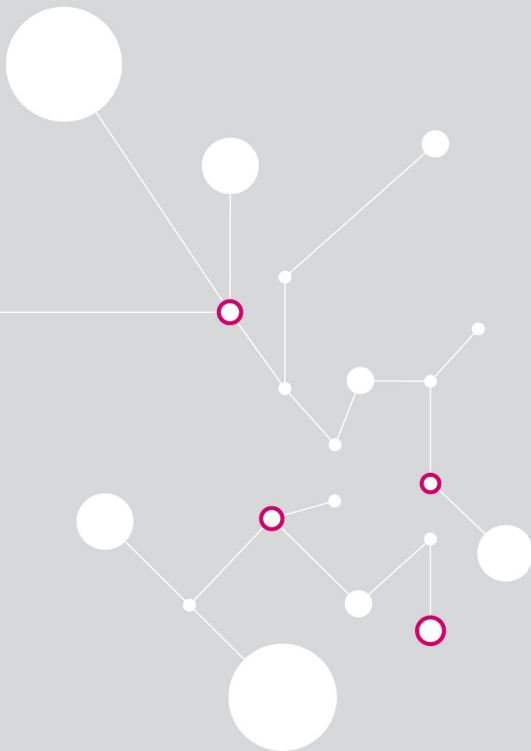
부 록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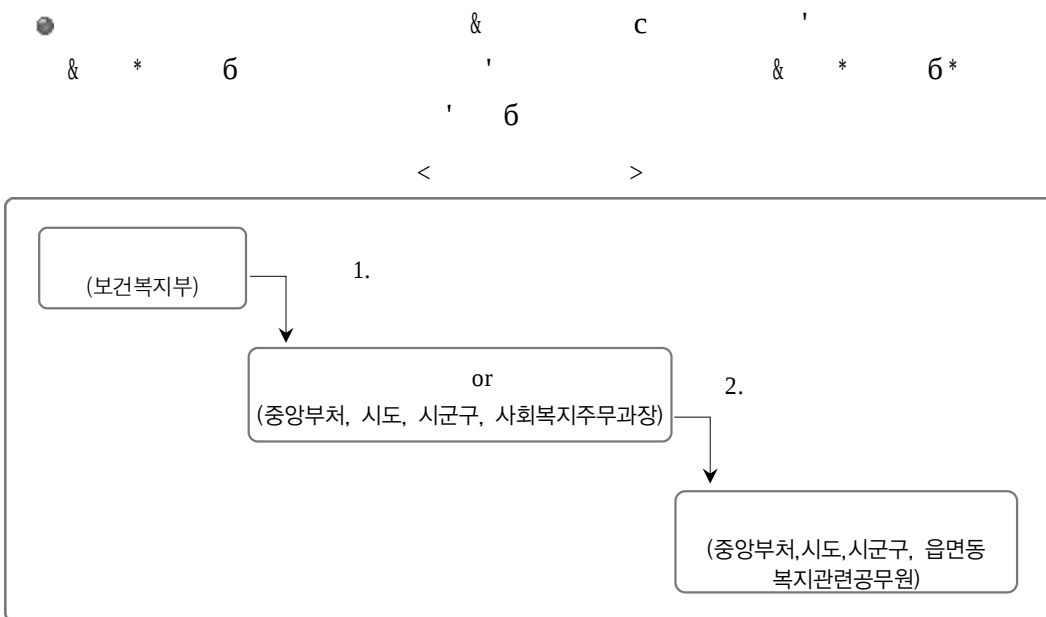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I 목 적

-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권한관리 개요

1. 권한관리 체계



- ※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장은 행복e음에 사용자 ID를 등록 후 **【붙임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보건복지부)에게 승인 요청
- ※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 2인의 범위 내에서 업무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보조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업무보조자 업무권한 부여
- ※ 기초자치단체 내에 일반구가 있는 경우 일반구 사회복지주무과 소속 직원 중 1인을 업무보조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 복지정보과장	행복e음시스템에 대한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를 등록하고 권한 부여
	시 도 : 사회복지주무과장 시군구 : 사회복지주무과장	시도, 시군구의 복지업무총괄 관리 사용자 등록,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업무보조자 지정
	기관총괄책임자 소속 부서 공무원 일반구의 경우 사회복지 주무과 소속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자의 권한관리업무 보조 사용자 등록,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등 기관총괄 책임자 업무보조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 관련 공무원(비공무원 포함)	기관총괄책임자로부터 승인받은 권한에 따라 업무처리

2. 권한관리 절차

※ 1인 1개 권한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2개 권한 부여 가능

- ※ 불가피하게 3개 이상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 ※ 사용자별 업무분장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만 수행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의 권한이 부여됨

※ 사용자별 업무분장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만 수행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의 권한이 부여됨

c 1½ ㄱ

III

사용자 등록

1. 개 요

c A

- ※ 행복e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처리담당자(시군구 공무원)는 사전에 서울행정정보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2. 사용자 등록대상

* 6 * c “ ”

-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록하여 사용
- ※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업무담당자에 대한 권한관리는 'VI. 비공무원 권한관리방안' 참조

3. 서울ID 사용자가 행복e음 신규 등록이 필요한 이유

ㄱ GB

ㄱ GB ~ c GB

& GB ' ~

4. 사용자 로그인 ID(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록기준

●	c	ㄸ	GB
	ㄸ	GB	
4	10	*	6
		*	~
			ㄸ
	GB	GB & QWQRCK *	QUQBL *
	?bkglgqr_rmp	'	~
7	10	*	*
		*	*
		*	6
		*	~
			ㄸ
	GB		
1/2	c	*	
	GB		* 1/2
	ENIG	*	LNIG
~			

5. 사용자의 의무

●	c	&GB'
		Á
●		1/2

6. 행복e음 로그인 방식

- C ㄱ,
 - ※ 단, 공인인증서 갱신 시는 사용자 ID·PW를 이용한 로그인 허용
 - C ㄱ & B' ㄱ / 1/2
 - , & ~ '
 - B
 - C ㄱ ~ * GBNU ㄱ
 - ㄱ ~
- ※ 서울행정시스템에 IP·PW로 로그인 한 후 행복e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으로 이동

7. 유의사항

- C GB * GB
 - ~
- C
 - C * 1/2 *
 - G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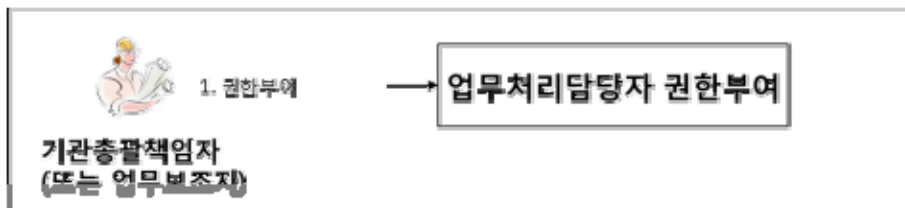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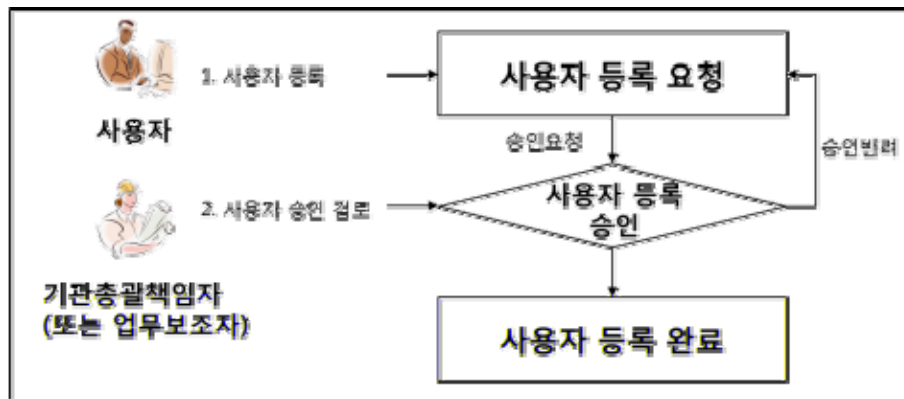
※ 상세내용은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부록 “제2장. 개인정보보호지침” 참조

- < () >
-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 제54조(벌칙)
-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IV

권한 부여

1.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 절차



● ~ Y 0] &
' Á* * 6 Y 1]

~

2. 권한범위 설정

● c & ~ c ' Y
1]

●
1/2

& 8 ' ~
1/2 ~
6 i ± ±*
~
* ~ * *
~

●
& ' 6 ~
& ' 6 ~
~

※ 신청서의 소득·재산정보 입력은 읍면동 담당자가 수행

& ' 6 *

~

※ '통합조사및결정화면열람권한' 권한 부여시 열람가능

〈소득 재산 정보 권한범위〉

					*
	시군구 주민생활담당				
	시군구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담당				
	시군구 주민생활담당			**	
	시군구 긴급지원 자원연계담당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 대상자의 기본정보 조회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으로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총액 등 확인

**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세부내역 조회

3. 권한부여 시 유의사항

●

● Y 1)& ' ~ “~ ”
& ' ~ 6

●

* ±

●

~

●

V

권한 변경 및 중지

1. 개 요

- ~
- ~ ~
- ~

2. 유형별 처리절차

※ 권한관리시스템 사용가이드는 별도 매뉴얼 제공 (복지광장에 등록)

- ~
- ~

※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권한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

- ~
- ~

< ID >

	()	
e	사용자 등록 불필요	로그인 ID 변경 불필요
	사용자 등록 필요	로그인 ID 신규 부여 필요



' ~
~ 8
~ 8

※ 부서의 신규 생성기준은 부서코드의 신규 부여 여부임

' ~ &L /'
1/2 ~ 1/2 *
*

' ~ &/ L'
~ 1/2 *



* ~ C
*



~ C

※ III.사용자등록의 7.유의사항 참조



C 1 1/2 ㄱ

※ 3개월 미사용자에 대한 권한 중지 및 사용자D 중지 처리는 시스템관리자가 일괄 처리할 수 있음

● 1½

GB~

~

VI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1. 개요

● c

* 6*

2. 관련근거

●

& B

.6,/. ,07'

‘

&

’

& 1 * /0 ’

제12조 (접근권한 부여 원칙)

- ① 정보시스템 접근, 행정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되며, 권한관리 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

/25 *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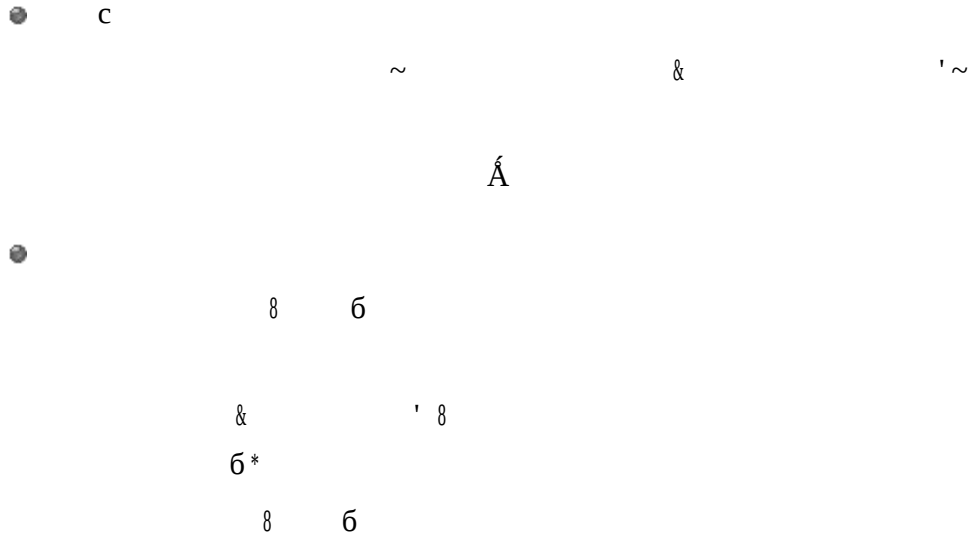
‘

& 05 ’

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

-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관리하여야 한다.
- ①-4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책임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

3.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유형



※ 통합사례관리사는 시군구에서 긴급지원, 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된 콜 상담안내,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함

⊥ 8 ⊥ ⊥

8

6. 유의사항



1 * /0 & B .6,/.,07' '



& /25 * .7,4,7' 05 /' / * 2
Á

* 6

※ III.사용자등록의 7.유의사항 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				
① 소속	기관명		부서명	
② 신청자정보	성명		전화번호	
	사용ID		e-mail	
③ 등록요청 권한정보	☐ 기관총괄책임자(보건복지부) ☐ 기관총괄책임자(시도) ☐ 기관총괄책임자(시군구)			

위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 _____
(직인)

전자문서 처리를 통할 경우 신청기관장 직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붙임 2

(e) ()

		결 재	담 당	과 장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 사용자 정보				
성 명				
연락처		담당업무		
신청ID		신청IP		
2. 신청사항 정보				
소속구분	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사용권한	예) 시군구주민생활담당, 시군구장애인담당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 유(근거 중심으로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허가를 신청(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반납인)		(인) 권한담당자	(인)	

본인은 업무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법률위반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벌칙)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 3

/

1.

					()
1	공통	공무원	시스템관리자	시스템 관리	관리자
2	공통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자	인사이동, 권한부여, 부서정보 관리	
3	공통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업무보조자	인사이동, 권한부여, 부서정보 관리	
4	공통	공무원	소득재산정보담당	소득재산	관리자
5			연계관리담당자	연계	
6			운영센터기준관리담당	기준정보 관리	
7			자료파기관리담당	자료파기	
8			포탈운영자	공지	
9			시군구사례관리협업지원 시스템관리자	사례관리 기준담당	

2.

					()
1	복지부	공무원	복지부담당	통계	복지통합 (사후관리) (결혼중개업) (의료급여) (긴급복지) (장애인복지) (기타복지서비스)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공통지원 (통합연계지원)
2	법정부 (중앙)	공무원	여성가족부담당	통계	복지행정 (결혼중개업)

3.

					()
1	시도	공무원	일반시설 시도담당 (기본)	시설인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업무 시도임대주택담당업무	복지통합 (사후관리) (결혼중개업) (시설및법인) (긴급복지) (바우처) (아동청소년) (의료급여) (기타복지서비스) (국토부업무지원) (장애인복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연계)
2	시도	공무원	특수시설 시도담당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3	시도	비공무원	시도비공무원의료급여담당	의료급여 업무	복지행정 (의료급여)

4.

					()
1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일반시설법인담당	시설, 법인 인허가 및 종사자관리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2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입소시설법인담당	시설 입소자관리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3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특수시설법인 (여성)담당	특수 시설 법인(여성)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4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특수시설법인 (한부모)담당	특수 시설 법인 (한부모)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5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사례관리담당	사례관리업무지원, 서비스연계, 안내상담, 민원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행정 (민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6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통합사례관리담당 (이관콜담당)	사례관리업무지원, 서비스연계, 안내상담, 이관콜담당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행정 (민원)

					()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7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긴급지원 자원연 계담당	서비스연계, 긴급복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복지행정 (긴급복지)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8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주민생활담당	기초생활, 초중고, 자활, 고용,지자체사업, 바우처 (산모 외), 의료급여, 변동, 사후, 급여지급 관리, 확인조사	복지행정 (결혼중개업) (기초생활보장) (바우처) (의료급여) (기타생활지원서비스) (자활지원)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9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여성가족담당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보육, 아이돌봄, 청소년특별지원, 아동(급식)	복지행정 (보육) (아동청소년) (시설및법인) (기타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
10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노인담당	노령, 장사	복지행정 (노인) (기초노령연금) (시설및법인) (장사) (민원) 복지통합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11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장애인담당	일반장애인, 차상위장애인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민원) 복지통합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12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보건소담당	보건지원, 바우처(산모), 보건소업무	복지행정 (바우처) (기초생활보장) (보건지원)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13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주거담당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복지행정 (국토부업무지원) (기타생활지원서비스)
14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드림스타트담당	드림스타트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복지행정 (민원)
15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주민생활 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결혼중개업) (기초생활보장) (시설및법인) (자활지원)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자체지원 (지자체급여지급관리)

					()
16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의료급여 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의료급여)
17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사례관리 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긴급복지) 복지통합 (신청관리)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서비스연계)
18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통합사례 관리담당(이관콜담당)	복지업무 지원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19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장애인 복지담당	장애인복지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20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시설 법인담당	시설 및 법인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21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노인담당	노인, 장사	복지행정 (노인) (장사)
22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드림스타트 담당	드림스타트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23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고용복지 센터담당	시군구고용복지 센터 복지업무 담당	(원스크린조회) (읍면동공무원담당) 읍면동공무원 담당 (초기상담, 신청, 접수) 권한 부여
24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고용복지 센터담당	시군구고용복지 센터 복지업무 지원	(원스크린조회) (읍면동비공무원담당) 읍면동 비공무원 담당 (초기상담, 신청) 권한 부여
25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에너지바우처담당	에너지바우처	복지행정 (바우처) 복지통합 (사후관리)

5.

					()
1	읍면동	공무원	읍면동공무원담당	복지업무	복지행정 (국토부업무지원)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바우처) (보건지원) (보육) (아동청소년) (기타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디딤씨앗통장사업) (노인) (장사)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민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열람) 지자체지원 (지자체급여지급관리)
2	읍면동	비공무원	읍면동비공무원담당 (주요업무 보조)	복지업무지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지자체급여지급관리 읍면동신청업무담당 비공무원은 접수기능, 가족관계등록부 열람기능, 상담내역조회 기능만 제한
3	읍면동	비공무원	읍면동비공무원담당 (단순업무 보조)	복지업무지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지자체급여지급관리 읍면동신청업무담당 *단순 증명서 발급, 청소년증발급,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 지원

